

# 부산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전략

- 韓中 지방정부간 클라우드펀딩 연계를 중심으로 -

2017. 11



# 부산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전략

- 韓中 지방정부간 클라우드펀딩 연계를 중심으로 -

2017. 11



# 제 출 문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전략 - 韓中 지방정부간 클라우드펀딩 연계를 중심으로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1. 16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연구책임자> 안 유 화 (성균관대학교)

<연 구 진> 남 예 지 (성균관대학교)

<연 구 진> 이 주 리 (성균관대학교)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배경 .....	2
2. 연구내용 .....	8
II.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 자본시장 개방 .....	10
1. 위안화 국제화 동향과 추진경로 다변화 .....	12
1.1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추진경로 변화 .....	12
1.2 일대일로 창의와 위안화 국제화 로드맵 .....	15
2. 중국 자본시장 개방제도 .....	21
2.1 중국 자본시장 개혁개방 과정 .....	21
2.2 중국 자본시장 개방 시범제도별 특징 .....	24
3. 시사점 - 한·중 자본시장 연계 시범사업에 적용 필요 .....	50
III. 부산금융중심지 구축과 위안화 허브 특화 전략 .....	57
1. 부산금융중심지 구축 현황과 문제점 .....	58
1.1 부산금융중심지 추진 현황 .....	58
1.2 평가와 문제점 .....	60
1.3 부산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방향 .....	62
2. 부산의 위안화 금융중심지 특화 전략 .....	64
2.1 공식적 지위 확보 전략 .....	64
2.2 위안화 금융중심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	64
3. 결론 - 한·중 클라우드펀딩 연계부터 시작 .....	67

IV. 한·중 양국 크라우드펀딩 연계방안 .....	73
1. 한·중 양국 크라우드펀딩 기본제도 .....	74
1.1 한·중 양국 크라우드펀딩 정의 .....	74
1.2 한·중 양국 크라우드펀딩 제도 비교 .....	77
2. 한·중 양국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과 문제점 .....	93
2.1 한·중 양국 크라우드펀딩 발행시장 비교 .....	93
2.2 한·중 양국 크라우드펀딩 유통시장 .....	106
2.3 한·중 양국 크라우드펀딩 시장 문제점 .....	110
3. 한·중 양국 크라우드펀딩 연계방안 .....	116
3.1 한·중 크라우드펀딩通 정의와 구축방향 .....	116
3.2 한·중 양국 크라우드펀딩 연계 필요성 .....	119
3.3 한·중 크라우드펀딩通 구축방안 .....	123
V. 정책 검토사항과 제안 .....	134
1. 부산의 한중 크라우드펀딩通 구축 추진사항 .....	135
1.1 중국 크라우드펀딩通 파트너(시범도시) 선정 .....	135
1.2 시범사업 추진방식 제안 .....	138
2. 시범사업 추진 관련 한·중 공동 연구과제 .....	139
3. 부산시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검토 과제 .....	143
4. 한중 크라우드펀딩通 활성화 응용방안 .....	145
5. 현행 법규 내에서의 단기 추진 가능성 검토 .....	147
VI. 기대효과 .....	150
1. 투자자측면 .....	150
2. 기업측면 .....	151
3. 지방정부측면 .....	152

<참고문헌> .....	155
<부록> .....	159
[자료1] 한국의 비 거주 외국인투자자의 클라우드펀딩 투자절차 .....	159
[자료2] 팁스(TIPS) 프로그램 제도 .....	163
[자료3] 사모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융자관리방법(시행) .....	167
[자료4] 중국 료녕성 대련시 금보신구(金普新區) 정책내용 .....	181
[자료5] 중국 시범도시 주선 활동내역 보고 .....	192
<주석> .....	199



# I. 서론

## [요약]

### □ 한국의 경우

- 신생·벤처기업 등의 금융 생태계 부실은 곧 미래 성장 동력 부실화와 일자리 창출능력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Startup)과 중소기업을 위한 '인내심' 있는 '모험자본' 공급생태계가 구축되려면 효과적으로 위험분산이 가능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함
  - 특히 크라우드펀딩은 초기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자본조달 메커니즘임
  - 한국 창업기업은 3년 후 생존율 4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죽음의 계곡'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절실
-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벤처투자 자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한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2015년 7월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되어 2016년 2월 25일부터 정식 시행 중이나 시장 활성화는 한계가 있음
  - 그 동안 온라인으로 리스크가 큰 스타트업에 투자할만한 벤처자본이 한국에 부족하였으며,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는 추가적인 노력 필요

### □ 중국의 경우

- 중국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規劃)<sup>1)</sup>(2016-2020년)>에서 "대중혁신(衆創), 크라우드소싱(衆包), 대중지원(衆扶), 크라우드펀딩(衆籌)의 전면적 추진"을 강조
- 중국은 2011년 사모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시행중이나 현재는 「증권법」 개정을 통해 공모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추진 중
  - 최근 중국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 보통 증감회(證監會) 약칭으로 표현, 영문으로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CSRC)는 지난 10월 24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sup>2)</sup>(이하 '19대' 약칭)에서 제기한 혁신기업을 위한 벤처금융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 엔젤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및 증권형(공모형) 크라우드펀딩 시범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세계은행은 중국의 크라우드펀딩이 2025년에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

- 2015년 10월 리커창(李克强)총리의 방한 시 한국과 산둥성간 클라우드펀딩 시범 사업 관련 합의가 있었으나 담보상태

#### □ 부산의 경우

- 2009년 1월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으나 국제금융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한 시점
  - 2016년 청도 등 중국 지방정부와의 공동펀드 설정, 위안화 채권 발행 및 금융 고위층포럼과 금융교육 등 금융협력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부산의 금융중심지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부산은 중국 지방정부와의 금융협력을 중심으로 특화된 위안화 금융관련 영역에서 클라우드펀딩을 포함한 모험자본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수립할 시기
- ⇒ 따라서 부산과 중국 시범도시간의 클라우드펀딩 시장 연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부산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1. 연구배경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생·벤처기업 및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클라우드펀딩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음

- 2012년 4월 5일 미국에서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 신생기업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이 법으로 승인되고, 이를 통해 신생·벤처기업 등에 대한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가 열림<sup>3)</sup>
  - JOBS법은 신생·벤처기업 등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에 장애가 되는 기존의 증권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미국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 아이디어-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이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Funding)받는 행위를 말함
  - **크라우드펀딩 주요 유형:**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 등에 따라 보상형, 후원·기부형, 대출형(P2P) 및 증권형(투자형)으로 구분됨
    - 해외사례를 보면 크라우드펀딩은 보상형에서 시작해서 기부/후원형 순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크라우드펀딩 출발이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조달행위가 아님을 뜻함
  - **본 연구에서는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함**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초기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임
  
- **신생·벤처기업 등의 금융 생태계의 부실은 곧 미래 성장동력의 부실화와 일자리 창출능력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은 이들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임**
  -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5%-7%에 해당되어 비교적 저렴하다고 할 수 있음**
    - 스타트업의 경우 은행을 통한 대출에 제약이 많으며, 가능한 경우라도 최소 10%이상 금리 적용<sup>4)</sup>
  - 이는 담보나 보증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의 접근이 쉽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에게는 대출형 용자보다 만기도 없고 이자도 없는 증권형 용자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말함
  
- **초기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인내심'이 있는 '모험자본' 공급생태계가 구축되려면 효과적으로 위험분산이 가능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함**
  - **크라우드펀딩은 초기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자본조달 메커니즘**
    -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대중이 투자하므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은 각각 비교적 작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인 자본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쉽고, 신속하고, 편리하며, 동시에 저렴하고 시기 적절하게 투자가 가능해짐**[[그림 1] 참조]

[그림 1] 기업 생애주기별 자금조달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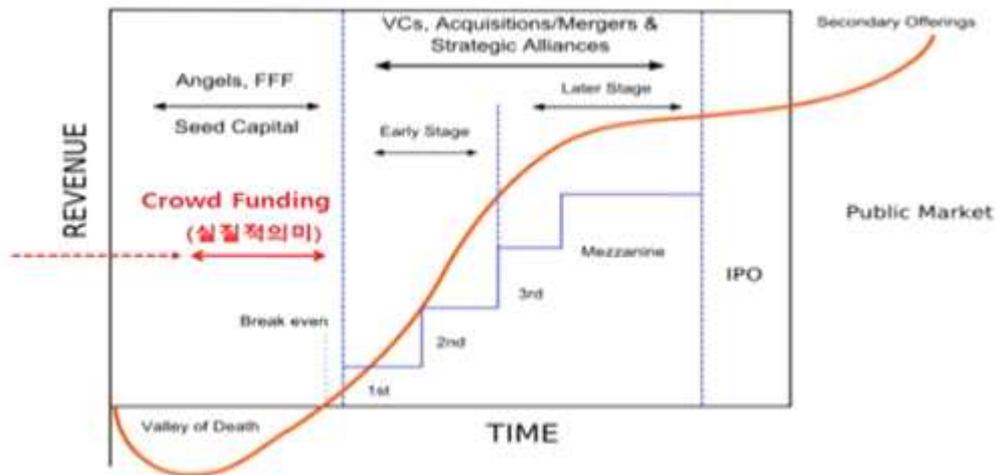


그림: KSD 발표자료

- 특히 한국은 창업기업 3년 후 생존율 41.0%(2013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죽음의 계곡'에서 좌초하는 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절실함([표 1] 참조)

[표 1] OECD 주요국별 창업기업 생존율(2013년 기준)

국가	룩셈부르크	호주	이스라엘	미국	이탈리아	한국
3년 후 생존율(%)	66.8	62.8	55.4	57.6	54.8	41.0

자료: 김보경(2015)

-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진흥정책과 사회 전반의 창업인식 제고에 따라 창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정책자금은 기술력, 사업성보다 리

스크를 고려한 우량기업 위주 지원([표 2]참조)

- 창업 환경을 지표화한 '창업 생태계 가치'는 서울이 24억 달러로, 실리콘밸리(2,640억 달러)의 100분의 1, 북경(1,310억 달러)의 50분의 1에 불과함)

**[표 2] 최근 10년 창업기업 수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수 (증감 율,%)	52,587 (8.2)	50,512 (-3.9)	53,483 (5.9)	50,855 (-4.9)	56,830 (11.7)	60,312 (6.1)	65,110 (8.0)	74,162 (13.9)	75,574 (1.9)	84,697 (12.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고 벤처투자자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창업 후 3~5년 차에 사업 실패율이 급증하는 '죽음의 계곡'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창업도약 패키지)도 현재의 2배 수준인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 발표

- 벤처투자자금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20조원 규모의 민관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함

— 한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2015년 7월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되어 2016년 2월 25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지만 아직 시장 활성화는 한계가 있음

- 그동안 온라인으로 리스크가 큰 스타트업에 투자할만한 벤처자본이 한국에 부족하였으며,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한편 중국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에서 "대중혁신(衆創), 클라우드소싱(衆包), 대중지원(衆扶), 클라우드펀딩(衆籌)의 전면적 추진"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에서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은 개인 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보혜금융(普惠金融·누구나 혜택 받는 금융)'<sup>6)</sup>의 중요한 수단이자 다층적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여겨지며, 중국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인터넷금융의 한 영역임

— 이처럼 클라우드펀딩은 중국 정부가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인혁신(萬衆創新)'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회사법 개정 등 과감한 제도 정비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민간 주도의 창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특히 거래소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sup>7)</sup>

□ 중국은 2011년 이미 사모형 클라우드펀딩 제도를 시행하였고, 현재 「증권법」 개정을 통해 공모형 클라우드펀딩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CSRC는 19대에서 제기한 혁신기업을 위한 벤처금융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 엔젤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및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시범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에 대한 중국의 규제동향과 시장변화 및 관련정책 등을 분석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한다면 클라우드펀딩 제도를 이제 막 도입한 우리에게 분명 큰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

— 세계은행은 중국의 클라우드펀딩이 2025년에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펀딩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sup>8)</sup>

□ 또한, 한국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에 의해 2009년 1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금융회사의 집적을 도모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현재 부산시는 추가적인 동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

— 서울은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등의 '특화' 금융중심지로 조성키로 하였지만, 양 도시 모두 부분적 성공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 특히 부산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관련 인프라도 서울에 위치하는 등 핵심 경쟁력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

— 또한 부산은 2014년 3월 Z/Yen 그룹이 발표하는 세계금융센터지수(GFCI) 평가 순위에서 처음 등재될 정도로 국내외에서 금융중심지로서의 인지도가 아직은 미약한 상황

• 2014년 3월 GFCI에서 처음으로 27위를 기록하고, 2015년 9월에는 24위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50위, 2017년 70위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

□ 2015년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이하 KSD)의 부산 이전과 더불어, 2016년부터 청도 등 중국 지방정부와의 공동펀드 설정과 위안화 채권 발행 및 금융 고위층포럼과 금융교육 등 다각도 금융협력이 추진됨으로써 부산의 금융중심지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앞으로 부산에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금융협력을 중심으로 특화된 위안화 금융관련 영역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포함한 모험자본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현 계획을 수립할 시기라고 판단

□ 또한 2015년 10월 리커창총리의 방한일정 중 산동성을 한국의 위안화 시범특구로 지정하고, 크라우드펀딩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

였지만 미시행 과제로 남음)

— 따라서 부산과 중국 시범도시간의 클라우드펀딩 시장 연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부산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방안으로서 위안화 금융산업 특화와 중소기업을 위한 모험자본 금융생태계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 지방도시간 클라우드펀딩 연계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2. 연구내용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부산)과 중국 시범도시간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연계 - 가칭 ‘한중 클라우드펀딩通(衆籌通)’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구축방향과 성공 안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이슈를 논의하고 있음
  - 우선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자본시장 개방 시범제도 유형과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활용방안으로 한·중 자본시장영역에서의 시범제도 협력을 제안함
  - 다음 부산금융중심지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기초 상에서 국제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전략으로 위안화 금융산업 특화전략과 한·중 클라우드펀딩 연계 시범사업을 제안함
  - 또한 한·중 양국의 클라우드펀딩 시장과 제도를 비교하고, 각 국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제시함
  - 특히 이 보고서의 핵심으로서, 한·중 양국 지방도시간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연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주요 이슈들을 정리함

- 양국 지방도시 대표로 한국은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클라우드펀딩 특화허브 구축 가능성을 제시하고, 중국의 경우는 이미 국가 자본시장 개방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결론에 갈음하여 한·중 클라우드펀딩 연계 시범사업의 성공 안착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및 기대효과를 마지막 장에서 논의함

## II.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 자본시장 개방

### [요약]

#### □ 현재 위안화 국제화는 3년 전 수준으로 하락

- 이는 주로 2015년 이후 중국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위안화 절하압력 등이 소멸되지 않으면서 보유유인이 감소했기 때문임
- 따라서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를 통한 '부채형' 위안화 국제화 경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
- 중국정부는 역내·역외 투자활성화를 통한 '자산형' 위안화 국제화 경로로 선회하고 자본항목 중심의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 중
  - 즉, 기존 '경상항목' 중심의 위안화 유출전략에서 '경상과 자본항목 병행' 전략으로 변경

#### □ 위안화의 지역적 이용 확대와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에서 지역 통화 역할을 위한 전제조건은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위안화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임

- 앞으로 위안화 국제화는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과의 투·융자 확대와 AIIB 등 국제기구에서의 주요 투자통화로서의 위안화 활용 및 위안화 허브 추진지역들과의 통화스왑 체결 등의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중국 자본시장 개혁개방 과정

- 중국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점개방, 선개방, 면개방, 전방위개방 단계로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개방의 시범정책을 실행함
- 80년대 중기에 14개의 연해개방도시와 연해지역을 "연해경제개방구(沿海經濟開放區)"로 지정
- 개혁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와 "고신기술산업개발구"가 내륙에 성립되었고, 개발구에 진입하는 기업에는 여러 가지 정책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수립
- 90년대 초에는 10개의 "국가급 신구"와 "자유무역실험구"등을 설립

□ 중국은 2012년부터 자본항목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중국인민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점진적인 개방 일정을 발표(2020년을 목표로 전면적인 개방 추진)

- 중국은 1996년 12월 IMF 8조국에 선정되어 무역거래 등 경상항목의 자유태환 실시
-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은행·보험 등 일부 금융시장을 개방하였으나, 자본계정에서의 외화이동은 엄격하게 통제
- 중국은 2002년 이후 비유통주 개혁, QFII, RQFII, 후강통, 선강통 및 채권통 등 자본시장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 2015년 10월 22일 중국 국가위원회는 그간 도입이 예상되어오던 QDII2 제도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을 발표
  - 올해 7월 3일 중국이 본토 채권시장 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채권통'을 개통하였으며,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3대 채권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중국 금융시장 개방 가속화

□ 자유무역실험구(Free Trade Zone)는 자국의 법률법규에 근거해 본국 역내에 설립한 지역 경제특구이며 중국정부 스스로 개방한 정책임

- 자유무역실험구의 첫 번째 의미는 제도혁신이며, 특히 금융혁신을 위한 시범지역이라는 것임
  - Negative list 방식은 상해자유무역실험구가 2013년 9월 제1기로 발족할 당시 도입한 혁신적인 관리방식이자 행정방식임
  - 외자기업 투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금지, 제한하는 내용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를 시행함
- 두 번째 의미는 높은 편리성이며, 통관수속 간소화와 무역 편리화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함
  - 현재 통관 일체화로 발전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마지막 자유무역실험구 추진 의미는 혁신 및 개방 확대이며, 선도적인 금융 시범제도의 복제 및 확대 실행을 통해 전국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 금융 분야 등에서 혁신 제도 도입과 함께 굳게 닫혀 있던 서비스 시장을 자유무역실험구를 통해 열고 있음
  - 주로 어려움이 많고 위험이 존재하며, 파급력이 큰 영역의 정책들을 시범적으로 실행함
  - 자유무역실험구는 선제적으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리스크를 미리 체감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점들과 기대성과들을 확인해보는 역할을 함

- 한국은 중국 자유무역실험구와 같은 자본항목 개방제도를 잘 활용하여 영국의 '후룬통' 및 '핀테크브릿지'와 같은 중국과의 시범협력 사업들을 참조하여 장기적인 금융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2016년 11월 열린 제8회 “중영재경대화(中英經濟財經對話)”에서 중국 상해거래소와 런던거래소를 연계하는 후룬통(滬倫通) 연계사업의 가속화에 대해 언급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공동 연구할 것을 협의함
    - 후룬통은 중국이 홍콩 이외 자본시장과 연계하는 최초 시범프로그램으로서 중·영 양국의 금융서비스영역에서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영금융서비스전략규획(中英金融服務戰略規畫)”에서는 8대 중점 영역 (자본시장, 자산관리, 보험업과 양로금(養老金, 중국의 국민연금에 해당), 은행업, 녹색금융, 핀테크, 일대일로 창의 및 보혜금융)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양국은 “중영핀테크브릿지(中英金融科技橋)”를 만들어 핀테크 영역에서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것에 관해 협의함

## 1. 위안화 국제화 동향과 추진경로 다변화

### 1.1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추진경로 변화

-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 왔고, 2016년 10월에는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로 정식 편입되면서<sup>10)</sup>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이 제고되었음
  - SWIFT RMB Tracker에 따르면 현재 위안화는 전 세계 지급결제 통화 중 6위이며, 위안화 지급결제 비중이 2015년 6월 2.09%에서 2017년 6월 1.98%로 하락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1,9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지급결제 통화로 위안화를 활용
  - 중국을 제외한 국제외화 비축규모는 대략 7.5조 달러이며, 위안화 SDR편입 이후 세계 외화비축 자산 중에서 위안화가 1%에서 3%가

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sup>11)</sup>

-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6월 5억 유로의 위안화 표시 자산을 외화 보유고로 투자하였다고 발표

—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위안화 표시 자산투자 및 보유 수요가 증대되어 국제거래에서 위안화가 폭 넓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sup>12)</sup>, 중국당국은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SDR 편입은 중국당국의 자본관리 자유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방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발표한 위안화 국제화 지수가 2015년 9월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금년 6월에는 3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중국의 전체 상품무역에서 위안화 비중이 2015년 26%에서 2017년 1-8월 중 12%로 하락
- 홍콩·싱가포르·대만의 위안화 예금 잔액은 2015-2016년 중 연평균 30% 내외로 감소한 이후 올해 들어 회복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위안화 국제 활용의 축소원인은 2015년 이후 지속된 위안화 절하 압력 등이 소멸되지 않으면서 보유유인이 감소한데 주로 기인

- 자본시장 개방이 미흡한 가운데 중국정부는 초기 주로 위안화 무역결제통한 위안화 유출 촉진정책을 시행하여 구조적 유출입 불균형이 초래되었음
  - 즉 위안화 무역결제를 통한 해외유출은 역외 거주민과 금융기관의 위안화 자산보유이기에 중국에 있어서는 '부채'임
  - 이는 위안화 절상기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우며 통화 국제화의 초기단계에 속함
-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 하에서 판다본드·국경간 위안화 용자 등 자

금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

- 비록 중국금리가 미국보다 높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상승 사이클에 있고 중국과의 금리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에 위안화 용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따라서 '부채형' 위안화 국제화 경로는 추진하기 힘든 글로벌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적절한 '자산형' 위안화 국제화 경로로 선회하고 자본항목 중심의 위안화 국제화 단계로의 진입을 추진함

- 즉 기존의 '경상항목' 중심의 위안화 유출전략에서 '경상과 자본항목 병행' 전략으로 변경

□ 앞으로 위안화 국제화는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과의 투·융자 확대와 AIIB 등 국제기구에서의 주요 투자통화로서의 위안화 활용 및 위안화 허브 추진지역들과의 통화스왑 체결 등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부분 신흥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규모의 확대와 경제협작 강화로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일대일로 연선 60여개 국가의 인구는 약 44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3%를 차지하며, GDP 점유율은 29% 내외임
  - 2015년 보아오(博鰲)포럼에서 시진핑주석은 향후 10년 내 일대일로 연선 국가간 연간 무역규모가 2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함
- AIIB는 아시아지역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공동의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설립된 은행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통하는 호연호통(互聯互通) 정책과도 일맥상통함
  - AIIB의 초기자금은 500억 달러이고, 대부분은 중국에서 출자
  - 앞으로 자본금을 1,0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며, 2017년 6월 현재 AIIB의 회원국은 총 80개국임

- AIIB의 자금은 우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창의에 집중 활용될 예정임<sup>13)</sup>

□ 일대일로 선상의 국가들과의 위안화 결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14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對 베트남 수출결제에서 위안화 사용은 0.8% 증가하였고, 대 아세안지역은 1.1%, 대 홍콩지역은 4%로 확대되었음
  - 수입결제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
-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145억 달러로 총 해외투자액의 8.5%를 차지함
  - 중국기업들이 일대일로 선상 20여개 국가들에서 이미 56개 경제무역 합작구를 신설함
  - 누적 투자액은 185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일대일로 투자 국가들에게 11억 달러 세수와 18만개 일자리를 마련하였음<sup>14)</sup>

## 1.2 일대일로 창의와 위안화 국제화 로드맵

□ 위안화의 지역적 이용 확대와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에게 지역 통화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 지역에 충분한 위안화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임

- 비록 일대일로 선상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부분의 국가들의 환율결정 시 달러화와 유로화에 대한 참조보다 위안화 환율에 대한 참조비중이 더 크지만, 위안화가 국경간 무역에서 사용되는 비중은 전체 무역의 13.9%에 불과함
- 올해 양회에서 '일대일로' 추진과 관련한 해외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하고 국제무역 활성화와 투자의 자유화 확대 방침을 천명

- 해외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와 외자 진입 가능 산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계획
- 자격허가, 표준제정, 정부조달, '중국제조2025' 정책혜택 수혜 등 면에서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
- 특히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등 분야에서 외자기업 상장, 회사채 발행, 중국 과학기술 사업 참여 허가 정책을 수립하는 등 외자 진입 기준을 완화할 계획

□ 일대일로 창의 하의 위안화 국제화 로드맵은 크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향에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

□ 우선 지역 핵심 통화가 된다는 것은 적자를 이루어 그 지역에 대한 위안화 송출이 가능(적자융자, 逆差融資)해야 한다는 의미이기에 중국정부는 앞으로 일대일로 선상의 국가들과 경상항목과 자본항목의 '쌍 적자'의 국제수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비록 중국의 경쟁력은 아직 국제수지 '쌍 적자'를 기록할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sup>15)</sup>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과 무역과 자본항목 거래에 있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중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위안화 대출과 해외직접 투자를 확대해 위안화표시 해외 자산 규모를 늘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에서 투자자이면서 건설자인 지위를 활용하여 위안화 자금조달 방안을 설계하여 해외투자 통화기능을 하도록 할 것임<sup>16)</sup>

— 다른 한편으로 일대일로 선상국가들의 공업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이들 국가의 대중 수출능력을 높여 중국의 무역 적자를 실현하는 노력도 할 것임

□ 둘째, 중국계 은행, 핀테크(이하 FinTech)기업, 인터넷 금융회사들의 일대일로 선상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위안화 금융 서

## 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임

- 중국계 은행들의 위안화 금융상품의 혁신과 마케팅을 통해 일대일로 선상 후자국 기업들의 위안화 단기자산(예금 혹은 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 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기업들은 이런 자금을 조달하여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에 대한 수익률 높은 장기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FinTech기업과 인터넷금융회사의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의 기업과 국민들의 위안화 자금조달과 위안화 자산운용이 편리하도록 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위안화 결제와 위안화 가격결정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이들 지역에서 위안화 업무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기 위해 중국계 은행의 현지 비즈니스 확대를 가속화하고 업무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위안화 금융상품의 혁신과 마케팅을 통해 일대일로 선상국가들의 중국수출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중국건설사의 시공건설 비용을 위안화로 지불하거나 투자 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일대일로 선상 후자국 기업들은 위안화 단기자산(예금 혹은 채권)에 투자를 선택하는데, 중국기업들은 이런 자금을 활용하여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에 대한 수익률 높은 장기 지분투자를 확대할 수 있음

## □ 셋째, 위안화 채권시장을 발전시켜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확대와 채권 거래품목 증대가 기대됨

- 중국정부는 위안화 표시 채권시장 시스템을 완비시켜 위안화 채권 발행을 촉진하고, 위안화 자금의 역내·역외 유동성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일대일로 지역 내 저축의 위안화 투자로의 전이를 촉진할 것임
- 동시에 중국 내 잉여자금을 일대일로 지역 채권시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 넷째, 통화스왑 규모 확대, 위안화 직거래 추진 등을 통해 일대일

로 국가들에 대한 위안화 유동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통화협작을 확대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역 및 투자에서의 위안화 사용을 편리하게 할 것이며
- 지역 거시경제 정책 및 통화정책 조정 노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 메커니즘을 일대일로 선상국가들과의 지역 금융 및 통화협력의 기초로 그 범위를 확대할 것임

□ 다섯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의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촉진작용을 확대할 것임

- AIIB는 중국 정부에 의해 시작되어 아시아 국가들의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됨
- 중국은 가장 큰 투자국으로서 위안화를 AIIB의 자본통화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상업은행과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어 일부 인프라프로젝트에 한해 위안화 대출 및 위안화 투자를 사용하도록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AIIB는 위안화로 표시된 아시아 인프라투자 채권을 발행하여 위안화의 자산가격 결정 통화기능을 확대할 수 있음

□ 여섯째, QFII, RQFII, QDII, RQDII, 후강통, 선강통, CIBM, 채권통 등과 같은 시범개방 프로그램 방식으로 자본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임<sup>17)</sup>

- 이중 채권시장의 개방 확대는 특히 중요하며, 중국 국공채의 높은 수익률로 인하여 채권시장의 개방은 역외주민의 위안화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높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위안화 자산에 대한 보유의지를 높여주고, 나아가 세계 각 통화당국이 위안화자산을 외환보유액에 편입시키는 것을 촉진할 것임

- 역외 거주민들이 위안화로 중국정부의 채권을 매입할 경우 중국의 기존 역외 위안화 부채는 위안화 현금 또는 예금에서 위안화 채권으로 전환되며, 이는 위안화의 환류채널을 개척하고 위안화가 관련 국가들의 외환보유자산의 투자상품으로 활용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음

□ **일곱째,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위안화 역외시장의 발전은 역외·역내간 위안화시장의 금리와 환율의 차이거래가 불가피하게 하며, 특히 자본통제 및 환율 시장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그러함
- 그러나 위안화 지역화와 국제화의 관점에서 위안화 역외 시장의 발전은 필수적임
- 현재, 중국정부는 경상수지와 자본계정에서 외환 태환의 실수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달러 외환시장 발전경험에서 보면 무역 및 직접 투자 관련 외환 실수요 거래는 전체 외환거래의 5%만을 차지함. 따라서 위안화가 지역통화 (주요 국제통화)가 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거래가 실수요가 아닌 제3자 거래가 될 것이며, 이는 위안화 외환시장의 발전과 심도 있는 위안화 금융시장의 확대를 필요로 함
- 역외시장의 제도적 이점은 중국 국내 금융시장 발전과 시장 개방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투자자들에게 합법적이며 편리하게 위안화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채널을 제공하여 위안화 금융자산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으며, 위안화 역외 금융업무의 발전은 위안화의 국제 신용대출과 국제투자 및 자금조달 규모를 확대 할 수 있음

□ **여덟째, 일대일로 선상 국가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국제청산시스템 CIPS(China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sup>18)</sup>**

- CIPS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인프라이며 상해에 개설되었음
- 2016년 말 CIPS의 직접 참여기관은 초기 19개에서 28개로 증가되었으며, 간접 참가자 수는 176개에서 480개로 늘어나 6개 대륙의 78개 국가와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 그 중 일대일로 선상의 35개 국가와 지역의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CIPS에 가입하였고, 국제간 위안화 업무량은 월간 28%의 속도로 증가하였음

□ **아홉째, 국제통화 시스템의 "달러 중심 - 주변통화"구조에서 위안화에 대한 국제금융시장 신뢰도는 아직 약하므로 미국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

- 위안화 지역화 및 국제화 과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자산의 수익성을 높여야 하고, 사용 편리성을 높여 달러자산 대비 위안화자산의 점차적인 대체를 실현함으로써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안정과 점진적인 절상을 유지해야 함
- 이는 위안화 가치에 대한 신뢰를 확대하고 국제사용 확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함

## 2. 중국 자본시장 개방제도

### 2.1 중국 자본시장 개혁개방 과정

#### □ 중국 자본시장 개혁개방 추진 과정

- 중국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점개방, 선개방, 면개방, 전방위개방 단계로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개방의 시범정책을 실행함
  - 점개방(1979~83)단계에서 우선 광둥성의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頭)와 복건성의 하문(廈門) 지역에 4대 경제특구를 설치함
- 80년대 중기에 14개의 연해개방도시와 연해지역을 "연해경제개발구(沿海經濟開放區)"<sup>19)</sup>로 지정함
  - 연해개방도시(沿海開放城市): 1984년 5월 상해(上海), 천진(天津), 대련(大連), 진황도(秦皇島), 연태(煙臺), 청도(靑島), 연운항(連雲港), 남통(南通), Ning파(寧波), 온주(溫州), 복주(福州), 광주(廣州), 담강(湛江), 북해(北海) 등의 14개 연해도시를 개방
  - 1985년에는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와 민남장주(閩南漳州), 천주(泉州), 하문삼각구(廈門三角區)지역을 개발하여 개방식 연해경제개발구로 지정
  - 1988년에는 해남성(海南省)을 설립하여 중국 최대면적의 경제특구를 설치
  - 1989년에는 다시 상해 포둥(浦東) 신구의 개발과 개방을 선포하면서 자본항목 개방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
  - 1999년에는 서부지역 대개발(西部大開發) 전략을 제시하고, 2013년에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창의를 제시하면서 중국은 연해지역에서 중서부지역에 이르는 전면적인 개방 국면이 형성됨
- 개혁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sup>20)</sup>와 "고신기술산업개발구"<sup>21)</sup>가 내륙에 성립되었고, 개발구에 진입하는 기업에는 여러 가지 정책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함
- 90년대 초에는 10개의 "국가급 신구(國家級新區)"와 "자유무역실험구" 등을 설립<sup>22)</sup>

□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산업 특성과 지리적 특성에 연관이 있고, 사회 전반적인 정비와 관리체계가 정부의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적합한 지역을 선정

-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고신기술산업개발구와 같은 특징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집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정영역에 맞는 우대정책을 부여함으로써 선도개발의 우세를 확립하게 함

□ 중국은 2012년부터 자본항목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함

- 중국은 1996년 12월 IMF 8조국에 선정되어 무역거래 등의 경상항목의 자유태환을 실시함
-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은행·보험 등 일부 금융시장을 개방하였으나, 자본계정에서의 외화이동은 엄격하게 통제함
  - 중국의 자본개방도는 2013년 67.4%로 지난 2004년 49.9%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동 시점 미국, 일본의 각각 23.3%, 34%에 불과함
  - \* 자본개방도 = (외환보유액 제외 대외자산+대외부채)/GDP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은 2013년 각각 15.3%, 31.0% 수준이나, 중국은 2012년에 3.6%에 불과함<sup>23)</sup>

□ 최근 중국정부의 개방화 정책으로 중국 자본시장은 점진적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이 상승

- 중국은 비유통주 개혁, QFII, RQFII, 후강통·선강통 및 채권통 등 자본시장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
  - 중국 정부는 2002년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2011년 위안화 역외 적격기관투자자(RQFII)등 외국인의 중국내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 투자 허용
  - 2014년 후강통(滬港通,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상해증시와 홍콩증시의 상장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교차거래를 가능케 하는 제도), 2016년 선강통(深港通, 심천증시와 홍콩증시의 주식 교차거래를 가능케 하는 제도)에 이어 2017년 채권통

(債券通, 중국본토와 홍콩시장간 채권 교차거래)을 허용함

— 하지만 중국의 자본개방도는 미약한 수준이 지속<sup>24)</sup>

- 자본개방도도 2015년 기준 미국 294.0%, 일본 282.0%, 한국 123.9% 등과 비교해 중국은 2015년 현재 약 68%에 불과
- 더욱이 중국은 2009~2015년 자본개방도가 평균 64.2%로 동기간 일본 211.5%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중국인민은행은 2012년 보고서를 통해 점진적인 개방 일정을 발표<sup>25)</sup>([표 3]참조)

— 1단계: 해외투자 확대전략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저우추취(走出去)' 전략

- EU재정위기와 미국 실물경제의 부진으로 해외 자산이 저평가 되어 있고, 중국은 넉넉한 외환보유고(2014년 3조 8천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년 2월 3조 달러가 붕괴)가 있어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2단계: 향후 3~5년 동안(2013년~2018년)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

- 위안화 관련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중국 은행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 무역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향후 투자통화 및 비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축통화의 위상을 점진적으로 확보

— 3단계: 향후 5~10년 동안(2018년~2022년) 금리의 시장화 및 시장수급에 연동된 환율정책을 통해 자본시장을 개방함

-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주식·채권시장의 개방 여건을 확보함
- 해외 투자자의 중국 내 거래 개방 이후 내국인의 해외거래를 개방함
- 장기적으로 양적관리에서 가격관리로 대체하여 양적규제를 없애고, 자본거래와 관련 없는 외환거래(예를 들면 선물환)는 마지막으로 개방함<sup>26)</sup>

**[표 3] 중국 자본시장 개방일정**

구분	기간	개방 내용
1단계	단기(1~3년)	-저우추취(走出去 : 중국 본토 기업의 해외투자)확대
2단계	중기(3~5년)	-위안화 국제화, 위안화 상업 대출 확대 -무역 결제와 대출에 위안화 전면 개방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3단계	장기(5~10년)	-금리 시장화, 선진시스템 구축 후 자본시장 완전개방 -양적 규제에서 가격 규제로 전환 -부동산, 주식, 채권 순서로 개방

자료: 중국인민은행(2012)

## 2.2 중국 자본시장 개방 시범제도별 특징

### 1) 기존 자본시장 개방 및 대외협력 모델

#### 가. 중국 증권시장 투자 할당제 시범제도

- 증권 유통시장 개방제도로 QFII와 RQFII 및 CIBM 제도를 통한 적격 외국기관투자자들의 중국내 자본시장 투자 허용제도가 있음
  - QFII 자격을 획득한 외국기관투자자는 상해A주와 심천A주<sup>27)</sup>를 직접 매입할 수 있으며, RQFII 자격을 획득한 외국기관투자자의 경우 위안화로도 직접 투자할 수 있음
  - 중국정부는 QFII와 RQFII 제도를 통해 외국인의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제한함
    - 해외기관 개별 투자자 단일종목 최대 지분을 : 10%
    - 종목 지분을 합계 최대 : 30%

- 지분을 제한을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할 수 없음<sup>28)</sup>

□ [표 4]는 현재 중국정부가 도입한 역내 및 역외간 자본시장 시범 개방제도임

-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 개방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특정한 제한이 붙음
  - 예를 들어, 할당액, 거래제한 기간, 자금의 반출 및 송금 등
- 이 개방 프로그램은 서로 대체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중국의 지속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

[표4] 중국 증권시장 개방제도

<b>할당액</b>	· 총할당액: 3,000 억위안 <sup>29)</sup> · 일별 할당액: 130 억 위안 (20.8억 달러)		· 총할당액: 3,000억위안(480 억 달러)		· 각 QDII에게 특정 할당액 부여 · 총할당액 제한 없음	
<b>상품</b>	상해증권거래소 상장 적격주식	CIBM 에서 거래 되는 모든 상품	본토소재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비상장인덱스 펀드, ETF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상장주식, 사채 및 워런트, 채권상품, 증권투자펀드, 주식지수선물)	전환증권, 비공개 회사 및 상장회사 사모증권	
<b>투자자</b>	본토 개인 및 기관투자자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승인 기관	본토 개인 및 기관투자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본토 기관투자자		
<b>본토</b>	<b>주식시장연계</b>	<b>CIBM</b>	<b>MRF</b>	<b>QFII / RQFII</b>	<b>QDII</b>	<b>QFLP / RQFLP</b>
<b>역외</b>	<b>30)</b>					
<b>투자자</b>	역외 개인 및 기관투자자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승인을 받은 외국 기관	홍콩 개인 및 기관투자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기관투자자		적격외국인투자사모 주식형 펀드 및 펀드운용사
<b>상품</b>	홍콩증권거래소 메인보드 상장 적격주식	은행간 채권시장 상품	홍콩소재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비상장인덱스 펀드, ETF	QDII 기관 유형에 따라 다음에 투자가 가능 - 단기금융상품, 채권상품, 지분상품, 뮤추얼펀드, 구조화상품		
<b>할당액</b>	· 총할당액 : 2500 억위안 (400억 달러) · 일별 할당액 : 105 억 위안 (16.8억 달러)	할당액 무제한	총할당액: 3,000 억위안(480억 달러)	RQFII : 9200억 위안(1472억 달러) QFII: 800억 달러	· QFLP: 각 FIE <sup>31)</sup> 펀드 운용사가 외환 전환할 할당액 신청 · RQFLP: 외환 할당액 적용 없음	

□ 2015년 10월 22일 중국 국가위원회는 그간 도입이 예상되어오던 QDII2 제도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을 발표

— QDII2 제도는 중국 개인투자자가 역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자본항목의 상당한 개방을 의미함

- 이 제도는 가장 먼저 상해자유무역실험구에서 시행되고, 차후에 5개 시범도시(천진, 중경, 무한, 심천, 온주)로 확대될 예정임

□ QDII2 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함

- **할당액:** 승인된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금융자산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QDII2 제도를 통하여 완화된 환전제한이 적용되고 연 5만 달러 내에서 직접 역외투자를 할 수 있음
- **적격 투자대상:** 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 외환, 파생상품, 직접투자(FDI), 합작투자, 부동산 등을 포함
- **회계:** 중국 개인투자자는 QDII2 제도 하에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자유무역계좌(Free Trade Account, 이하 FT계정<sup>32</sup>)를 개설하여야 함
  - FT계정은 역내 위안화계좌와 역내 외환계좌로 구성

나. 다른 주식 및 거래소로 연계확대

□ 상해-홍콩 및 심천-홍콩 주식시장 연계

- **후강통과 선강통**은 상해와 심천증권거래소가 각각 홍콩증권거래소 간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증권시장 개방제도이며, 위안화 국제화 추진 전략의 일환임
- **후강통과 선강통**은 '후구통'·'선구통'과 '강구통'으로 구분됨
  - '후구통'·'선구통'은 홍콩 및 해외 투자자가 홍콩거래소에 속한 회원 증권사를 통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상해와 심천 A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함
  - '강구통'은 중국에 있는 본토 투자자가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의 회원 증권사를 통해 홍콩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거래통화**
  - 후구통(상해A주식), 선구통(심천A주식), 강구통(홍콩H주식) 모두 위안화로 거래 됨

— 투자 및 거래한도

- 투자한도(보유 잔액 기준)는 상해A주(후구통)의 경우 3,000억위안, 홍콩H주(강구통)은 2,500억위안으로 도입했다가 2016년 8월부터 전부 취소하여 현재 제한이 없음
- 일일 거래한도액은 순매수 잔액을 기준으로 상해A주(후구통)와 심천A주(선구통)의 경우 일 130억위안, 홍콩H주(강구통)의 경우 일 105억위안임

— 투자종목: 후구통·선구통과 강구통의 투자대상 종목은 주식만 가능하며, 해당 지수의 리밸런싱(rebalancing, 자산 재조정)과 동시상장 종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 투자자격

- 중국 본토주식인 상해A주와 심천A주에 투자할 수 있는 홍콩 및 해외 투자자의 자격 요건제한은 없으며, 개인과 기관투자자 모두 투자가 가능함
- '강구통'의 경우에는 상해거래소의 회원증권사의 주식계좌에 50만위안 이상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만 매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올해 7월 3일 중국이 본토 채권시장 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채권통'을 개통하였으며,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3대 채권시장을 열어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함

- 홍콩을 통한 외국자금의 중국 채권투자(北向通, 베이샹통)를 먼저 시행하고, 본토 자금의 홍콩 채권투자(南向通, 난샹통)는 나중에 개통함
- 중국 채권은 주로 은행간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며, 해외 투자자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QFII, RQFII 그리고 CIBM 투자 자격 획득의 세 가지 통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그러나 채권통이 출범하면서 투자경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중국 은

行间 채권시장 진입 장벽도 낮아지게 되었음

- 채권통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은 국채·금융채·공사채·기업채 등 모든 종류의 채권을 거래할 수 있음
  - 다만 거래는 현권(現券, 현물) 매매만 가능
  - 중국 금융당국은 채권통 시행에 따라 향후 환매, 선물, 대차거래, 금리스왑 등으로 확대할 방침임
- 올해 3월 말 기준 중국 채권시장 규모는 65조 9,000만 위안에 달하며, 이는 세계 3위, 아시아 2위 수준임
  - 중국 채권 잔액에서 국채는 22조 4,600억 위안(34.1%), 금융채는 15조 5,600억 위안(23.6%), 공사채는 4조 4,800억 위안(6.8%), 기업채는 3조 5,200억 위안(5.3%)을 차지
- 하지만 외국기관이 보유한 **채권비중은 1%대인 8,300억위안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는 독일·미국·영국 등 선진국 시장보다 월등히 낮고, 한국·일본(10%)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sup>33)</sup>
- 중국은 채권통을 통해 앞으로 ▲중국 채권의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가능성 제고 ▲역외 위안화의 중국 본토 유입 촉진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채권통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자금이 1,000억 달러에 달하고, 10년 뒤에는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sup>34)</sup>
- 중국 국내 채권투자자들이 다양해지면서 중국의 신용평가 및 결제 청산업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또한 채권통으로 홍콩을 통한 역외 위안화 시장이 확대되면서 위안화 국제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음

#### □ 상해 - 독일 위안화 표시 현물 거래소 'CEINEX'

- CEINEX는 2015년 11월 발족한 상해거래소(The Shanghai Stock Exchange, 이하 SSE), 독일거래소(Deutsche Börse) 및 중국금융선물거래소(CFFEX)의 합작투자회사임
  - 프랑크푸르트에 기반을 둔 CEINEX 거래소는 유럽투자자의 중국 증권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CEINEX는 초기단계의 위안화 표시 현물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장조건에 따라 점차 위안화 표시 금융파생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임

#### □ **상해 - 런던 주식시장 연계사업인 '후룬통(滬倫通)' 추진**

- 상해-홍콩 주식시장 연계와 유사하게 영국투자자가 상해에 상장된 중국 주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9월에 후룬통 실시계획을 발표<sup>35)</sup>
- 2016년 11월 열린 제8회 “중영재경대화(中英經濟財經對話)”에서 중국 상해거래소와 런던거래소를 연계하는 후룬통(滬倫通, 倫敦-上海股市聯通計劃) 연계사업의 가속화에 대해 언급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공동 연구할 것을 협의함
- 후룬통은 중국이 홍콩 이외 자본시장과 연계하는 최초 시범프로그램으로서 중·영 양국의 금융서비스영역에서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영금융서비스전략규획(中英金融服務戰略規畫)”에서는 8대 중점 영역 (자본시장, 자산관리, 보험업과 양로금(養老金, 중국의 국민연금에 해당), 은행업, 녹색금융, 핀테크, 일대일로 창 의 및 보혜금융)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양국은 “중영핀테크브릿지(中英金融科技橋)”를 만들어 핀테크 영역에서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것에 관해 협의함
- 그러나 상해-런던 주식시장 연계는 상해-홍콩 연계에 비해 도입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시차, 공매도 및 자산 대체성의 불확실성, 결제주기(T+0 거래) 등 메커니즘의 차이, 위안화를 유일한 결제통화로 하는 문제 등임

#### □ **런던금속거래소와 홍콩선물거래소간 연계 - '룬강통(倫港通)'**

- 2015년 10월 홍콩거래소의 자회사인 홍콩선물거래소(HKFE)와 런던

금속거래소(LME)가 상품거래 분야를 연계하는 '룬강통'(倫港通, London-Hong Kong Connect)을 시행하기로 MOU체결<sup>36)</sup>

- HKFE와 LME 거래연계와 HKFE Clearing과 LME Clear 사이의 청산 연계의 구축에 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하는 MOU가 발표되었지만 규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아직 계류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도 아직 발표된 바 없음
- 만약 성사가 된다면 이를 통해 유럽투자자가 위안화 선물 및 기타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

#### 다. 중국과 국제시장간 위안화 상품 거래 플랫폼

##### □ 상해에너지거래소(INE) - 위안화 상품선물

- 중국본토 외의 해외참가자에게 역내거래를 위한 직접적인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거래소인 INE는 2013년 11월 상해자유무역실험구에 설립
- INE는 상해를 중국본토에서 상품거래의 핵심허브로 추진하고, 에너지 파생상품(원유, 천연가스, 석유상품, 선물/옵션 등)을 위한 거래, 청산 및 인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로 설립
- INE는 2015년 9월에 전체 규정을 공표
  - 이 규정은 INE 선물거래, 역내 회원요건, 해외 특별참가자 요건 및 정보공시, 선물청산, 리스크 관리, 인도 및 결제은행 등을 규율하는 상세한 지침을 정하고 있음
- INE는 지난 8월까지 원유선물 거래 환경에 대한 4차례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원유선물 상장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짐<sup>37)</sup>

##### □ 상해금거래소의 국제보드(SGEI) 시장

- 상해금거래소(SGE)는 상해자유무역실험구에서 국제보드(SGEI)에 11개의 위안화 표시 금계약을 거래하는 금거래 플랫폼을 개설

- 국제투자자가 금, 은 등 귀금속을 직접 거래하는데 위안화를 사용하고, 보관, 수탁, 인도, 임대 및 이동 등 실물 금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

## □ 외환(FX)시장

- 중국외환거래센터(China Foreign Exchange Trading System & National Interbank Funding Center, 이하 CFETS): 외환시스템 개혁의 결과로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중국 유일의 외환 및 은행간 자금시장임
  -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People's Bank of China, 이하 PBOC)이 창설 및 규율함
- 2015년 11월 25일 PBOC는 CFETS 진입이 공식 등록된 외국 국부펀드를 발표함
  - 3개의 중앙은행(홍콩금융청, 호주준비은행, 헝가리국립은행)이 최초로 승인됨
  - 이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세계은행그룹 신탁기금, 싱가포르정부투자공사(GIC) 등 4개 기관이 국내시장 진입이 허용될 예정

## 라. 자본시장 개방특구 지정을 통한 시범프로그램 확대

### 1) 경제특구(經濟特區)

#### □ 경제특구는 1980년 수출특구에서 경제특구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세계자유무역항구의 주요형식을 따라 시행됨

-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통해 양질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며, 선진기술과 과학 관리방법 등을 도입하여 특구의 산업기술 및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제특구는 특구만의 특별한 경제발전 목표에 알맞은 정책 조치들과 그에 필요한 경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대외 지향적인 경제발전체계를 구축하게 함

□ 현재 중국 전 지역에 걸쳐 7개 경제특구가 지정됨([표 5] 참조)

[표 5] 중국 지역별 경제특구

번호	지정날짜	소재지역	경제특구명칭
1	1980.08.26	광둥성	심천경제특구(深圳)
2	1980.08.26	광둥성	주해경제특구(珠海)
3	1980.10.07	복건성	하문경제특구(廈門)
4	1981.10.16	광둥성	산두경제특구(汕頭)
5	1988.04.13	해남성	해남경제특구(海南)
6	2010.05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경제특구(喀什)
7	2010.05	신장위구르자치구	후얼귀치경제특구(霍爾果斯)

자료 : 바이두 백과

## 2) 국가급 신구(國家級新區)

- 국가급 신구는 행정규획 조정을 위한 국가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이며, 현재 전국에 걸쳐 19개 지역이 있음([표 6] 참조)
  - 중앙정부의 승인 하에 설립되며,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성향을 가짐
  - 신구의 지역범위는 하나의 행정도시(‘시’) 지역 내에 지정됨

[표 6] 중국 19개 국가급 신구

번호	명칭	지정날짜	지역	면적
1	포동신구(浦東)	1992.10.11	상해(上海)	1,210.41km <sup>2</sup>
2	빈해신구(濱海)	2006.05.26	천진(天津)	2,270km <sup>2</sup>
3	양강신구(兩江)	2010.05.05	중경(重慶)	1,200km <sup>2</sup>
4	단산군도신구(丹山群島)	2011.06.30	단산(丹山)	육지1,440km <sup>2</sup> 해역20,800km <sup>2</sup>
5	란주신구(蘭州)	2012.08.20	란주신구(蘭州)	1,700km <sup>2</sup>
6	남사신구(南沙)	2012.09.06	광주(廣州)	803km <sup>2</sup>
7	귀안(貴安)	2014.01.06	귀양(貴陽)	1,795km <sup>2</sup>
8	서함신구(西咸)	2014.01.06	서안(西安)	882km <sup>2</sup>
9	서해안신구(西海岸)	2014.06.03	청도(靑島)	육지2,096km <sup>2</sup> 해역5,000km <sup>2</sup>
10	금보신구(金普)	2014.06.23	대련(大連)	2,299km <sup>2</sup>
11	천부신구(天府)	2014.10.02	성도(成都)	1,578km <sup>2</sup>
12	상강신구(湘江)	2015.04.08	장사(長沙)	490km <sup>2</sup>
13	강북신구(江北)	2015.06.27	남경(南京)	2,451km <sup>2</sup>
14	복주신구(福州)	2015.08.30	복주(福州)	1,892km <sup>2</sup>
15	전중신구(滇中)	2015.09.07	곤명(昆明)	482km <sup>2</sup>
16	하얼빈신구(哈爾濱)	2015.12.16	하얼빈(哈爾濱)	493km <sup>2</sup>
17	장춘신구(長春)	2016.02.03	장춘(長春)	499km <sup>2</sup>
18	감강신구(贛江)	2016.06.14	남창(南昌), 영수현(永修縣)	465km <sup>2</sup>
19	웅안신구(雄安新區)	2017.04.01	웅현(雄縣), 용성(容城), 안신(安新)	약 2,000km <sup>2</sup>

자료 : 바이두 백과

□ "국가급 신구"의 구성은 신구건설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구의 선도적인 성장으로 전체 지역의 발전 태세를 변화시키고, '방사선' 견인효과를 가지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예를 들어, 상해의 포동신구(浦東新區)는 양자강 삼각주, 동남연해와 지역의 각기 다른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함
- 충칭의 양강신구(兩江新區)는 충칭의 모든 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함
- 대련지역에 지정된 금보신구(金普新區)는 금융개혁 혁신조치들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서비스산업의 선도발전으로 지역경제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주도성장엔진 구축을 목표로 함([부록 자료 4] 참조)

- 중국 국무원은<sup>38)</sup> 대련의 협력파트너 도시로 상해를 지정하고, 상해에서 선도적으로 취했던 개혁개방정책들을 대련 금보신구에서 복제 및 확대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대련시 금보신구의 선도발전이 동북 3성 지역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대련시 금보신구는 상해 포동신구와의 협력협작을 강화하여 해운센터·금융센터·무역센터·자유무역실험구·신흥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북3성의 '포동신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상해 포동신구에서 선행 실행되었던 자본시장 시범개방 정책들도 대련시 금보신구에서 복제 및 확대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3) 자유무역구(自由貿易區, Free Trade Area)

□ 자유무역구(Free Trade Area)는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독립관세 주체간에 무역자유화와 관세면제 그리고 기타 제한규정들을 완화시키는 무역법규로 관리되는 지역임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설립하는 경제통합체를 자유무역구 또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이하 FTA)라고 함
- 이처럼 자유무역구는 국가에서 지정한 무역교역구역이며, 세계 무역기구와 비슷한 규정을 가지나 더 큰 혜택을 부여함
  - 현재 다양한 국가 내에 별도로 설립된 자유무역항과 자유무역구가 이에 속함
- 특징은 두 개 혹은 여러 경제 블록을 구성해 집단을 형성하며, 집단에 해당하는 그룹은 서로 간에 실질적인 관세와 기타 무역제한을 철폐하되, 각자의 대외무역정책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주권국가 혹은 지역정부가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외국상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
  -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항 정책을 채택하여 세금을 피하는 지역
  - 좁은 의미로는 지역구 내 가공구의 수출에 필요한 원료와 같은 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주는 지역으로 수출가공지역구와 유사함
  - 넓은 의미로는 자유무역항과 중개무역구의 역할도 포함됨
  
- FTA는 세계관세기구(WCO)에 근거한 "자유구"의 규정에 따름
  - 세계관세기구에서 지정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FTA는 조약체결 내 일부이며 이 지역에 진입한 모든 물건은 수입품의 세금을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관세영역 외의 지역으로 간주함
  
- 2015년 2월 2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 가서명 이후 공개된 영문 협정문의 지방경제협력 관련 조항(17조 25항)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중국 산둥성 위해시(威海市)를 한·중 FTA 단일 시범 협력 지역으로 지정함
  - 관련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양국 각 시정부의 논의를 통해 한·중 FTA의 무역·투자·서비스·산업협력 등 사항을 두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 시범 결과를 검토하여 동 협력 사업을 양국 전체로 확대해 나감
  - 문제는 금융협력사업에 대한 내용 언급은 없다는 것임

#### 4) 자유무역실험구(自由貿易試驗區, Free Trade Zone)

□ 자유무역실험구는 자국의 법률법규에 근거해 본국 역내에 설립하는 지역성 경제특구를 말함

□ 2013년 9월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국무원은 순차적으로 11개 지역을 자유무역실험구로 지정함

— 전국에 걸쳐 “1+3+7” 순서로 자유무역실험구 지역을 확대([그림 2] 참조)

- 1: 상해(上海), 2013년 9월 29일
- 3: 광둥(廣東), 천진(天津), 복건(福建), 2015년 4월 21일
- 7: 료녕(遼寧), 절강(浙江), 하남(河南), 호북(湖北), 중경(重慶), 사천(四川), 섬서(陝西), 2017년 3월 30일

[그림 2] 중국 자유무역실험구 분포도



자료: <https://todaychina.blog.me/220814958757>

- 2017년 10월 18일, 시진핑주석은 19대 당대회에서 자유무역실험구에게 더욱 많은 개혁자주권을 부여하고, 특히 자유무역항 건설을 가속화 할 것임을 천명함<sup>39)</sup>

□ 료녕자유무역실험구는 심양(沈陽)·대련(大連)과 영구(營口) 3개 도시 지역에 나뉘어서 분포되어 있음([그림 3] 참조)<sup>40)</sup>

- 료녕자유무역실험구는 동북3성 공업기지 개혁 및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것으로 시장체제 개혁의 가속화 및 구조조정 추진 등 중앙정부의 요구를 실현할 계획이며, 동북 공업기지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대외개방수준 제고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음
- 대련지역의 경우 투자, 무역, 금융, 창업 및 혁신, 사후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과감한 시도를 진행하고, 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중 창업을 촉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음

[그림 3] 료녕자유무역실험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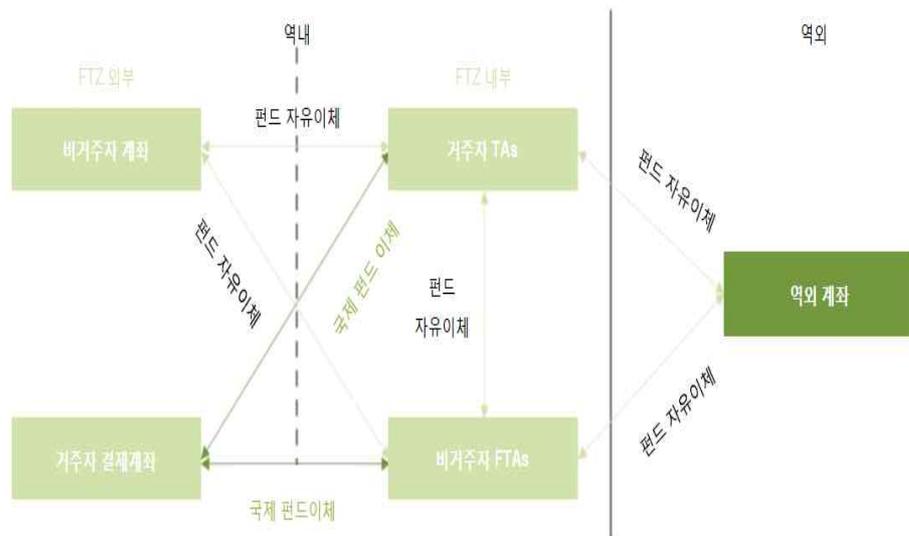
자료: [http://www.yingkou.gov.cn/xwzx/xwtt/201704/t20170401\\_1154623.html](http://www.yingkou.gov.cn/xwzx/xwtt/201704/t20170401_1154623.html)

- **상해자유무역실험구는 2013년 9월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2014년 5월 PBOC는 FT계정 설치 방식과 요건 및 관련된 자본사용을 규정하는 안내서(Circular)를 발표**
  - 2015년 10월 29일 PBOC는 상해자유무역실험구 내 금융시스템의 개방을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
    - 이 조치는 PBOC의 목적이 상해자유무역실험구에서 우선 자본항목 회계에 의한 위안화의 태환을 실현하는 것임을 나타내며, CFETS, SSE 및 상해선물거래소 등 상해자유무역실험구에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
  - **상해자유무역실험구는 위안화 국제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상해자유무역실험구에서 운영되는 회사는 중국 본토 외부로부터 회사 자본의 두 배까지 역외 대부(외국 채무)를 차입하기 위해 FT계정을 이용할 수 있음
  - 중국 내 다른 자유무역실험구도 상해자유무역실험구와 같은 자본항목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상해자유무역실험구는 시범프로그램으로서 자본통제 완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국제지급절차 단순화** : 상해자유무역실험구내 법인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정부의 FX등록 승인 없이 자본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상해자유무역실험구 내 은행들은 자본항목 및 당좌항목에 대하여 FX 등록 및 위안화 국제 결제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
  - **자유무역계좌(FT계정)** : 상해자유무역실험구 내 법인들은 FT계정을 개설할 수 있고, FT계정, 기타 역외계좌, 역내 **위안화비거주민결제계좌(Non-Resident Account, 이하 NRA계정)** 사이에 자유롭게 자금을 이체할 수 있음
    - 첫째, 상해 내 금융기관은 특별 자유이전계좌시스템(FTU)을 설치할 수 있고, FT계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실험구 내 법인 및 외국인 기관의 투

자 및 금융활동을 위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둘째, 자유무역실험구 내 적격법인은 FT계정을 개설할 수 있고 중국 비 자유무역실험구 구역과 “제한적 자본보호(Limited Capital Permeation)” 기반으로 국제자본 이전을 실행할 수 있음([그림 4] 참조)

[그림 4] 자유무역계좌(FT계정) 펀드자금 자유이체



자료: 자체 작성

- **국제금융에 대한 관리 완화:** 자유무역실험구 내 법인들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역외 위안화 펀드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아웃바운드 증권 및 FX 금융에 대한 관리가 완화되고 있음
- **위안화 환전:** 상해자유무역실험구 내 법인들은 완전한 자본계정 위안화 및 FX 환전성을 누리고(예를 들어 FIE) 외환을 위안화로 즉시 환전하여 위안화 헤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비상해 자유무역실험구 FIE는 환전 전에 경화(hard currency)에 의한 통화지급의 상업계약이 체결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함
- **예금이자율 자유화:** 상해자유무역실험구 내 법인들은 법정 이자율 한도 완화로 외환 및 위안화 예금에 대하여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상해자유무역실험구는 투자자자격, 지분비율 및 허용 업종범

위에 대한 이전의 제한사항들을 완화하고 있음

#### □ Negative list 방식 사용

- Negative list 방식은 상해자유무역실험구가 2013년 9월 발족할 당시 도입한 혁신적인 관리방식이자 행정방식임
- 이것은 제한된 분야만 열거하는 것으로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분야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유로이 진입할 수 있음
- 상해 정부는 금지 분야 또는 자유무역실험구 투자자에게 제한이 붙는 분야의 목록을 공표
  - 이 목록에는 원래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커버하는 190개의 제한 및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 □ 자유무역실험구의 본질적 제도핵심은 금융혁신을 위한 시범지역이라는 것임

- 자유무역실험구는 중국정부의 개혁개방 확대의 중요한 제도적 조치이며, 실험구에서 실행한 선도적인 개혁개방조치의 복제 및 확대 실행을 통해 전국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자유무역실험구 설립의 중요목표임
  - 주로 어려움이 크고 위험성이 크며 영향력이 큰 개혁개방혁신들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조치들을 시범실시하는 것이 목표
- 중국의 개혁은 종래로 ‘한번에 일차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며, 시범적인 개혁개방조치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취함
- 이 과정에서 ‘실험구’는 바로 선행·선시범의 제도혁신을 실현하여 선제적으로 제도혁신의 기대성과와 리스크 평가를 미리 체감함으로써 제도개혁개방의 경험을 하기 위한 중요한 선행제도임

#### □ 현재 자유무역실험구로 지정된 지역들에서는 상해자유무역실험구

## 금융제도 혁신의 성과를 복제하고 확대 적용할 것에 대해 연구하고 시범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짐

- 우선 복제 추진지역 범위에 따라 상해 내 자유무역실험구 이외 지역, 자유무역실험구 관련지역과 전국적 범위 순위로 지역적 동질성, 복제 편리성, 리스크 통제 용이성 등 측면에서 복제 및 실행되고 있음
- 다음 복제 제도 항목 수에 따라 단일 항목 제도복제와 복수 항목 제도복제 및 전체 항목 복제 3가지 유형으로 나뉨
- 마지막으로 추진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과 지방정부 자체가 스스로 복제 실행할 것을 신청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음. 즉 현재 상해 및 신설 자유무역실험구 기초 상에서 중앙정부에서 더욱 많은 지역에 복제 및 확대 실행하게 하는 조치와 일부 지방정부에서 자유무역실험구의 제도성과를 벤치마킹하여 자주적으로 학습하고 자유무역실험구 개혁제도 중 성공사례나 선진적인 경험을 유치하는 것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경우 비교적 조직화된 방식으로 지역적 경제조건과 지리적 위치를 많이 고려하게 되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경제조건 이외의 요인, 예를 들면 정부 개혁의지, 정부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각자 장단점이 있음

— 이상 3가지 경로는 상호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교차되는 경우가 많음

### □ 현재 11개 지역이 자유무역실험구로 확대되면서 제도혁신은 심화되고 있으며, 상해의 관련 금융혁신 정책들을 전국적 범위에서 복제 및 확대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음

— 자유무역실험구의 정책복제 확대는 개혁과 개발의 방향성 실험이 아니라 개혁개방과정의 심화이며, 개혁개방시의 리스크 저점(위험한도)을 실험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유무역실험구 성과의 확대와 복제는 속도와 깊이 및 범위 확대를 모두 요구함

— 자유무역실험구의 제도적 혁신은 리스크에 대한 테스트 기능뿐만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새로운 제도적 혁신수요를 창조하고 제도

적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과 제도공급 확대를 위한 조건을 제공함

- 상해자유무역실험구 금융제도혁신의 복제 및 확대 실행의 총체적 구조특징으로 볼 때 주로 외환관리, 은행업무, 감독 최적화 등 영역에서 이루어짐

#### □ 광둥·복건·천진 자유무역실험구 금융혁신 특징

- 광둥·복건·천진 세 개 지역의 자유무역실험구는 2015년 설립되어 금융영역에서의 적극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특징을 형성하고 있음
- 복건자유무역실험구 금융혁신의 주요특징은 중국 본토와 대만 양안 지역간의 금융협작의 선행·선시범 제도라는 것임
  - 자유무역실험구내 금융기관의 진입을 최적화하고, 금융기관의 집중화와 국경간 금융업무 확대에 중점을 두며, '일대일로'를 위한 서비스 강화에 목표를 둠
- 광둥자유무역실험구의 금융혁신의 특징은 주로 국경간 결제에서 위안화를 주요통화로 하는 것이며, 심천 전해(前海, 첸하이)는 우선 외국채권의 시범시행(外債宏觀審慎試點)을 추진하였으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전자증명은행카드(電子証照銀行卡)'를 실행한 바 있음
  -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부서비스와 금융서비스 정보 응용 채널의 연결을 실현하고
  - 광둥-홍콩-마카오 금융인프라간의 상호연결을 실현하여 주해·형금(橫琴, 형친)지역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국경간 대중교통 금융IC카드(跨境公共交通受理金融IC卡項目)를 실현함
- 천진자유무역실험구 금융혁신의 가장 큰 특징은 용자임대업무 혁신과 경진익(京津翼, 징진익이라고 불리며, 북경·천진·하북성을 포함) 일체화 금융혁신임
  - 용자임대업무 혁신은 용자임대 회사가 판매이후 설비대금의 외화지불, 연합임대업무, 용자임대기업 본부 및 결산센터 입주 지원, 국제·국내 두 시장의 고효율 자원 배치, 해외 임대보증보험 확대, 행정지역간 금융거래비용 인하 등의 시범실행을 포함

- 상해자유무역실험구 금융개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유무역실험구의 기업과 개인의 FT계정 허용, NRA계정을 통한 자금의 역내외 자유이동이지만 현재 이 항목에 대한 복제확대는 정체됨
  - 현재 광둥(粵)·복건(閩)·천진(津) 3개 지역의 금융제도방안을 보면 한도 내 자유태환 계좌방식이며, FT계정 방식이 아님

□ 상해자유무역실험구 금융혁신 제도 복제 및 확대 실행의 논리와 조치

- 자유무역실험구의 제도혁신은 점차적인 성숙과정을 거치면서 복제 및 확대 실행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실험구의 혁신과 제도우위는 다른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과정에서 더욱 큰 지역 연동과 글로벌 도시기능의 효능을 발휘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기능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임
- 자유무역실험구 금융혁신과 상해국제금융센터 구축간의 연동을 강화하여 자유무역실험구 금융의 방사확대 기능을 발휘: 기타영역의 제도혁신과 달리, 금융영역에서 혁신의 복제 및 확대 실행은 전체 금융개혁과정의 속도제한을 받으며, 금융요소의 집합특징은 자유무역실험구 금융혁신이 방사기능을 통해 효력을 발휘하게 함
- 자유무역실험구 핵심금융제도의 혁신기능과 시범범위를 확대: 현재로 볼 때 자유무역계좌의 시범범위와 개방정도를 진일보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관련제도를 완화하는 것
  - 우선 FT계정과 기타계정과 연계망을 실현하여 자금유통의 장애를 해소하고,
  - 다음 FT계정의 리스크 방어기능의 향상과 동시에 리스크 통제시스템이 갈수록 성숙되게 한 이후 계좌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 세 번째는 FT계정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FT계정에 근거한 자본항목 개방을 가속화하고, 자유무역실험구와 국제 금융자산 거래플랫폼 및 국제에너지거래소 등 금융시장거래 시스템과 금융상품 설계 중 FT계정을 운용할 수 있게 함
- 상해자유무역실험구 금융제도의 복제와 확대 실행 및 지속적인 혁신

## 신을 통해 새로운 제도 혁신 경험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임

- 아래는 2015년 10월 29일 '상해 국제금융센터 건설 가속화 관련 방안'에서 발표된 상해자유무역실험구 금융개방 혁신 시범 추진 제도임
- 발표 이전 '금융개혁 49조'라고 주목을 받았지만 최종 40조항 포함되어 '신 금융개혁 40조'로 불리며,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우선 실현을 핵심내용으로 함([표 7] 참조)

**[표 7] 신 금융개혁 40조 내용**

주제	설명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시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계정 한도 내 태환시행을 적극 검토 중이라 밝힘</li> <li>· 자본계정 한도 내 태환이 시행되면 상해자유무역실험구 기업 중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해외 투융자 가능</li> <li>·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한도액이 설정되면 한도액 내에서는 투융자와 관련된 자금출입이나 태환에 제한받지 않고 직접투자, 인수합병, 채무증서, 금융류 투자 등을 포함한 자본계정 해외거래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음</li> </ul>
위안화 해외 사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산업투자·금융투자를 중시하고 자본과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 위안화를 세계 주요 거래 및 비축, 가격결정 통화로 편입</li> </ul>
금융 서비스의 대내외 개방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표준 수준에 발맞추어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자본과 외자금융기관에 금융 서비스업 확대 개방을 추진</li> <li>· 적격개인투자자(QDII2) 해외 투자 시범운영 시작: QDII2란 자격을 갖춘 중국개인투자자가 해외 통화·펀드·채권 등 자본시장에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제도</li> <li>· 2014년 상해와 홍콩 증시의 연계거래를 허용한데 이은 자본시장의 규제 철폐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li> </ul>
국제 금융시장 건설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실험구의 금융제도 혁신과 대외개방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 플랫폼을 건설해 해외투자자가 국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확대</li> </ul>
금융개방에 상응하는 금융리스크 대응 메커니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실험구 발전 및 상해 국제금융센터 구축에 적합한 감독관리연동 메커니즘 마련</li> </ul>

#### 4)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區)

□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지방정부 허가에 의해 설립된 과학공업원 구입

- 이는 고신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특정구역으로 지능밀집, 기술밀집 그리고 개방환경에 의거하여 과학과 경제의 실리를 추구함
- 주로 국외의 선진과학기술과 자금관리수단을 유치하고, 첨단기술산업의 우대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과학기술 성과를 극대화하여 현실화하는 지역을 구현함
- 전국 146개 국가고신구와 소주공업원을 합쳐서 총 147개 지역이 이에 해당함

#### 5) 자주혁신시범구(自主創新示范區)

□ 창조적 선도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기술혁신 선도, 산업선도, 경제와 사회발전을 선도,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고과학기술발전원구로서 국가의 신기술과 지역경제사회의 발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함

-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음
  - 시범적인 지원 정책 활성화
  - 과학기술금융개혁의 혁신 심화
  - 국가과학기술의 중대한 전문항목의 경비에 대해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
  - 새로운 산업조직의 국가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 참여지지
  -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정책 실시
  - 조직 편성 발전 계획

- 현재 전국에 걸쳐 17개 자주혁신시범구가 있음: ([그림 5] 참조)

[그림 5] 자주혁신시범구 분포도



자료: 바이두 백과

## 6) 청도시 재부관리(Wealth Management) 금융종합개혁 실험구(青島市財富管理金融綜合改革試驗區)

### □ 출연배경

- 2014년 2월 10일, 중국인민은행 등 11개 부문이 연합하여 산둥성(山東省)인민정부에게 “청도시 재부관리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총체적 방안 배포에 대한 통지(關於印發青島市財富管理金融綜合改革試驗區總體方案的通知), 銀發 [2014] 38号”를 하달하였음
- 금융체제개혁의 심화, 중국경제사회발전의 자산관리에 대한 절박한 수요 만족, 청도시 자산관리 등 분야에 있어 종합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자산관리 시장발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주민의 자본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조성됨

### □ 총 3단계의 발전계획 제정<sup>41)</sup>

- **1단계 기초건설 단계:** 재부관리 양성 거점에 의거하여, 더욱 많은 민간경영 은행과 자산관리기관을 도입함과 동시에, 시범정책을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이 허용 받는 것으로 자산의 운영과 관련된 금융개혁혁신을 전개하고자 함
- **2단계 자산관리 기능 강화단계:** 성숙한 산업 제공과 풍부한 인재 비축에 치중하여, 국내외 자산관리기관의 지역본부가 청도금융밀집 구역에 자리하도록 추진함
- **3단계 전반적인 심화 및 강화단계:** 국제 자산관리 허브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영향력이 있는 자산관리기관이 청도에 본부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함

#### □ 경제 및 투자현황

- 청도시는 “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기간에 금융업이 GDP의 8%-10% 차지하여 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20%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함<sup>42)</sup>
  - 금융기관 총수가 300개 이상을 초과하고, 생명보험·선물회사 등 기관 투자자의 수가 50개 이상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함
  - 전체 청도시 외화(本外幣) 예금과 대출액이 각각 1만 7,000억 위안, 1만 5,000억 위안에 달하고, 금융업 부가가치는 7,000억 위안 및 GDP 성장률은 평균 7%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상장회사 총수 60개, 신삼판(新三板, 중국의 중소·벤처기업 대상 장외시장) 상장기업 300개, 남해(藍海)주식거래소 1,000개 기업 상장을 목표로 함
  - 주식투자펀드회사 60개, 주식투자펀드관리회사 120개, 공모펀드관리회사 설립 및 펀드자산관리규모가 1,000억 위안 돌파를 목표로 함
  - 소액대출회사와 융자담보회사 및 민간자본관리회사 등 지방금융기관 수가 150개에 달하며, 금융업 종사인원이 16만명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정함
- 청도시는 2016년 Z/Yen 그룹의 GFCI 순위에서 79위, 중국 본토에서 5위를 차지하며, 산둥반도 남색경제구의 선두도시로서 미래 발

### 전 전망은 무한함<sup>43)</sup>

- 청도시의 경우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과 상업은행 수가 제남시보다 많음
- 은행업: 홍콩시장에 상장된 청도은행, A주 상장이 예상되어 있는 청도 농업상업은행, 국유은행과 주식제상업은행<sup>44)</sup>의 분행, 동아은행 등 외자은행도 입점해 있음
- 보험업: 중국인민보험, 평안보험 등 대형보험사들의 청도법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도 지역 보험회사인 중로교통재산보험주식회사(中路交通財產保險股份有限公司)도 있음
- 증권업: 본토 증권사였던 만통증권은 중신증권(산둥)으로 변경되었고, 기타 대형증권사들의 청도법인과 영업점 등 100여개 기관이 입점해 있음
- 사모펀드업: 123개 기관이 있어 제남시의 129개 기관과 비슷함

— 청도시는 ‘1항 3회’(PBOC, CSRC, CBRC<sup>45)</sup>, CIRC<sup>46)</sup>)의 금융감독 관리기관이 모두 입주해 있으며, 산둥성 성도 제남시와 동급을 유지

□ 청도시의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보면 혁신금융 중심으로 다층적 자본시장 구축과 글로벌 금융생태계 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sup>47)</sup>

- 청도시는 주변국가와 지역과의 금융합작을 중점사업으로 정함
  - 특히 한국·일본·싱가포르·홍콩·마카오·대만 등 주변지역과의 금융협력을 심화시켜 금융기관의 유치와 더불어 중국기업의 해외 상장과 채권발행, 그리고 금융혁신연구와 인재교육양성 및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지방소재 주식거래시장의 역할 확대에 관한 내용에서 남해주식거래소를 자기특색이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는 지역 주식거래 허브로 육성할 것임을 밝힘
  - 정부인도기금(政府引導基金)<sup>48)</sup>을 설립하여 남해주식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남해주식거래소와 신삼판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 본토 거래소들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 코스닥과의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공동연구·시장확대·정보분석·기술지원 등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사모채권과 주식의 양방향 발행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여 중소기업 주식거래 플랫폼과 자산관리금융상품 거래 플랫폼 및 “XIN LAN CHOU(信藍籌)”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등의 연계발전을 제시함

— 대중혁신·만중창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청도시는 보혜금융의 발전전략으로 FinTech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IP(지식재산권)금융을 발전시켜 창업혁신허브·벤처금융허브 및 글로벌 선도적인 자산관리허브가 될 것임을 제시함

- 이를 위해 다층적 자본시장 구축과 국내·국외 자본시장간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클라우드펀딩과 인터넷금융의 선도적이며 규범화된 발전을 이룰 것을 목표로 밝힘

### 3. 시사점 - 한·중 자본시장 연계 시범사업에 적용 필요

□ 한국내 위안화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이 절실함

— 위안화 지급 결제 확대 예상: 앞으로 한·중 무역과 전자상거래에서의 위안화 결제규모와 비중 확대가 예상되어 세계 평균수준에 가까워 질 것으로 예상됨<sup>49)</sup>

—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 금융기관·기업·개인의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위안화 표시 펀드·채권·주식 등 금융자산은 한국 금융기관과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한 대체상품이 될 것임

- 현재 중국 본토 내에서 외국인의 위안화 금융자산 보유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sup>50)</sup>

— 위안화 금융수요 확대: 한·중 양국기업의 상호투자 확대에 따라,

특히 일대일로 지역들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라 위안화 자금조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국내 김치본드와 중국 판다본드 시장의 확대에 이어질 것임<sup>51)</sup>

- 한국기업의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 수요 확대와 중국기업의 한국 국내 투자 확대에 따라 위안화 자금조달의 수요가 늘어날 것임<sup>52)</sup>

□ 이상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해외 특정지역과의 특구지정 협력 및 국가 내 자유무역실험구 지정과 같은 특구 지정을 통한 방식으로 위안화 자본시장의 개방과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간의 FTA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자본시장 연계 시범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위안화 시장 활성화 촉진이 필요

□ 기존 모델들의 비교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한 한국에 적합한 한·중 자본시장 협력모델 발굴 필요

- 각 모델별 목적, 협력 상품, 중국이 성취한 것 비교
- 장·단점 비교
- 한국에 적합한 모델 선정 및 사유 등 고민이 필요

□ (한·중 지방정부간 금융협력 추진) 동북아 한·중 FTA 특구 설치-훈춘·러시아·일대일로·대련·청도·연태 등 지역을 활용하여 동북 지역 및 산둥반도를 기점으로 하는 위안화 조달 허브 역할로 한국 위안화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며, 중국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 한국 특구 지정을 통한 자본항목 시범개방 프로그램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 청도시와 한국 부산시간 금융협력 추진 중
  - 예탁원과 부산시 그리고 청도시 3자는 부산시와 청도 두 지방도시간

금융협력 사업을 추진 중

- 본 금융 협력사업에는 부산·청도 공동사모펀드 설립, 청도시와 지방공공기관의 부산에서의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 그리고 양 도시의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간 교환 학생 등의 교류 등이 포함
- 대련의 금보신구는 료녕자유무역실험구의 시범제도 혁신지역이므로 상해자유무역실험구 개방제도를 복제하여 시범실행이 가능하므로, 이들 지역과 자본시장 영역에서의 FT계정 개방 시범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표 8]는 현재 전 중국지역에서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산업단지들과의 금융협력도 추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표에서 청도와 대련지역 모두 對 한국 산업협력단지가 있으며, 협력분야 중에 모두 금융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표 8] 중국의 한·중 산업단지 추진 지역 현황**

한·중 산업단지	주요 협력 분야
한중연변(延邊)산업단지	차세대 S/W, 헬스케어, 국제물류, 광섬유
연태(煙臺)한중산업단지	첨단장비, 신에너지, 금융, 문화, 헬스케어
위해(威海)한중경제협력시범구	전자상거래, 관광, 헬스케어
한중염성(塩城)산업단지	스마트 장비, 서비스업, 신에너지, 자동차, 광전융합사업
제남(濟南)한중첨단산업협력시범구	차세대 IT, 신소재, 서비스 무역
청도(靑島)청한중혁신산업단지	차세대 IT, 신에너지 자동차, 화학, 금융, 문화, 헬스케어
대련(大連)한중무역협력구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광, 금융, 문화
중경(重慶)양강신구한중산업단지	차세대IT, 첨단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문화산업
온주(溫州)한중산업단지	첨단 자동차부품, 광산업, 섬유, 의류, 신소재

자료: 각 언론 종합

한국과 중국간 자본시장 협력 방향

- 추진 가능 지역 및 사유: 우선적으로 거리가 가깝고 경제협력이 활

발한 산동성 지역과 료녕성 지역을 전략적인 협력파트너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 도시 지정에 있어서 이미 국가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협력할 경우 혁신적인 금융시범협력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 산동성은 리커창총리 방한 시 양국 정상간 합의로 한국의 위안화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산동성 청도시는 중국 재부관리금융종합개혁실험구로 지정됨
- 료녕성의 경우 한국과의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11개 자유무역실험구 중에서 유일한 동북3성 지역이며, **선도적인 자본항목 개방 시범프로그램 추진이 용이함**(예: 국가신구이면서 자유무역실험구에 포함된 료녕성 대련시 금보신구)

— **협력방향:**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선진금융중심지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장개설에 있어 양국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메이저 자본시장이 아닌 지방정부간에 아래와 같은 영역에서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한·중 자본시장간 연계프로그램은 플랫폼 연결이 되어야 할 것임**

- 크라우드펀딩 및 중간회수시장
- 중국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채권 시장(일대일로 재원 마련 채권 포함하여 한국을 아시아 채권허브로 구축전략 가능)
- 3자간 Repo(tri-party repo)시장 등

— **협력전략:**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가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FIN-Tech·Block Chain 등의 Payment 관련 신기술을 접목해야 함.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한중 시범지역이 신금융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 한국 ⇔ 중국 지방도시간 자본시장 협력 가능 연계모델

— **시장 연계 모델:** 후강통·선강통·채권통 등과 같은 시범제도의 핵심은 인프라 연결 시범프로그램이라는 점

- **후강통·선강통 방식:** 산동성 내 클라우드펀딩 플랫폼과 한국 클라우드펀딩 플랫폼간 상호 연계를 후강통·선강통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동시에 클라우드펀딩 지분의 중간회수시장간 연계 추진도 가능할 것임
  - 이를 통해 거래비용 절감, 중국정부의 외환한도 조절과 감독관리 편의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기에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이 모두 확보된 시범개방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임
- **온라인 중개 플랫폼 회사간 연계 방식:** 한·중 양국의 클라우드펀딩 특화 온라인 중개회사를 상호 지정 및 연계한 모델, 초기에는 이런 진행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음
- **단일 시범시장 구축 방식:**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구축된 CEINEX처럼 한국에 한·중 클라우드펀딩 및 중간회수시범시장을 구축하고 양국 투자자에게 문호 개방
- **클라우드펀딩 및 중간회수 시장용 투자프로그램 신설:** 현재 청도 QFLP<sup>53)</sup>만 중국 내 클라우드펀딩 투자 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투자 편의성을 대폭 높인 클라우드펀딩 전용 투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양국 투자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후강통·선강통 및 상해자유무역실험구와 같은 국제금융특구 시범 운영사례가 있듯이 클라우드펀딩 영역에서도 비슷한 정책혁신을 취함으로써 자본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제협력을 통해 벤처기업을 위한 자본유동성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중국은 아직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국내외 투자가 제한되고, 외환관리 제약을 크게 받음. 이는 중국 지방도시와의 금융시범협력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임
- 미국의 나스닥이 전 세계 많은 혁신기업의 상장을 통하여 글로벌 자본시장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듯이 한·중 양국도 글로벌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자

본시장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금융지위 향상과 함께 ‘보혜금융’의 국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수요확대 측면에서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선도적 적용모델로 한(부산)·중 클라우드펀딩 시장 연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

- 한·중 클라우드펀딩 연계 시범 사업을 통해 한국인의 중국내 클라우드펀딩시장 투자 및 중국인의 해외(한국) 클라우드펀딩시장 투자를 시범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양국 혁신기업 자금조달 시장의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즉, 한국 부산의 클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중국 시범도시 클라우드펀딩 플랫폼간의 연계를 통해 양국 중앙정부로부터 시범제도 관련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양국의 투자자는 각각 한·중 잠재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 지방도시간 금융협력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도시의 금융기능을 특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며, 이를 통해 부산이나 중국 지방정부 고유의 금융도시로서의 기능 강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장외시장으로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즉, 기존 중국 자본시장 개방프로그램(후강통, 선강통, 채권통, QFII, RQFII)으로는 외국인이 중국 비상장 혁신기업 지분을 투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 시범프로그램을 통해 한·중 양국투자자 모두 외국의 비상장 혁신기업 지분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 **한·중 자본시장 시범 개방 On-shore 특구와 Off-shore 특구가 지정 될 경우 정부간 협의해야 할 사항**

— 중국정부가 협력해야 할 사항

- 중국은 현재 본토와 홍콩간의 플랫폼 연결(후강통, 선강통) 시범사업과 QDII2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해외 자본의 중국 국내 상장기업 지분 투자와 중국 국내자본의 해외 상장기업 지분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사업에서도 양국 기업들의 지분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범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함
- 즉, 자국 협력 시범도시에 QDII2 제도를 확장허용하거나 신설 라이선스제도를 시행하여 투자대상으로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대상 증권 및 중간 회수시장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 또한 한국(부산) 관련기관과 개인투자자에 크라우드펀딩 투자 전용 라이선스와 쿼터를 부여(즉 QFII2<sup>54</sup>)를 시행하거나 신설이 필요)해야 함

— 한국 정부가 협력해야 할 사항

-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어 있으므로 한·중 지방도시 연계시 효율성 확보나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특히 후강통 시행시 채택한 효율성 확보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래의 사항들이 그것들임
- 한국은 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중국투자자에 한하여 외국인투자등록 면제
- 감독기관은 예탁기관간 Omnibus A/C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 가능

### III. 부산금융중심지 구축과 위안화 허브 특화 전략

#### [요약]

- 부산이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이후 선박금융 및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하고 있으나 지역본부의 부재, 금융관련 산업과의 활발한 연계 부족 등 전반적으로 금융생태계 조성이 미흡
  - 런던, 뉴욕, 도쿄,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전통적인 국제금융도시는 해당 국가의 산업수준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음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강함
    - 부산시 또한 항만 물류, 조선, 해운, 문화 등 강한 산업분야를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영역을 앞세운다면, 국제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부산은 앞으로 국제금융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해외자본의 한국 중소혁신기업 지분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벤처자본 조달의 용이성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두 기구 모두 금융부문의 경쟁력 평가에서 벤처자본 조달의 용이성과 주식시장 접근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
  - 우선 FinTech를 활용한 지분투자와 자본조달의 용이성을 강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FinTech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키워나갈 필요
  - 크라우드펀딩 등 중소혁신기업의 벤처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
- 한·중 금융협력 시범사업을 특화전략으로 활용할 필요
  - 부산과 중국 현지의 시범도시(예: 대런, 청도 등)와 연계하여 한·중 크라우드펀딩 연계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여 중소혁신형 기업을 위한 벤처금융의 활성화에 기반을 둔 금융중심지라는, 서울과는 차별화된 지위가 확고하게 자리하도록 노력 필요

# 1. 부산금융중심지 구축 현황과 문제점

## 1.1 부산금융중심지 추진 현황

□ 2009년 1월, 정부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함에 따라 부산시는 금융허브 역할과 더불어 항만 물류, 선박, 수산 등 차별화된 특화 금융기능을 가진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동북아 해양수도’를 향한 부산의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 기능을 크게 강화시켜나갈 계획을 추진 중임<sup>55)</sup>

—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조성,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주요 선박해양 금융기관 및 선박금융 부서의 부산 유치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sup>56)</sup>

- BIFC 1단계 완공 및 해당 센터 내 금융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입주 완료
- 선박과 조선관련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설치를 통해 부산을 비롯한 경남지역 소재의 해운 및 조선 산업에 긍정적 효과기대<sup>57)</sup>

□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은 크게 3가지로 분류

— **해양금융 활성화:** 선박 및 해운금융 특화 금융기관 유치, 선박 및 해운금융 전문기관 설립,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 구축 등

- 한국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개소(2014.10)를 시작으로 KSF 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본부 개소(2014.11), 한국해양보증보험(주) 보험업 인가(2015.06)를 포함하여,
- 선박은행(tonnage bank)기능을 담당할 한국선박해양(주) 설립(2017.04) 등 선박 해양부문의 BIFC 집적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SM상선 본사의 부산유치와 해양진흥공사(2018년 예정)의 설립이 이루어지면 해양 금융기관의 물리적 집적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임

— **파생금융 활성화:** 새로운 파생금융상품 개발, 거래시스템 선진화,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탄소배출권 거래소 운영 등

- 한국거래소 내 파생상품연구센터 설립(2012.02)을 시작으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업무(CCP) 개시(2014.03), 미니선물 및 미니옵션 시장 개설(2015.07) 등 파생상품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를 개소(2015.01)하는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관련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중임

—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유치:** 백업센터, 전산센터 구축 등 기반 강화, 정부 및 금융기관의 백업센터 유치, 외국회사(MS 등)의 데이터센터 유치 중임

□ **부산국제금융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짐<sup>58)</sup>**

— 1단계: 금융센터 기반 설립

- 금융산업 육성 및 전반적인 설계 수립
- 문현혁신도시 BIFC완공 및 공공기관의 이전
- 금융인력 배양, 네트워크 강화, 국제화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핵심시설 이동

— 2단계: 금융특화 배양 및 국제금융 기초시설 설립

- 영어, 거주,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환경 기초시설 설립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 3단계: 금융 IT산업 개편 추진

- 금융보안원(Financial Security Institute, FSI) 남부지점 설립 등 금융 IT산업 핵심부문의 부산으로의 이전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전자결제시스템의 3단계 이전 추진 및 INDEX센터 건설

— 2018년까지 업무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구축하여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 하반기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해양파생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할 예정임

- 3단계에서는 부산항 재개발과 함께 해양, 조선업무 분야의 국제기관을 유치하고, 문현단지와 북항을 연결하는 국제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할 계획임
  - 국제금융기관 유치를 위해서 런던, 싱가포르, 홍콩, 도쿄, 카사블랑카 등 각도시의 금융중심지 추진기구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sup>59)</sup>

## 1.2 평가와 문제점

-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이래로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하고 있으나 지역본부의 부재, 금융관련 산업과의 활발한 연계 부족 등 전반적으로 금융생태계 조성이 미흡함
  - 서울 수도권으로의 자원집중,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성장동력 산업의 미흡, 해양(항만물류, 해양바이오, 수산가공 등)관련 금융산업의 인프라 부족 등 문제가 존재
-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얻기에는 공간적으로 제한점이 있음
  -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은 싱가포르 혹은 홍콩과 비교하여 여전한 업무환경이 선진화되지 못하였으며, 금융단지의 면적 역시 협소함
  - 또한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함<sup>60)</sup>
-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에 위치한 국제금융중심도시는 국제금융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여건 및 정주환경이 국내 외적으로 유명하나, 그에 비하여 부산의 금융중심지는 개발이 더딘 실정임
  - 런던, 싱가포르, 뉴욕, 홍콩, 상해 등 국제금융중심지에 버금가는

### 환경을 조성 할 필요<sup>61)</sup>

- 위에서 언급한 도시들의 공통점은 국제적 위상을 가진 금융중심지임과 동시에 관광명소임
- 현재 부산 역시 관광명소로서 국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나, 금융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문현지구의 매력도는 상위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음
- 금융중심지의 매력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된 관광명소로서의 인프라 조성 또한 필요할 것임

— 런던, 뉴욕, 도쿄, 파리 등 전통적인 국제금융도시는 해당 국가의 산업수준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음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강함

- 이들 도시는 각국의 국내경제의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경제에서 우위적 지위를 선점함으로써 국제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음
- 부산시 또한 항만 물류, 조선, 해운, 문화 등 강한 산업분야를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영역을 앞세운다면, 국제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부산에는 아직 국제금융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활동 가능한 금융관련 전문인력 배출 능력이 미흡함

- 현재 금융관련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국내금융, 소매금융 등에 종사하여 국제금융, 글로벌 자산운용 등 최첨단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금융 종사자들을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특히 선박, 해양, 자산운용 등 특화금융 분야에서 실무 및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금융 선진국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1.3 부산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부산만의 특화산업에 집중하여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도록 함
  - 예를 들어, 위안화 금융관련 인프라 조성 및 금융상품 연구 개발, 전문인력 교육 강화, 금융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 부산 금융중심지에 위치한 금융기업간의 윈윈 효과를 추구해야 함
  - 해양금융, 파생상품 등 부산의 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 생성을 유도함
    - 향후 부산항 재개발과 함께 해양, 조선업무 분야의 국제기관 유치 노력 필요
  - 금융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 교육 등 정주환경, 직항로 확대 등 인프라 조성 필요
  
- 국제금융기관의 부산으로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는 여타 국제도시들과 협력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은행과 보험 산업 선진화, 위안화 파생시장 등 외환시장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실현해야 함
  -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국제금융기관들과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 중국 지방 도시들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도시간 경제협력에 기반을 둔 위안화 국제간 거래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국제 위안화 금융네트워크 구축
  
- 부산은 앞으로 국제금융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찾기 위해 특화된 세부영역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외국인들의 한국 중소기업 지분투자 활성화와 국제 벤처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

-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sup>62</sup>과 세계경제포럼(WEF)<sup>63</sup> 두 기구 모두 금융부문의 경쟁력 평가에서 벤처자본 조달의 용이성과 주식 시장 접근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
  - 우선 FinTech를 활용한 지분투자와 자본조달의 용이성을 강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FinTech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선진화된 IT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글로벌 수준의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금융 결제 시스템 환경 구축
    - 복잡한 인증체계 개선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 클라우드펀딩 등 중소기업의 벤처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산은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부산만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특구'가 되어야 함
- 우선 국제금융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허브 지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 세계 각국의 특정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지방정부들과의 시범협력 사업들을 혁신적으로 찾아나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금융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함
- 향후 부산금융중심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창의적인 금융환경을 구축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 금융중심지법을 개정하여 국제금융중심도시에 버금가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세제 혜택·진입조건 완화·운용라이선스 부여 등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우려되는 금

융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부산시 등)에 한해 한시적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2. 부산의 위안화 금융중심지 특화 전략

### 2.1 공식적 지위 확보 전략

□ (양국 정상외교에 기반을 둔 한·중 금융협력 시범사업 우선 추진) 부산과 중국 현지의 시범도시(예: 대련, 청도 등)와 연계하여 한·중 클라우드펀딩 연계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여 중소혁신형 기업을 위한 벤처금융의 활성화에 기반을 둔 금융중심지라는 지위가 확고하게 자리하도록 노력 필요

- 한·중 양국간 클라우드펀딩 시범사업 실시는 리커창총리 방한(15.10.30)때 양국 정상간 합의된 내용이었으나, 현재까지 실현되고 있지 못한 과제임
- 양국간 공모형 클라우드펀딩 연계를 시행하게 된다면, 양국간의 FinTech 영역 협력사업이라는 시대적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이 공모형 클라우드펀딩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

### 2.2 위안화 금융중심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 (위안화 투자상품,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등 개발 확대)중국기업과 개인들의 투자수요를 국내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해 투자전략상 필요한 다양한 위안화 상품 개발과 활성화 촉진 필요

- RQFII 활용뿐만 아니라 CIBM 진입 확대와 MRF, CFETS 활용, QFLP, FT계정 등 개방 시범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양국간 양방

향 자본거래 활성화 필요

— 산동성을 對한국 QDII2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노력을 할 필요

- 산동성 지역의 기업과 국민들의 풍부한 글로벌 자산관리 수요를 한국 금융시장을 활용하여 실현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

□ **(위안화 금융 인프라 구축 확대 필요)** 위안화 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 측면에서의 큰 부분의 합의는 완료되었으나 위안화 외환 시장 구축을 위한 외환거래법 개정 등의 차후 세부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양국 자본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외환시장 협력 확대가 필요함

— 역외 위안화시장 개설을 위해서 필요한 위안화 역외외환시장(CNH) 설치, 중국 당국과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인프라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는 시진핑주석(2014년) 및 리커창총리 방문(2015년) 시 완료되었음

— RQFII 청산결제시스템, 후강통 투자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들의 위안화 금융상품 관련 인프라는 2015년에 개발 완료되어 서비스 제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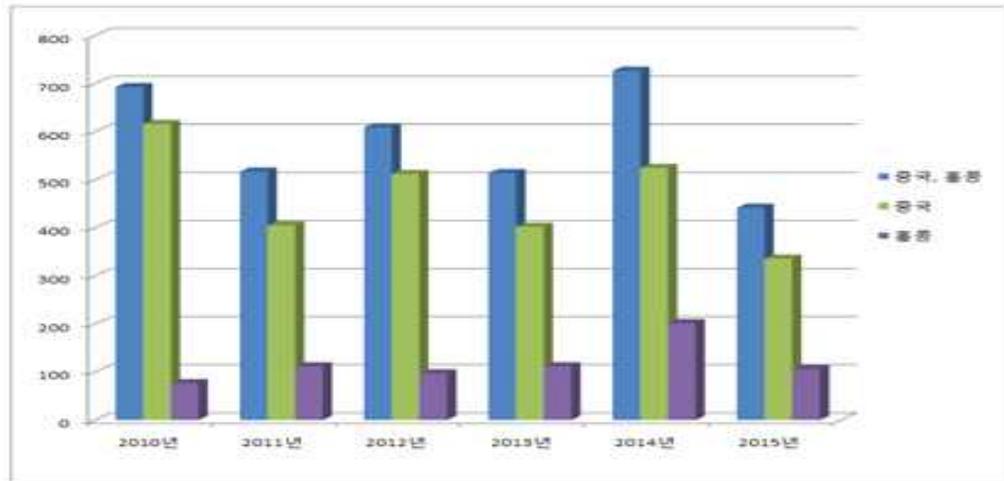
□ **(위안화 FinTech + 전략)** 중국 내 지방정부 및 유명 기업(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중국기술거래소 등)과 연계하여 실물경제 수요에 기반을 둔 FinTech 관련 연계사업 추진

— 위안화 모바일 결제 등은 현재 가능하므로 우선 양국에서의 위안화와 원화의 원활한 상호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할 필요

□ **(실물거래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환율 및 국가부채 관리 등을 고려하여, 먼저 경상거래 중심의 위안화 시장을 육성하고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등 자본시장 활성화 추진이 필요

— 특히 중국기업들의 한국 내 투자 및 인수합병이 활성화 되면서 이와 관련한 자금조달 지원이 시급한 상황([그림 6] 참조)

[그림 6] 중국자본의 한국투자 꾸준히 증가(2010-2015.06)



자료: 중국 통계국

□ 또한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된 자금조달을 한·중 금융기관들간 co-project financing(신디케이트론) 등의 협력을 통해 제공하여 양국 금융산업의 밀착도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실물경제를 지원

— 일대일로 추진으로 AIIB 가입국들의 위안화자산 투자와 관리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위안화 채권발행이 증가될 것임

- 금융방식에 있어 대부분 국제기구가 달러본위의 금융, 대출과 보증위주의 금융방식을 활용
- 중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역외 위안화 허브가 되고자 하는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들의 협력이 있으면 위안화본위 금융이 대세가 될 가능성 있음
- 특히 PPP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지방정부 채권 발행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

— 부산소재 금융공사 및 국책 금융기관의 창조적 대응이 필요하며, 선도적으로 일대일로 한국센터 설립 제안 및 부산에 일대일로 관련 기관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해외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일대일로 선상의 제3국 동반진출 확대

-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의 전후방산업 진출모색

- (AIIB사업 참여확대를 통한 위안화 금융허브 환경 마련) AIIB 초기 인프라 사업의 위안화 협조용자에 적극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사업실적(track record)을 쌓아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 및 발굴할 필요
  - AIIB 초기 위안화 발행채권 인수에 적극 참여
  -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에 전략적인 해외지점 확충 및 PF업무 강화
  - 일대일로 사업에 경험을 보유한 중국기업과의 협업 강화<sup>64)</sup>
  - 중국 금융 비즈니스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중국 일대일로 관련 지방정부와 인력 상호파견을 통한 현지정보 수집능력 제고가 필요함

### 3. 결론 - 한·중 크라우드펀딩 연계부터 시작

#### 1) 중소기업을 위한 벤처자본의 필요성 대두

- 현재 부산과 경남 일대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여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가장 많음([표 9] 참조)
  - 그러나 부산과 경남 일대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위한 벤처자본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

[표 9] 시군구별·산업별 사업체수 현황(2014년 기준)<sup>65)</sup>

부산	경남	서울	경기	광주	대구	인천
261,617	239,066	768,725	761,718	102,938	188,483	172,13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서울에는 팁스(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sup>66)</sup> 등과 같은 정책지원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소재의 벤처기업들은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지만 부산 일대에는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정부차원의 벤처금융 생태계 확충이 필요함

- 최근 TIPS는 지식창업사업과 관련하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건설하였으며, 이를 국제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함
- 부산은 현재 한국의 제2위 도시이며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혁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부산에는 TIPS프로그램과 같은 센탐(CENTAP) 지자체TIPS 프로그램이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창업 활성화 지원제도가 필요함

□ 최근 부산은 제조업 중심 수출 구조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제4차 산업 중심의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여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창업 5년 미만 기업(개인, 법인)의 종사자 수는 427,903명임 (부산시 사업체조사, 2015년 기준)<sup>67)</sup>
  - 이들 기업에 대한 벤처금융의 공급이 절실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의 수요가 큰 지역임을 의미함
-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는 총 82건이며 금액은 327,316천 달러임 (KOSIS, 2015년 기준)
  - 이 중, 아주(亞洲)지역 투자 건수는 총 43건, 투자 금액은 161,404천 달러임(KOSIS, 2015년 기준)<sup>68)</sup>
  - 이는 향후 크라우드펀딩 연계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참여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2) 부산은 영역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성화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임

□ **(중국과의 무역 + 클라우드펀딩)** 부산의 국가별 수입액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비중 52%, 2014년 기준)

— 부산의 중국 투자 비율 중 산둥성(山東省)과 료녕성(遼寧省)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음

- 그 중 산둥성은 한국과 지리적 근접성이 높고, 물류시스템이 잘 연결되어 있음

□ **(문화 콘텐츠 + 클라우드펀딩)** 부산의 최근 주요 국제회의 실적을 미루어 보아, 공연, 게임, 국제세미나, 부산 국제영화제 등과 같은 **문화관련 콘텐츠는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더욱 쉽게 대중화시킬 수 있음**

— 대형 문화 콘텐츠(공연, 세미나, 축제, 게임, 영화 및 영화제 등)산업의 경우 클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했을 때, 투자와 시장이 동시 해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부산은 국제행사를 포함한 대규모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인프라가 잘 구축된 **관광 MICE 특화 도시이기**<sup>69)</sup> 풍부한 국제 교류와 경험을 앞세워 향후 문화 콘텐츠와 금융제도를 연계하여 클라우드펀딩을 개시함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갖춤

- 부산은 컨벤션도시 아시아 5위, 세계 10위에 랭크(2015년 기준)<sup>70)</sup> 되었으며, 세계에서 수도권이 아닌 도시로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도시는 부산이 유일함
- 부산에서 개최된 UIA 기준 총 회의 수는 2015년 기준 173회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시아올림픽평의회(DCA) 주관 부산 아시안게임대회(The 14th Asian Games Busan 2002)가 개최되었으며, 총 43개국에서 18,0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대회이었음<sup>71)</sup>
- 가장 최근에는 제11차 세계약물연구학회(ISSX)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등 각종 대규모 회의와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개최 중(아래 [표

10] 참조)

**[표 10] 최근 주요 국제회의 실적**

2011	- 제27차 국제항만협회 총회 (3,500명) -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 (3,500명) - 제4차 세계개발 원조 총회 (2,500명)
2012	- 제95차 국제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 (55,000명) - 제19회 국제자성학회 학술대회 (2,000명) - 제27차 아시아태평양 안과학회 학술대회 (4,000명) - 2012 IWA 세계 물 회의 및 전시회 (4,000명)
2013	- 제10차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7,000명) - 제27회 IUSSP 세계인구총회 (3,000명)
2014	- 제9차 국제에어로졸 학술대회 (1,500명) - 2014 ITU 전권회의 (2,500명) - 2014 아시아태평양 전력산업 컨퍼런스 (3,000명) -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3,500명)
2015	- 2015 제20회 ISU 국제입체영상연맹 세계총회 (1,000명) - 2015 환태평양 레이저 및 전자광학 학술대회 (1,000명) - 2015 IDB-IIC 연차총회 (3,000명)
2016	- 제20차 국제진공학회 및 세계진공과학기술 전시회 (2,500명) - 제7차 세계 수산회의 (2,000명) - 제11차 세계약물연구학회(ISSX) 국제 학술대회 (3,000명)

출처: 부산광역시, 2017, 국제커피기구(ICO) 부산 유치 제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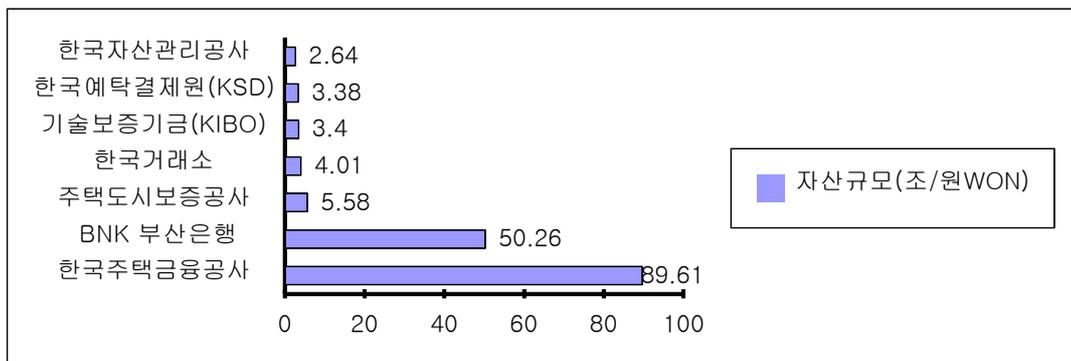
— 게임은 국내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유망 서비스업인 만큼 부산은 게임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알려짐<sup>72)</sup>

- 향후 VR로 주력분야 변동이 가능한 잠재력이 풍부한 게임분야에 대한 투자를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중국 일반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부산의 수출 품목 다변화 및 4차산업 육성 가능
- 한국 게임의 그래픽 기술, 특수 효과 처리 능력 등의 경쟁력은 중국 개발사들 또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임<sup>73)</sup>
- 또한, 중국 온라인 게임 기업의 빠른 성장(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5월 매출 기준 세계 10대 모바일 게임 상당수가 중국 자체 개발 게임<sup>74)</sup>)으로 관심 있는 한국 일반투자자들의 중국 게임산업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3) 부산은 클라우드펀딩 시장 관련 인프라 이미 확보

- 클라우드펀딩 시장과 관련된 인프라(KSD 중심의 공적클라우드펀딩 플랫폼)가 이미 존재하며, 외국투자자의 한국 클라우드펀딩 투자 및 한국 투자자의 외국 클라우드펀딩 투자가 제도적으로 가능함
-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한 각 금융 인프라 기관의 자산규모는 [그림 7]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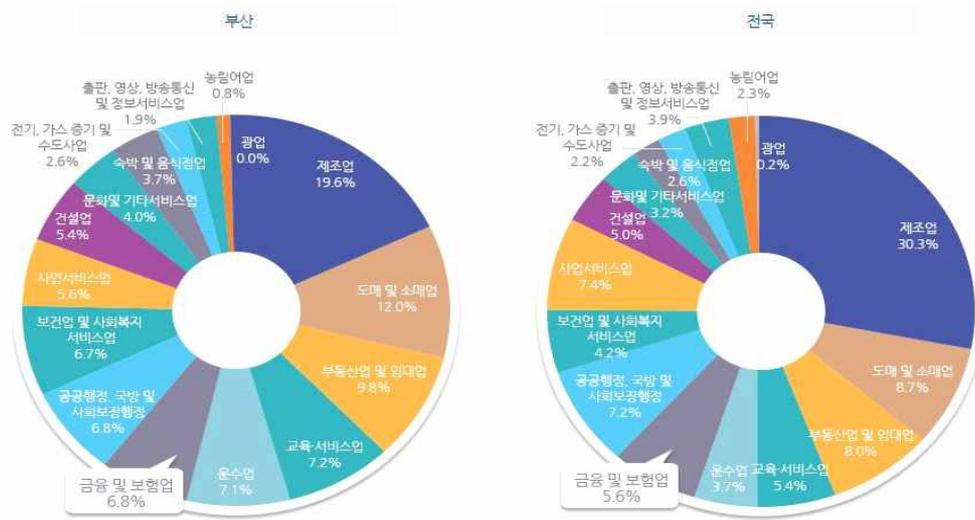
[그림 7]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 현황



출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홍보책자, p.22 참조

-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업 비율이 높음
  - 아래 [그림 8]에서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은 전국 평균 비중(5.6%)에 비해 부산의 금융 및 보험업 산업 비중이 더 높음(6.8%)

[그림 8] 전국 대비 부산의 금융 및 보험업 비중(2014년 기준)



출처: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홈페이지75)

## IV. 한·중 양국 클라우드펀딩 연계방안

### [요약]

#### □ 한국의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필요성

- 한국형 클라우드펀딩은 공모형으로 발행회사의 펀딩 용이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적 지향
- 이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회사만을 통한 클라우드펀딩 청약 및
- 발행회사의 연간 발행규모나 투자자의 연간 투자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음
- 한국 클라우드펀딩시장은 작은 시장규모, 발행회사들의 소규모 펀딩 등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로가 필요한 상황

#### □ 중국의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필요성

- 중국형 클라우드펀딩은 사모형으로 투자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점 노출
- 중국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제가 많은 사모형 클라우드펀딩플랫폼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 공모형 클라우드펀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시범운영을 고려하고 있음
- 중국 클라우드펀딩시장은 시장 규모가 큰 반면, 공모형 도입을 통한 규범화 및 이의 시행을 위한 경험 등이 필요

#### □ 부산과 중국 시범도시간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구축방향

- 먼저 중국이 시범도시를 정하여 공모형(한국형) 클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 동시에 한·중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클라우드펀딩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방 프로그램 마련
- 한국과 중국의 클라우드펀딩 시장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은 양국 클라우드펀딩 시장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살려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

□ 부산과 중국 시범도시(대련시, 청도시)간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구축 시 고려 사항

- 한·중 클라우드펀딩 플랫폼간 연계 방법 검토
- 중앙기록관리 담당기관간 연계방법 검토
- 클라우드펀딩通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검토
  - 클라우드펀딩 관련 외국인 투자등록 면제 등
  - 복수통화 청약 가능 여부
  - 클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 및 투자 교육
  - 클라우드펀딩 투자자 소유권, 권리행사 등과 관련한 검토 등이 필요

## 1. 한·중 양국 클라우드펀딩 기본제도

### 1.1 한·중 양국 클라우드펀딩 정의

#### 1) 한국 클라우드펀딩 정의

□ 클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클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 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함

-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보유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모집과 중개업자가 온라인 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sup>76)</sup>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의 연간 자금모집 규모와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

— 한마디로 “온라인·집단지성·소규모” 등에 부합해야 함

## 2) 중국 클라우드펀딩 정의

□ 중국에서 ‘클라우드펀딩’에 대한 개념은 중국인민은행의 「중국금융안정보고(中國金融穩定報告, 2014)」에서 처음 등장

— 클라우드펀딩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모집인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창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소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정의

□ CSRC는 2015년 8월 10일 「인터넷을 통하여 지분투자활동을 전개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 감독 관리에 관한 통지(關於對通過互聯網開展股權融資活動的機構進行專項檢查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하여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을 창업자 혹은 중소형 혁신기업이 중개기관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지분투자자를 모집하는 소액투자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공개·소액·대중성·온라인·신속·투명”의 특징에 부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지분형 클라우드펀딩(股權衆籌)에 대한 법률상의 개념은, 2015년 7월 PBOC, CBRC, CSRC 등 10개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關於促進互聯網金融健康發展的指導意見)」(이하 「지도의견」)에서 처음으로 명시적 규정을 내림

• 「지도의견」은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이라는 표현과 함께,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지분발행을 통한 소액의 자금모집 활동이라 규정

— 「지도의견」 발표되기 이전 2014년 12월 18일, 중국증권업협회는 「사모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관리방법 시행(의견수렴안)(私募股權衆籌融資管理辦法試行(徵求意見稿))」(이하 「관리방법

(의견수렴안)」을 발표하여 당시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의 성격을 비공개발행(즉 사모발행)으로 규정함

- 이는 뒤이어 제정된 「지도의견」과 「통지」의 규정에는 위배되는 것이지만, 당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던 사모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하여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음

— CSRC는 「통지」 및 「지도의견」을 근거로 그동안 클라우드펀딩,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사모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회사법」과 「증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증권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CSRC의 기준을 받지 않은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통지」는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을 주식의 '공모발행'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어온 사모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활동은 「지도의견」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

- 중국 「증권법」 제10조에서 "증권을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부문의 기준을 얻어야 하며,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기준을 얻지 않은 경우 증권을 공개적으로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권법」상의 공개발행이란 불특정 대상에게 증권을 발행한 경우 혹은 200인 이상의 특정 대상에게 증권을 발행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이에 따라 CSRC가 「증권법」 개정으로 곧 시행할 중국의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은 공모발행에 해당하며, 「증권법」의 규제대상임

- 「통지」에서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의 성격을 공모형으로 확정 한 이유는 2015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입법기구) 상무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과한 「증권법(수정안)」에서 클라우드펀딩의 공모발행을 허가하고 주식발행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 하였기 때문임

— 「통지」를 통해 CSRC는 기존에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모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은 공모형이 아니며, '인터

넷비공개지분융자(互聯網非公開股權融資)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요구함

- 이에 따라 JD클라우드펀딩(京東衆籌), 평안클라우드펀딩(平安衆籌) 등 주요 플랫폼은 사모형으로 진행되는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이란 이름으로 게시한 모집광고 등의 호칭을 변경하기도 하였음<sup>78)</sup>

□ 결론적으로 중국 CSRC는 클라우드펀딩 공모개념을 '소액·공개·대중·온라인·신속·투명' 조건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정의하였으며, 현재 시범 실행을 준비 중임

— 올해 10월 19대 당대회 이후 CSRC에서 시범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sup>79)</sup>

- 이는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신시대 출연에 맞추어 다층적 자본시장 개혁심화와 중소형 혁신기업 및 농업·농민·농촌과 빈곤지역의 '보혜금융' 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엔젤투자·벤처투자 시장을 적극 발전시키고, 관련 법규를 완비하여 공모형 클라우드펀딩 시범실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함

— 현재 공모형으로 진행된 클라우드펀딩 사례는 없음

— CSRC의 정책은 신삼판(新三板)<sup>80)</sup>과 지방의 주식거래소(일명 '신사판(新四板)')로 구성되는 장외시장 중심의 다층적 자본시장시스템의 균형 잡힌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1.2 한·중 클라우드펀딩 제도 비교

### 1) 한국 클라우드펀딩 제도와 운영구조

□ 한국 클라우드펀딩 주요 참여자는 발행인(기업)과 투자자 및 온

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구성됨([그림 9] 참조)

- KSD는 중앙기록 관리와 투자자명부 관리 및 예탁기관의 역할을 담당함

[그림 9] 한국 크라우드펀딩 주요 시장 참여자



출처 : KSD 크라우드넷 (2017.06.30.)

□ **발행인의 범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의 5항(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범위)과 위임행정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에 의하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함

- 다만 정부로부터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sup>81)</sup> 및 메인비즈기업<sup>82)</sup>은 업력이 7년을 초과하여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이 가능
- 신생·창업기업 지원의 취지를 감안하여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

도장, 갱블링·베팅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발행인의 공시부담 완화

- 일반적인 증권업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리되어야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적용받지 아니하며, 공시의무 및 재무제표 검증 규정이 없음 ([표 11] 참조)

[표 11]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일반공모 및 소액공모 제도 비교

일반공모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증권신고서(약 27종)	소액공모 공시서류(약 17종)	증권발행조건, 재무상황, 사업계획서 등
금융위원회 수리	금융위원회 제출	중개업자 홈페이지 게재

출처: KSD 내부자료

□ 발행한도 설정 및 투자자 보호 규제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제10항과 제12항

- 발행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억원으로 제한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액과 과거 1년간 발행금액(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한 금액+소액공모 금액+크라우드펀딩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발행한도 7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투자자 보호 규제 마련
  - 증권발행 취소: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을 이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청약금액 모집예정 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전체를 취소하고, 투자자에게 청약 증거금을 반환함
  - 정보 게재 관련 의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증권 발행조건,

재무 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발행인은 온라인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가 항상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행인 및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도제한:** 사업계획의 이행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인 및 그 대주주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 후 1년간 기존 보유지분을 매도할 수 없음
-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 책임<sup>83)</sup>:** 발행인이 온라인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의 허위·누락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손해 발생 시 발행인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정의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자로 고객자산을 직접 수탁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의 모집 등에 관해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은 발행인이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한 투자정보를 게재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와 발행인간, 투자자 상호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중개업자는** 자본금,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등록제를 시행하고, **형식요건 충족** 시 2개월 내로 심사가 이루어짐
  - 자본금 5억원 요구

□ 현재 한국 국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업체는 14개 회사임 ([표 12] 참조)

- 전업사: 와디즈, 오픈트레이드주식회사, 유캔스타트, 인크, 오마이컴퍼니
- 겸업사: 이안투자, 우리종합금융,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IBK투자

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펀딩포유, Y클라우드펀딩

[표 12] 클라우드펀딩 중개업체 현황

전업 중개업자				겸업 중개업자(증권사 등)			
등록일	업체명	추진	성공	등록일	업체명	추진	성공
2016-01-25	와디즈	116	62	2016-03-17	IBK	27	12
2016-01-25	오픈트레이드	59	25	2016-03-17	코리아에셋	31	14
2016-01-25	유캔스타트	9	2	2016-06-15	유진	7	5
2016-01-25	인크	17	8	2016-06-15	키움	5	2
2016-03-17	오마이컴퍼니	27	13	2016-07-07	KTB	4	3
2016-06-15	Y클라우드펀딩	7	3	2016-09-29	우리종금	2	1
2016-07-28	펀딩포유	9	8				
2016-12-20	이안투자	1	0				
		249	123			76	36

자료: 금융위원회(2016.01.25 - 2017.03.31 기준)

- 이들 회사들은 클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
  - 500만원 초과 시: 0.1%
  - 500만원 이하: 0.1% + 500원
  - 매도 시 거래세: 0.5%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7항
  - 중개증권 취득 등 금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중개하는 클라우드펀딩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투자자와 발행인에 대한 자문금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발행

인의 신용 또는 투자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없음

- **청약 전 투자내용·위험 주지 및 확인 의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이 매도제한, 증권이 발행조건과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됨
- **투자자·발행인간 부당 차별 금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청약결과 투자자 통지 의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이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증권이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 한도관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이 발행한도와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에 한도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광고제한:** 투자를 받는 기업에 대한 광고는 엄격하게 금지하며, 중개업체와 발행기업만 광고할 수 있는데 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함
  - 예외적으로 이러한 홈페이지를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장치만이 허용
  - 일반인은 SNS나 블로그에 크라우드펀딩을 발행하는 기업을 알리는 행위조차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 9항(투자광고의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투자자:** 창의적 아이디어 및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신생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 누구나 가능

— **투자한도 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10항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인별·연간 투자한도를 정함<sup>84)</sup>
-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 감수능력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표 13] 참조)

**[표 13] 투자자별 투자한도 비교**

투자자 구분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500만원	1,000만원
소득요건 구비투자자 <sup>85)</sup>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sup>86)</sup>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투자방법: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절차**

- 모집(청약) 개시
- 청약 - 선착순, 2~3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청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청약금액이 모집 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면 모집 실패로 증권발행이 취소됨
- 모집 성공 : 모집 예정금액 80% 이상 달성
- 청약기간 종료
- 발행금액 확정
- 증권발행

— **발행증권 예탁 및 1년간 유통제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

권은 의무적으로 KSD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해야 하고, 1년간 매도나 양도가 제한 됨

- 다만, 전문성을 갖추고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는 허용

— **청약의사 철회:** 투자자는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청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 이 경우 온라인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 **소득공제 혜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sup>87)</sup>

□ **기타 금융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 13~15항

— **중앙기록관리기관:**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증권의 발행한도, 투자자의 투자한도 및 그 밖의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정보 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시장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통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금전을 예탁 받거나 투자자 소유의 증권을 보관하는데 반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재산의 예탁·보관 자체가 금지

— **투자자 명부관리기관:** 크라우드펀딩 증권발행인은 투자자명부(주주명부 등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관리하는 명부)의 관리를 KSD에 위탁하여야 함

- KSD는 투자자의 주소 및 성명, 소유하는 증권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투자자 명부를 작성·비치함

-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업자: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함
  -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투자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2) 중국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운영구조

- 공모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정의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지도의견」 및 「통지」에 의해 기본적 개념은 제시되었으나 「증권법」 개정안이 제정되지 않아 현재 중국에서 이용되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은 사모형임
  - 이하의 내용은 2014년 12월 18일 중국증권업협회가 발표한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의 주요내용을 요약 기술한 것으로 중국의 사모형 크라우드펀딩제도 현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함
- 발행인: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자금 수요자인 발행인의 자격요건으로 「지도의견」은 전통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스타트업 기업이나 개인 창업자, 소규모 기업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경영관리, 재무, 자금사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중국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의 범위: 사모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용자 관리방법(私募股權衆籌融資管理辦法, 이하 「용자관리방법」)<sup>88)</sup>에 의하여 발행인은 중소기업 혹은 기타 발행인

- 발행인은 공개모집 혹은 공개와 유사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음
- 불특정 대상에게 증권 발행 금지
- 자금모집 성공 후, 발행인 혹은 발행인이 설립한 기업의 주주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프로젝트 발행인(제3장 제12항, 제13항):** 발행인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진실 되고, 정확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진실성, 합법성을 보장해야 함

-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투자자 권익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함

— 발행인은 사기발행, 투자자에게 원금보장 및 최소 수익에 대한 언급, 동일 프로젝트 중복 발행, 플랫폼 외 공개 장소에서 발행정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됨

□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유자관리방법」 제2장 제5조):**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인터넷 플랫폼(혹은 비슷한 종류의 전자매체)을 통해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용자에 투자한 쌍방을 위하여 정보 발표, 수요연결, 자금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구

— **등록요건(제2장 제7조):**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응당 자율감독기관인 증권업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증권업협회회원으로 신청해야 함

- 현행 중국의 「회사법」 과 「증권법」 은 모두 증권의 공개 발행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증권을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CSRC의 기준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sup>89)</sup>
- 하지만 공모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구체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중국 내 대다수의 플랫폼은 중국증권업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사모형으로 자금모집을 진행하고 있음(등록된 대표업체는 [표 14] 참조)<sup>90)</sup>

[표 14] 중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 주요업체

번호	플랫폼	업종	설립 년도	주소
1	興匯利	기업연계 플랫폼	2014년 5월	<a href="http://www.xinghuili.cn/">http://www.xinghuili.cn/</a>
2	人人投	장소플랫폼	2014년 2월	<a href="http://www.renrentou.com">http://www.renrentou.com</a>
3	淘宝衆籌	종합플랫폼	2013년 12월	<a href="https://izhongchou.taobao.com/index.htm">https://izhongchou.taobao.com/index.htm</a>
4	京東衆籌	종합플랫폼	2014년 7월	<a href="http://jr.jd.com/">http://jr.jd.com/</a>
5	蘇宁衆籌	종합플랫폼	2015년 4월	<a href="http://www.suning.com/">http://www.suning.com/</a>
6	天使匯	스타트업 플랫폼	2011년 11월	<a href="http://angelcrunch.com/">http://angelcrunch.com/</a>
7	点名時間	종합플랫폼	2011년 7월	<a href="http://www.demohour.com/">http://www.demohour.com/</a>
8	螞蟻達客	종합플랫폼	2015년 11월	<a href="https://www.antsdaq.com/">https://www.antsdaq.com/</a>
9	米籌金服	종합플랫폼	2016년 3월	<a href="https://www.micfinance.com/">https://www.micfinance.com/</a>
10	海創匯	창업관련 플랫폼	2013년 12월	<a href="http://www.ihaiier.com/">http://www.ihaiier.com/</a>

- 중국증권업협회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등록을 처리하나, 관리측면에서 내부단속 수준에 그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고객 자금보호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아니함

— 「**융자관리방법**」 제2장 제7조에 의거하면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회사 혹은 합자회사
- 순자산 500만 위안 이상
- 사모형 크라우드펀딩 융자(자금모집)를 수행 또는 이에 준하는 능력의 전문인력을 고용하여야 함. 즉 2년 이상의 금융 혹은 정보기술산업에

중대한 경력이 있는 고급 관리인력 등이 적어도 2명 이상 있어야 함

- 합법적인 인터넷 플랫폼과 기타 기술시설이 있어야 함
- 완벽한 업무 관리제도가 있어야 함
- 기타 증권업협회규정의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함

#### — 주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별 수입원

##### (1) 자문비

- 기준: 용자성공 시 발행인에게 약 5%의 수수료를 취함
- 대표기업: **중투천지(衆投天地)**, 용자금액의 5%를 수수료로 취함

##### (2) 리딩투자 비용

- 기준: 일부 플랫폼은 전문투자기관의 리딩투자를 위해 존재함.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일부 투자관리비를 취함
- 대표기업: **북경크라우드펀딩(北京衆籌)**, 리딩투자자 투자금액의 3%를 취함

##### (3) 주식

- 기준: 용자성공 후 프로젝트의 일부 비율의 주식을 획득함
- 대표기업: **경비크라우드펀딩(警備衆籌)**, 성공프로젝트의 1%의 주식 획득

##### (4) 수익

- 기준: 플랫폼이 리딩투자자 최종 수익의 10%-20%를 취함
- 대표기업: **올챙이크라우드펀딩(蝌蚪衆籌)**, 리딩투자자 최종 수익의 15%를 취함

##### (5) 서비스

- 기준: 제조업 창업자들을 위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함
- 대표기업: **JD동가(京東東家)**, 크라우드펀딩 창업 교육 제공

#### — 온라인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용자관리방법」 제2장 제9조)

- 본 플랫폼을 통해 본인 혹은 관련자의 용자발행을 진행할 수 없음
-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대외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분을 대신 보유할 수 없음
- 지분 혹은 기타 형식의 유가증권의 양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플랫폼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투자기회를 획득하거나 투자자를 혼동하게 할 수 없음
- 비실명가입 회원에게 광고 혹은 용자항목을 소개할 수 없음
- 증권인수, 투자고문, 자산관리 등 증권경영기관업무에 종사할 경우, 관련업무 자격을 가진 증권경영기관은 제외함
- 개인 사업자간의 대출(P2P) 혹은 인터넷 소액대출업무를 겸업할 수 없음
- 악의적 모독, 동종업계 폄하 등 정당하지 않은 경쟁수단의 사용 불가
- 관련 법률 및 증권업협회 규정 상 금지된 기타 행위

□ **투자자:** 「지도의견」에서는 "투자자는 반드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리스크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상응하는 리스크 수용 능력을 바탕으로 소액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 「**용자관리방법**」에서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 규제에 있어 '**적격투자자(合格投資者)**'요건을 두어 투자한도 제한, 투자자 교육 등의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자금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내에서 반드시 실명인증을 완료한 자로 제한하고
- 적격투자자 요건으로 '**리스크 인지**'와 '**리스크 수용**'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sup>91)</sup>
- 사모형 크라우드펀딩 투자는 사모펀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모투자기금 감독관리 집행방법**」 규정 제3장 14항, 15항에 의한 적격투자자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투자기관 혹은 개인이어야 함: (1)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이 100만 위안인 기관 혹은 개인; (2) 사회보장기금, 기업연금 등의 양로기금, 자선기금 등의 사회 공익기금 및 법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중국증권투자기금협회에 투자계획을 등록한 자; (3) 순자산이 최소 1,000만 위안 이상인 기관; (4) 금융자산이 300만 위안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수입이 50만 위안 이상인 개인 - 상술한 개인은 관련된 재산<sup>92)</sup>과 수입증명 외, 투자위험에 대한 식별능력을 갖추고, 위험

부담이 가능해야 함; (5) 증권업협회에서 규정한 기타 투자자

-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가장 최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투자자금의 출처가 합법임을 보장
  - 투자자는 주도적으로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위험부담 역량을 파악해야 함
  -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체부담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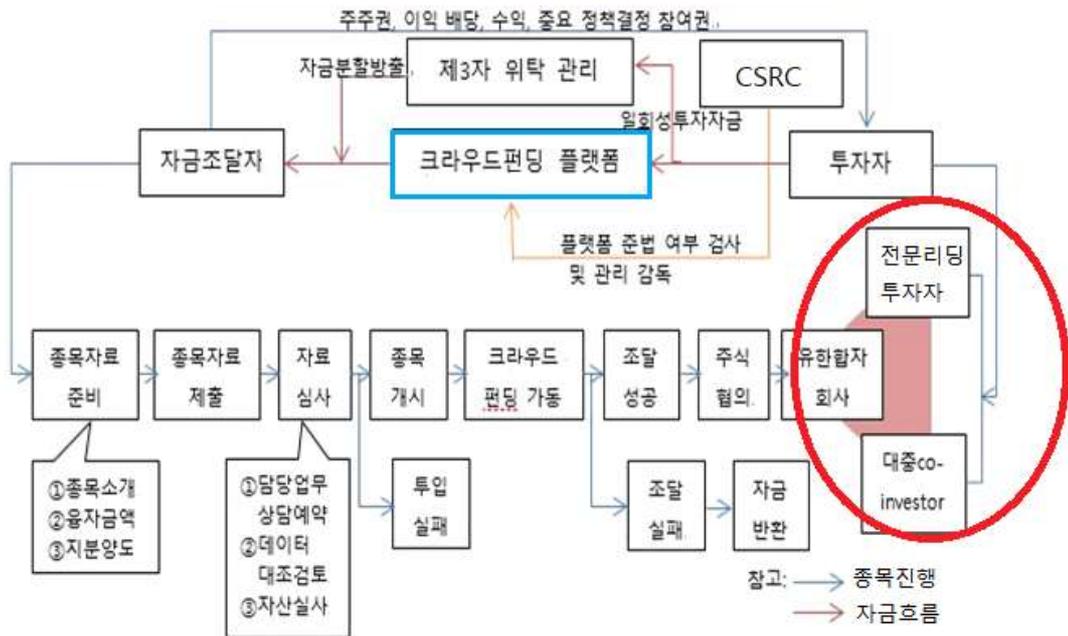
#### □ 주요 투자자 구분

- **리딩투자자:** 엔젤투자자 혹은 벤처캐피탈 등이며, 리딩투자자의 자금은 일반투자자로 구성된 주식보유 플랫폼에 포함시킬 수 없음
  - **역할:** 1)종목분석, 자산실사, 종목 가격협상 및 평가, 투자 후 관리를 실행하고, 2)종목투자자에게 종목분석과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창업자를 도와 빠르게 해당 종목 용자가 성공하도록 함; 3)창업자를 도와 용자 성공 후에 투자자와의 관계가 잘 조율되도록 유지함
- **일반투자자:** 일반투자자는 리딩투자자가 선도적으로 투자한 종목에 대하여 투자여부를 정할 수 있음
  - 리딩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해당 종목투자에 대한 합리성을 설명해야 하며, 잠재된 이익충돌에 관하여 공시해야 함
  - 그 후에 일반투자자는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함
  - 일반투자자는 자율적으로 리딩투자자와의 연합투자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리딩투자자에 의해 투자연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혹은 공모펀드를 포함하며, 이들도 최근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 함(예: PE 등)

- 중국 회사법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투자자수가 2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기에 인터넷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유한회사(有限企業)나 합자회사(合夥企業)를 설립하여 투자를 진행하고, 명의를 투자자 개인의 명의로 아닌 해당 유한회사나 합자회사의 명의로 함

-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투자형태는 [그림 10]과 같이 전문투자자의 주도하에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전개되고 있음
  - 전문투자자는 리딩투자자가 되어 조사, 가치평가 및 판단, 투자 후 관리, 혹은 이사회 참여 및 중요 정책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 동시에 일반투자자들의 수익 할당 및 지분 분할을 담당함
  - 본 모델은 사모형이며, 한중 크라우드펀딩通 모델을 구축 시 공모형 출시가 아직 미정인 중국의 현실상황을 감안하여 사모형 모델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그림 10] 인터넷 비공개 지분형 융자(互聯網非公開股權融資) 메커니즘



출처: 互聯網眾籌市場專題研究報告2016(2016.08.24)

- **청약 증거금 관리기관:** 공모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방향인 「통지」에서는 사모형과는 달리 CSRC를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감독기관으로 확정하고, 청약 증거금 관리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함
  - 여기서 증거금 관리기관은 반드시 은행이 되어야 함

— 증권회사는 증거금 관리기관이 될 수 없음<sup>93)</sup>

### 3) 韓中 클라우드펀딩 제도 비교

#### □ 투자자 자격

- 한국: 일반투자자(1,000만원)와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2,000만원), 적격투자자(제한 없음) 등의 요건 존재
- 중국: 사모 비공개 지분형 클라우드펀딩(私募非公開發行方式股權衆籌)의 경우 적격투자자(合格投資者)에 한해서만 투자 가능
  - 사모클라우드펀딩의 적격투자자는 연수입이 RMB30만원(한화 약 5천만원) 혹은 자산규모 RMB100만원(한화 1억 6천만원) 이상 등의 규정이 있음. 단, 일반적인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투자자를 따로 걸러내지 않음

#### □ 중개업자 역할

- 한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수익창출 역할제한, 정보제공 외의 행위는 제한되어 있음
- 중국: 현재 사모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은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적용하기에 규제가 관대함
  - 중국의 인터넷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중개업자는 정보제공 및 발행 프로젝트 평가, 자문, 투자, 기타 부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함(예: JD의 창업아카데미)

#### □ 투자금 회수

- 한국: KSM유통시장이나 OTCBB 등과 같은 시장을 활용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중국: 사모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에 한하여, 기관간 시장(機構間市場)<sup>94)</sup>을 통하여 지분양도 가능함

## 2. 한·중 양국 클라우드펀딩 시장 현황과 문제점

### 2.1 한·중 양국 클라우드펀딩 발행시장 비교

#### 1) 한국 클라우드펀딩 시장 운영 현황

##### □ 한국 클라우드펀딩 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시장 규모가 작음

— 2017년 6월말 기준 클라우드펀딩 누적 발행금액은 283억원을 넘었으며, 전년 대비 65.5% 증가함

- 모집금액(2017년 상반기 실적) : 211억원
- 발행금액(2017년 상반기 실적) : 109억원

— 대부분 2억원 이내 소규모 펀딩에 평균 1.5억원 규모 투자가 이루어짐

- 2억원 이내의 소규모 펀딩사례가 165건이며, 성공율은 79.7%임
- 기업별 평균 조달금액은 1.5억원 규모임

##### □ 성공기업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14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펀딩 성공율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누적펀딩 성공률이 52%에 달함([그림 11] 참조)

— 펀딩 규모: 총 397건 시도하였지만, 이중 197사가 성공하여 294억 조달(총 207건)함

— 2017년 상반기 펀딩 총 성공건수는 92건, 성공률은 64.3% 수준임

- 2016년 성공률 45.1% 대비 19.2% 증가
- 올해 6월 최초로 월 20건 상회하고, 상반기 월평균 15.3건 성공 (2016년 월평균 10.5건 기록)

[그림 11] 한국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 및 금액 추이



출처: KSD 크라우드넷 (2017.06.30)

□ [그림 12]에서 보면 크라우드펀딩 기업 평균 업력이 3년 3개월이며, 3년 미만의 초기기업이 59.5%로 109건을 차지하며, 이는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용자수단으로 안착되었음을 말함

— 총 투자인수는 12,388명으로, 이 중 여성비중은 32%임

[그림 12] 한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기업 업력별 분포와 투자자 구성

<업력별 성공현황>



<투자자 현황>

	남성		여성	
	투자자 수	비율	투자자 수	비율
16.上	1,868	77%	565	23%
16.下	2,342	72%	918	28%
17.上	4,251	63%	2,444	37%
총합	8,461	68%	3,927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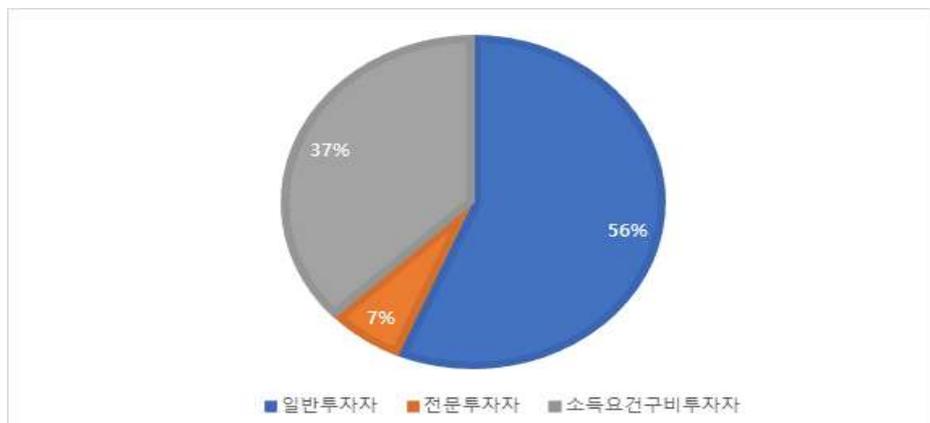
[Source : 크라우드넷 ([www.crowdnet.or.kr](http://www.crowdnet.or.kr))]

기간: 2016.1월 ~ 2017.6월

□ 주요 투자자는 [그림 13]와 같이 일반투자자와 소득요건 구비투자자로 구성됨

- 일반투자자: 6,176,248,095원(56.4%)
-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4,063,524,366원(37.1%)
- 전문투자자: 707,719,547원(6.5%)

[그림 13] 한국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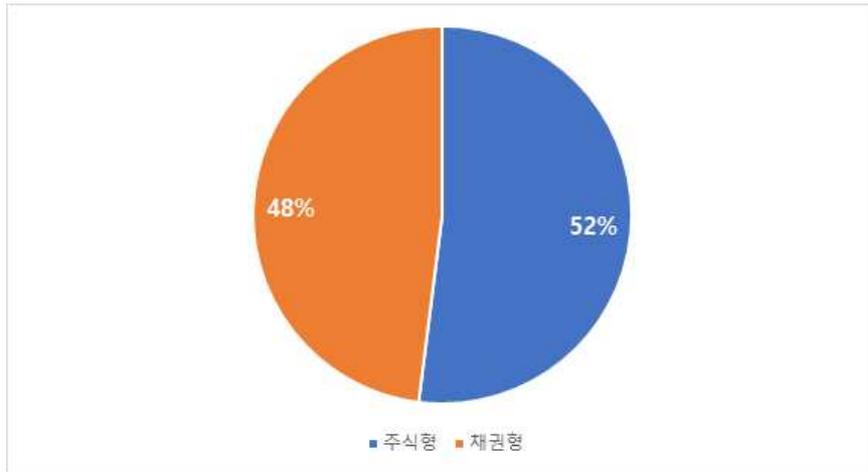


출처: KSD 크라우드넷 (2017.06.30)

□ 2017년 주식형과 채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비중이 비슷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 2017년 상반기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이 56억(52%)이며, 채권형 발행금액은 52억(48%)임([그림 14] 참조)
  - 2016년 주식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79%, 채권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1%이었음

[그림 14] 한국 클라우드펀딩 증권형 비중



출처 : KSD 클라우드넷 (2017.06.30.)

-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그림 15]과 같이 제조업 및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71%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그림 15] 한국 클라우드펀딩 산업별 분포



출처 : KSD 클라우드넷 (2017.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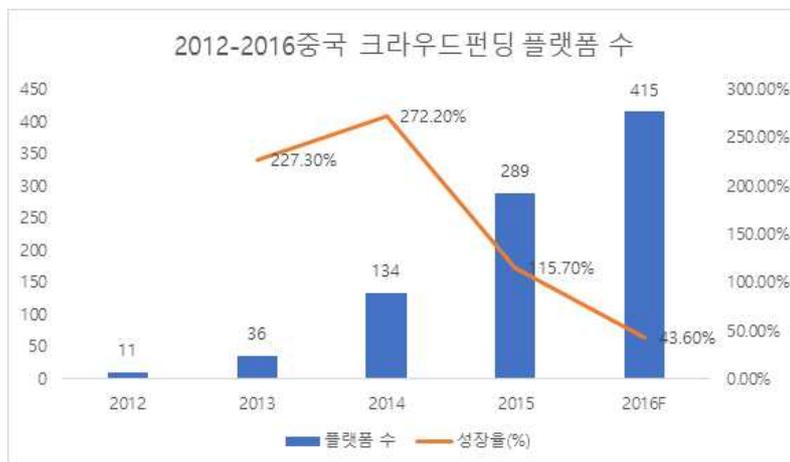
## 2) 중국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

□ 2017년 상반기 중국의 전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수는 808개로 최근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688개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15.5억위안(한화 약 2,600억원)의 자금이 모집 됨<sup>95)</sup>

— 현재까지 정상 운영되고 있는 439개의 플랫폼 중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수는 113개로 약 26%의 비중을 차지함

- 2016년까지 중국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수는 415개이었으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118개로 전체의 28%를 차지([그림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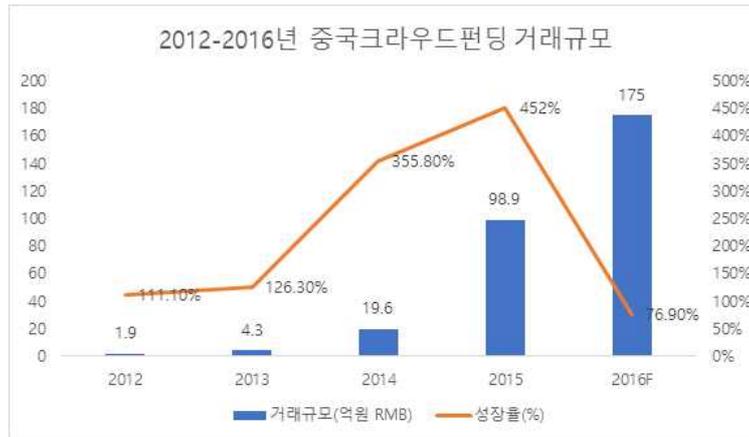
[그림 16] 중국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수량 추이



출처: 2016年互聯網眾籌市場專題研究報告(2016.08.24)

□ 2016년 중국 크라우드펀딩 거래규모는 [그림 1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75억위안(한화 약 2조 9548억원)이며, 전년 대비 76.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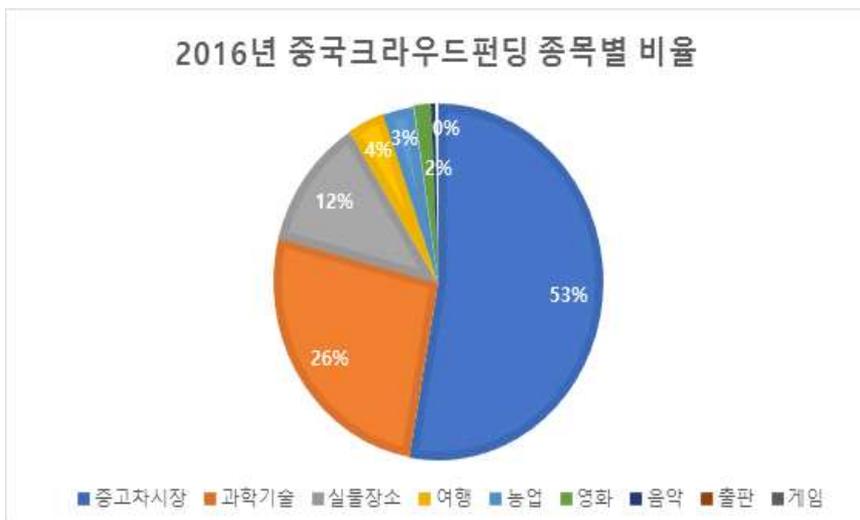
[그림 17] 중국 크라우드펀딩 거래규모 추이



출처: 2016年互聯网眾籌市場專題研究報告(2016.08.24)

- 중국 크라우드펀딩 업종별 분포(발행금액 기준, [그림 18] 참조)  
**현황:**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고차 크라우드펀딩은 상환기간이 짧고, 회전율이 높으며, 중고차라는 물건이 담보로 작용해 거래 건수가 높음

[그림 18] 2016년 중국 크라우드펀딩 종목별 비율



출처: 人創咨詢, 2016年中國眾籌行業發展年報(2017.03.10.)

□ **지역별 투자분포:** 중국은 북경·천진·산둥·상해·절강·광둥 등의 지역에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이 밀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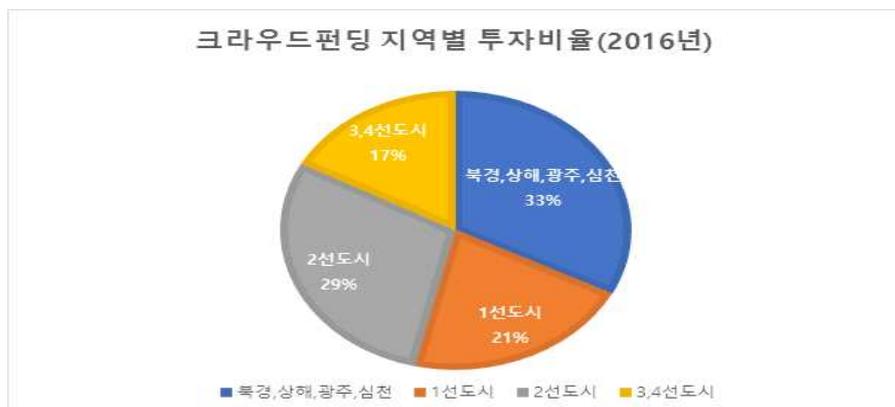
— [그림 19] 및 [그림 20]과 같이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지역발전 차이는 비교적 크며, 이는 각 지역의 경제발전 정도, 인터넷 금융 발전 정도, 인프라 및 창업환경 등의 요소와 큰 연관이 있음

[그림 19] 2016년 중국 클라우드펀딩 지역별 분포



출처: 人創咨詢, 2016年中國眾籌行業發展年報(2017.03.10)

[그림 20] 중국 클라우드펀딩 지역별 투자현황



출처: 興匯利

□ 2016년 중국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최대 용자금액 순위

—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성공종목 중 자금조달 금액이 10위권 안에 드는 종목의 실제 용자금액은 평균 7,000만 위안(한화 약 119억원)을 초과

- 그중 장강클라우드펀딩금융거래소(長衆所)의 “인터넷영화사(互聯電影公司)”는 11,700만 위안을 용자받는데 성공하여 1위를 달성함([표 15] 참조)

[표 15] 2016년 중국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성공종목 상위 10위

발행기업	용자성공금액 (만 RMB)	성공률	투자 인원	중개플랫폼
互聯電影公司(인터넷영화사)	11,700	117%	/	長衆所
精品三號(020)	10,170	92%	2	云投匯
棕櫚 (여행 정보화 서비스 플랫폼)	9,300	100%	/	粵科創投界
豆丁網(문서공유 플랫폼)	9,045	110%	34	共籌
凹凸租車(렌터카)	8,880	355%	62	JD東家
啓賦資本(인터넷+기금)	8,137	107%	20	JD東家
J公司(영화사)	8,000	133%	/	長衆所
奇虎360(컴퓨터 백신)	7,340	146%	20	智金匯
中盛文化(엔터테인먼트)	7,100	101%	15	愛就投
花花草草(농업+스마트기술)	7,000	100%	/	米籌金服

출처: 人創諮詢, 2016年中國衆籌行業發展年報(2017.03.10)

□ 북경(北京), 상해(上海), 광둥(廣東) 등 지방정부들이 연이어 인터넷 클라우드펀딩을 적극 추진할 것에 관한 정책방안을 발표함

— 북경시(北京市): <“인터넷+” 적극 추진에 관한 행동 실시의견(關於積極推進“互聯+”行動的實施意見)> 발표

- 북경시는 2016년 1월에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센터(股權衆籌中心)를 설립함

- 센터는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생태계 구축 역할을 하여, 인터넷금융이 보편화된 금융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상해시(上海市):** <상해시 “인터넷+”행동 실시의견(上海市推進“互聯網+”行動實施意見)> 발표

- **상해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시범시행:** 2016년 4월 12일, 중국 최고 중앙정부 행정기관인 국무원은 <전면적인 혁신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과학기술혁신센터 구축을 가속화 할 것에 관한 상해시 방안(上海系統推進全面創新改革試驗加快建設具有全球影響力的科技創新中心方案)>을 배포
- 방안에서는 “상해주식위탁관리거래센터(上海股權托管交易中心)내에 과학기술 개혁 전문 분야를 설립하고, 주식거래가 가능한 기업을 위해 주식 발행, 지분양도, 채권융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해시는 이를 자유무역실험구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공표함

— **심천(深圳)과 광주(廣州):** 부동산 클라우드펀딩을 전면 금지하고, 구체적인 리스크 조사 업무에 집중하고 있음

— **광둥(廣東):**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시범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지역별 클라우드펀딩 선두 플랫폼 비교**

— **북경시(北京市):** 110개의 플랫폼 존재

• **JD클라우드펀딩(京東眾籌)**

회사명: 북경JD세기무역유한공사(北京京東世紀貿易有限公司)

창립자: 유강동(劉強東)

회사 위치: 북경(北京市朝陽區北辰西路8号北辰世紀中心A座)

회사 규모: 20명 이하

설립 시기: 2014년 07월 01일

주요 영역 : 종합

JD 클라우드펀딩(京東眾籌)은 JD금융(京東金融)의 5번째 큰 사업영역이며, 일반인들 모두가 참여 가능한 플랫폼임.

- **36커지분투자(36氦股權投資)**

회사명: 북경협력축성금융정보서비스주식유한회사(北京協力筑成金融信息服務股份有限公司)

창립자: 유성성(劉成城)

회사 위치: 북경(北京)

회사 규모: 300명(2015년 기준)

설립 시기: 2010년 12월 08일

주요 영역: 인터넷 창업 서비스, 금융, 사모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36커(36氦)는 주로 자산 관리 수요가 있는 자산가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비공개 지분 투자 서비스를 제공함.

## — 강소성(江蘇省)

- **SUNING클라우드펀딩(蘇寧眾籌)**

회사명 : SUNING운상그룹주식유한회사(蘇寧云商集團股份有限公司)

창립자 : 장진동(張近東)

회사 위치 : 남경(南京市山西路8号金山大厦1-5層)

회사 규모 : 20명 이하

설립 시기 : 2015년 04월 16일

주요 영역 : 종합

SUNING클라우드펀딩은 다른 플랫폼과 비교하여 1,600여개의 오프라인 분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분할하지 않고, 실질적인 체험, 사용, 평가를 진행함. 얼리어답터(Early-adapter)들의 정보를 얻어내어 상품 개량 및 품질상승을 꾀함.

## — 절강성(浙江省)

- **타오바오클라우드펀딩(淘寶眾籌)**

회사명 : 절강타오바오네트워크유한회사(浙江淘寶網絡有限公司)

창립자 : 마윈(馬雲)

회사 위치 : 항주(杭州市余杭區文一西路969号西溪園區)

회사 규모 : 20명 이하

설립 시기 : 2014년 03월 01일

주요 영역 : 종합

타오바오클라우드펀딩은 타오바오(淘寶)의 상인, 고객, 학생, 사무직, 예술가, 연예인 등 신분을 가리지 않음. 만약 성공 가능성이 커 보이는 프로젝트(영화, 음악, 만화, 설계, 공익 등)가 있다면 타오바오클라우드펀딩에 본인의 프로젝트를 알리고 자금을 투자 받을 수 있음.

## — 광둥성(廣東省)

- ZHONG TOU BANG(衆投邦)

회사명 : 심천시 ZHONG TOU BANG 유한회사(深圳市衆投邦股份有限公司)

창립자 : 주펑위(朱鵬炜)

회사 위치 : 심천(深圳市南山區創投大廈10樓)

회사 규모 : 20명 이하

설립 시기 : 2014년 01월 20일

ZHONG TOU BANG은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성장기의 종목 중심으로 주식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며, 항목을 선정할 초기에 엄격한 요구 조건이 있음. 주로 전문투자기관과 증권중사자들을 중심으로 항목의 전면적인 위험을 평가 및 통제하여 크라우드펀딩 투자의 위험성을 최대한 낮춤.

## — 상해시(上海市)

- 마이다커(螞蟻達客)

회사명 : 엔트파이낸스(螞蟻金服)

창립자 : 마윈(馬云)

회사 주소 : 상해시(上海市黃浦區蒙自路207号13号樓493室)

회사 규모 : 20명 이하

설립 시기 : 2015년 11월 21일

주요 영역 : 종합

마이다커(螞蟻達客)는 엔트파이낸스(螞蟻金服)산하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서비스업 기업과 창업자를 위해 설립됨.

## — 료녕성(遼寧省)

- MO FANG CHE(魔方車)

회사명 : 심양회해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회사(沈陽匯海網絡科技有限公司)

창립자 : 추추실(鄒秋實)

회사위치 : 하얼빈(哈爾濱市道里區西八道街2号銀行大厦)

회사규모 : 20명 이하

설립시기 : 2016년 06월 20일

주요영역 : 자동차

최고의 중고차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임.

## — 사천성(四川省)

- JU TIAN XIA(聚天下)

회사이름 : 성도천하집창과학기술유한회사(成都天下聚創科技有限公司)

창립자 : 유평(劉鵬)

회사위치 : 성도(成都市新世紀環球中心東區2-1-1515)

회사규모 : 20명 이하

설립시기 : 2014년 07월 07일

주요영역 : 종합

성도천하집창과학기술유한회사는 혜택천하기업연맹(惠澤天下企業聯盟)의 투자자들과 전문 투자기관이 함께 설립한 플랫폼임.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및 인터넷금융(互聯網金融)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스타트업 기업에게 자금융자 해결 방안 등을 제공하기도 함.

### 3) 한·중 클라우드펀딩 시장 업종별 비교

□ 한국은 ICT와 문화·예술·금융 및 보험업의 건당 용자금액이 높으며,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형 및 소비산업의 건당 용자금액이 높음

- 한국 클라우드펀딩 업종별 분포(발행금액 기준)를 보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비중이 71%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표 16] 참조)

[표 16] 한국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업종별 성공현황

구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ICT)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건수	66	55	37	16	7
금액(억)	89.5	77.56	50.13	19.67	4.57
평균(억)	1.36	1.41	1.35	1.23	0.65
구분	금융 및 보험업	교육 및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농업, 임업, 어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수	5	4	4	3	2
금액(억)	10.86	2.65	4.0	14.45	2.22
평균(억)	2.17	0.66	1.0	4.82	1.11

출처: KSD 클라우드넷 (2017.06.30.)

- [표 17]에서 중국 클라우드펀딩 업종별 분포(발행금액 기준)를 보면 영화·음악·출판·게임 등 영역의 클라우드펀딩 건별 금액은 기타 과학기술·실물장소 및 여행 등 산업의 건별 용자규모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우와 상반됨
- 따라서 양국은 한·중 클라우드펀딩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음

[표 17] 중국 크라우드펀딩 업종별 분포

구분	중고차	과학기술	실물장소	여행	농업
건수	22,575	2,233	999	301	2,793
금액(억RMB)	83.19	41.31	18.89	5.73	4.68
평균(RMB)	368,504	1,849,977	1,890,890	1,903,654	167,561
구분	영화	음악	출판	게임	
건수	433	691	374	80	
금액(억RMB)	2.66	0.64	0.28	0.15	
평균(RMB)	614,318	92,619	74,866	187,500	

출처: 人創咨詢, 2016年中國眾籌行業發展年報(2017.03.10)

## 2.2 한중 양국 크라우드펀딩 유통시장

### 1) 한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유통시장 - KSM

□ KSM(KRX Startup Market의 약칭)은 2016년 11월 14일 신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sup>96)</sup>으로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 및 상장 전 주식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장외거래 플랫폼임

— 2017년 6월 30일 기준 KSM등록기업 54개사 중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업체는 34개로 전체 등록기업의 63%를 차지함

— 등록요건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Global 300기업, 중기특화 증권사, 창조경

제혁신센터 등

- **제출서류:** 신규등록 신청서,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확인서 또는 추천기관의 추천서, 정관 1부,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각 1매 혹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주권 발행사항에 대해 증명하고자 발급한 문서 1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그 밖에 KRX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 **지원혜택**
  - 클라우드펀딩에 성공하여 KSM에 6개월 이상 등록한 기업은 지정자문인 없이 코넥스(KONEX) 상장 가능
  - KONEX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임
  -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특례상장 요건에 부합 시 KONEX 상장 가능 ([표 18] 참조)

**[표 18]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

구분	특례상장요건	
	펀딩금액	참여자
클라우드펀딩기업	3억원 이상	50인 이상
KSM등록 클라우드펀딩	1억 5,000만원 이상	20인 이상
정책금융추천 클라우드펀딩	1억원 이상	50인 이상
정책금융추천 KSM등록 클라우드펀딩	7,500만원 이상	20인 이상

자료: KSM 홈페이지

- **전매제한 예외:** 클라우드펀딩 주식은 발행일부터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되나 KSM을 통해 거래된 클라우드펀딩 주식은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음
- **자금조달 지원:** KSM-클라우드펀딩 시딩펀드로 총 8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및 투자자 매칭과 네트워킹도 지원함

- **거래현황:** 현재 KSM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은 5개임 ([표 19] 참조)

**[표 19] KSM 거래 기업 현황**

(2017년 7월 4일 기준)

종목명	매도		매수	
	잔량	평균가	잔량	평균가
모헤닉게라지스	210	210,524	43	149,767
티레모	800	200,000		
한류통	500	5,000		
디파츠	1,000	2,500		
쓰리디코리아	100	250,000		

출처: KSM홈페이지, <http://ksm.krx.co.kr/contents/02/020100/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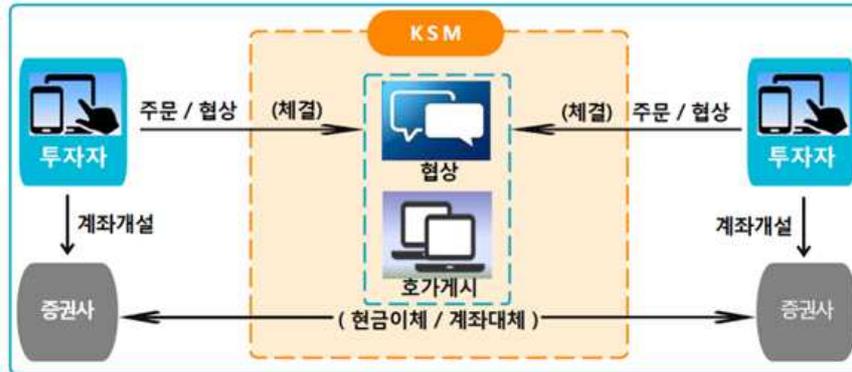
— **등록기업 의무**

- 매 사업연도 재무정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위한 내부결산자료 공개
- 통일 규격증권 발행<sup>97)</sup>

— **거래구조([그림 21] 참조)**

- ① 증권사 계좌계설: 증권사간 직접 현금이체 및 계좌대체를 통해 높은 결제 안정성 확보
  - 교보증권, 유진증권, 유안타증권, G브릿지, 동부증권, 키움증권, 코리아에셋, IBK증권
- ② APP을 통한 주문제출 및 상대방 직접연결
- ③ 메신저 상 채팅을 통해 협상 및 거래 체결
- ④ 체결 즉시 증권사 계좌이체와 체결내역 KSM에 공표

[그림 21] KSM시장 거래구조



출처: KSM홈페이지, <http://ksm.krx.co.kr/contents/02/020100/list>

#### □ 성공 사례

- 회사명: SYJ(자투리원단을 활용하여 원가를 줄이고, O2O 서비스를 진행)
-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IBK투자증권
- 클라우드펀딩 발행 성공금액: 7억원(2016년 8월)
- KONEX 거래액: 5,980원(펀딩 발행가 2,000원)

#### □ 문제점

- 유동성이 낮아 투자자의 적시 주식 취득 혹은 처분이 어려울 수 있음
- KSM 등록대상 기업은 KSM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거래대상 기업으로 거래소에 의한 별도의 심사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투자시 각별한 주의를 요함

## 2) 중국 사모 클라우드펀딩 지분 유통시장 - “중증 기관간 사모상품 호가와 서비스 시스템(中証机构間私募産品報價与服務系統)”<sup>98)</sup>

- 중국에서 사모로 발행된 지분거래는 “중증 기관간 사모상품 호가와 서비스 시스템(이하 약칭 ‘중증 기관간 시장(中証机构間市場)’)”을 통해 유통할 수 있음
  - 중증 기관간 시장은 2013년 2월 27일 설립된 중증기관간호가시스템주식유한회사(中証机构間報價系統股份有限公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며, 주로 비공개방식으로 모집된 지분의 호가, 발행 및 양도 서비스를 제공함
  
- 중국 중증 기관간 시장은 현재 사모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적격 투자자(合格投資者)들을 위한 온라인 장외시장이기도 함
  - 거래구조: 발행인이 온라인 사이트 ‘중증 기관간 시장’에 접속하여 인터넷 플랫폼 발행 서비스 성명서(在線發行平台服務聲明)에 서명한 후 등록(產品注冊)하면 위 시스템에서 사모로 주식(私募產品)을 발행할 수 있음
  - 본 인터넷 발행 플랫폼을 거쳐 투자자는 발행인과 연락할 수 있으며,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주식을 직접 구매하거나 대리 구매함<sup>99)</sup>

## 2.3 한중 양국 크라우드펀딩 시장 문제점

### 1) 한국 크라우드펀딩 시장 문제점

- (발행기업) 우수한 유망기업들의 자원이 많지 않고 투자자들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 실제로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대부분이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성 있는 유망기업들이 아닌 사업아이디어 위주 초기 창업기업임

- 국내 유망 스타트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TIPS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창업지원 자금을 받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또한 TIPS자금을 받은 기업들이 우수한 유망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
- 이는 TIPS프로그램의 경우 리딩투자자가 투자여부를 판단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임
- TIPS 인터뷰 결과, TIPS프로그램을 통해 성공한 프로젝트(기업)도 추가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다고 함
- 금융위원회 주도의 크라우드펀딩과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창업지원 TIPS프로그램이 윈윈하는 방안이 필요

□ (투자자) 고수의 투자상품 부재, 불충분한 투자정보, 투자한도 제한, 복잡한 투자경로 및 자금회수 어려움 등 문제가 존재

- **불충분한 투자정보:** 크라우드펀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토대로 일반투자자가 투자여부를 판단하는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투자가 불가하며,** 투자자의 플랫폼과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명단 공개여부가 결정되기에 **타 투자자의 청약 정보를 참고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 개인의 독립적·주관적 판단에 의해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 짐**
  - 현실적으로 온라인상에 게시된 자료만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기피가 강함**
  - 그러므로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이끌 수 있는 리딩투자자가 필요함**
- **자금모집 후 실제 투자까지 최소 2개월 소요:** 현행 시행령에서는 투자자의 증권 예탁보호예수 업무 등을 KSD가 담당하기에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단기간 안에 모으더라도 실제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 됨
  - 또한 투자자가 직접 중개업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야 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 KSD에 예탁계좌를 개설하는 등 절차

가 일정수준의 시간을 필요로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취약한 중개수수료 수익모델, 기업/투자자 회원 확보 어려움, 광고홍보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문제가 존재
  - 중개업자들의 수익난이 전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함
  -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기업들의 경우 발행기업은 물론 투자자에게도 수수료를 수취함
    - 펀딩 성공 시 추가적 수수료를 받거나 의결권 및 우선 매수권 등을 보유하는데 반해, 국내 자본시장법상 발행자에 대한 수수료 외에는 모두 금지되어 있음

## 2) 중국 크라우드펀딩 시장 문제점

-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합법성 모호: 공모형 크라우드펀딩은 아직 증권법 개정이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모형 크라우드펀딩은 불법자금모집과의 경계가 모호함
  - 중국 국민들이 용자를 받는 통로가 제한되어 불법적인 자금모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크라우드펀딩은 쉽게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인식 됨
  - 또한 연관된 법률의 부재와 크라우드펀딩 종목 투자자가 많아서 불확실성이 크고 민사분쟁이 쉽게 발생함
    - 발행인과 투자자사이에 발생하는 용자행위(자금모집)는 사적계약에 해당되기에 정부는 이와 같은 사적 범주에 속하는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
    -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함과 동시에 발행인이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는 크라우드펀딩 소액자금 공개모집 및 금융시장 질서와 투자자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의 합리성과 필요성이 대두됨

- 최고인민법원의 불법자금 형사사건 심사에 관한 구체적 응용법률 문제 해석(《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非法集資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이하 <해석>)에 의거하여 무면허의 클라우드펀딩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공개적으로 추천하거나 수익을 보장하여 불특정대상에 게 자금을 모집할 경우, <해석> 제1항 불법모집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함
- 특히,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중 일부가 “사회 불특정 대상”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에 속함
- <해석> 제6항의 제재사항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며, 불법자금 모집과 혼란이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도 있음

#### □ 투자이후 관리의 어려움이 큼

- 클라우드펀딩의 위험성은 전통 **융자방식(자금모집)**과 차이가 있으나 **중국 대부분 투자자는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혹은 창업프로젝트에 유혹되어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 투자손실 이후 **중개업자 혹은 정부를 찾아서 책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투자이후 관리가 현 중국 클라우드펀딩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중국 실정에 맞게 투자자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고, 동시에 사기 등 부정적인 현상을 방지해야 할지 등에 대해 세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자금 위탁관리 안정성 결여: 사모형 클라우드펀딩의 경우 플랫폼 자체가 투자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투자자금의 안정성 확보가 문제가 있음

- 그러나 **공모형 클라우드펀딩 규제 기본원칙인 「지도의견」 및**

「통지」에 의하면 청약증거금관리기관으로 은행을 지정

□ 신용문제에 대한 법률규제의 부족

-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정확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심지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동조, 묵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 중국 신용시스템은 특정 금융기관과 법원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특정 금융기관이 제공한 불법기록은 특정 상황에서만 유효하므로 처벌에 효력이 없음
  - 법원이 발표한 “신용불량자 리스트”는 범법자가 사법절차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음

3) 한·중 양국 공동으로 존재하는 문제점

- 한·중 양국 모두 투자가치가 우수한 유망한 발행기업 확보가 시급할 뿐더러 성숙된 책임투자 의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 저변 확대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수익 다각화와 국제화 추진이 필요

□ 지식재산 보호의 어려움

- 크라우드펀딩의 정보 공개성과 설립초기기업의 성공 불확실성은 창의성을 보호받을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짐
  -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대다수는 창업성을 지니며, 완성품도 있지만 반제품도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프로젝트를 광고 하거나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동안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도용당할 위험성이 큼

- 따라서 한·중 클라우드펀딩 연계방안 설계에 있어서 반드시 양국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상호 보완하며, 공동으로 존재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마련이 가능해야 할 것임

### 3. 한·중 양국 클라우드펀딩 연계방안

#### 3.1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정의와 구축방향

- 한·중 클라우드펀딩 연계사업(가칭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韓中衆籌通’)은 한국 클라우드펀딩 시장의 단점을 중국 클라우드펀딩 시장의 장점이 채워주고, 중국 클라우드펀딩 시장의 단점을 한국 클라우드펀딩 시장의 장점이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출발이 가능함
  - 한국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 장치 등 규범화는 잘 되어 있으나 시장규모가 작아 시장 확대 필요성에 직면한 반면
    - 중국의 경우 시장 규모나 투자 규모는 한국에 비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임
  - 중국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리딩투자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반면
    - 한국의 경우 클라우드펀딩 투자정보에 제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시범사업 정의] 한·중 양국의 클라우드펀딩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의 창업기업과 중소혁신형 기업들이 이를 통하여 양국 자본시장에서 기업발전을 위한 소규모의 자금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직접 융자 가능하도록 하고, 양국 투자자들이 양국의 우수한 혁신형 기업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갖추는 시범사업을 뜻함
  - 시장연계라는 측면에서 후강통·선강통(중·대형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내 유통시장간 연계)과 유사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설립목적은 양국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한 국제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본 플랫폼은 한·중 중소형 혁신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 간의 교류와 마케팅 및 상대국 시장 진출 환경 마련을 통해 양국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국제화 실현의 가장 효율적인 통로가 되도록 함

□ 이는 한·중 양국 클라우드펀딩 시스템 연결 (펀딩심사, 투자 광고, 청약 관리 등)을 통해 중국 발행기업에 대한 한국 투자자의 지분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해외 비상장기업 주식 취득)과 한국 발행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자의 지분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외환관리 및 자본항목 개방제도 설계를 포함

- 한국이나 중국기업이 상대국에서 기업공개 하는 것이 아님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은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자본항목 개방 프로그램임
  - 중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 증권 시장에 투자 가능한 라이선스 QDII(적격국내기관투자자), QDII2(적격개인투자자)와 같은 자본항목 개방 시범프로그램이 필요
  - 마찬가지로 한국의 투자자들이 중국 소재 비상장기업의 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라이선스 QFII(적격외국투자기관), QFII2(적격개인외국투자자)와 같은 자본항목 개방 시범프로그램이 필요([그림 22] 참조)

[그림 22] 한중 클라우드펀드통(韓中衆籌通) 개념도



16

□ 양국 중소기업의 클라우드펀딩 투자를 증대하는 한·중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아래와 같은 기능이 가능해야 할 것임

- 양국 투자자들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국어·중국어 양국 언어로 홍보(IR) 및 공시자료가 등록
- 투자 시 양국 통화(원화 혹은 위안화)가 가능하도록 설계
- 투자로부터 승인 및 자금결제와 증권등록 완료 등 모든 과정이 동시결제 및 자동으로 온라인에서 완성
- 특허나 저작권을 담보로 온라인상에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증대하는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도 필요
-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능한 법적이슈에 대해 법적주체 확인 및 국제법 적용 등 과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3.2 한·중 양국 클라우드펀딩 연계 필요성

#### □ 한·중 양국 정상합의에 적극 부응

- 지난 2015년 10월 리커창총리 한국방문 시 양국정부는 클라우드펀딩 시범사업 실시를 합의한바 있으나 아직 진행된 것이 없음<sup>100)</sup>
- 이의 구체화의 방법으로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을 추진한다면 양국 정상의 합의를 실행 한다는 의의가 있을 뿐더러 한·중 자본시장의 상호협력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은 부산과 중국 시범도시의 특화된 클라우드펀딩 시장을 보다 선진화할 수 있는 원인의 기회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 또는 신생기업(Start Up)과 양국의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주는 시장기능 확보가 가능하며
-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통한 기업과 투자자의 정보(투자정보, 신용정보 등) 집결 및 클라우드펀딩 자금의 유통 활성화도 용이해짐
- 결과적으로 양국 시범도시는 국제금융도시로서의 기능 축적에 유리함

#### □ 부산의 경우 금융공공기관 이전 등 금융중심지 마련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 되었으나 금융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투자 확대와 금융시장 깊이 부족 등 자체 역량만으로 성장거점이 되기에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FinTech 중심의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과 위안화 금융시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국제금융중심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해야 함

- FinTech 시대 도래에 따라 모든 금융 인프라를 보유한 부산(한국거래소, KSD, 기술보증기금, 부산은행,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주요기관들이 집중)은 FinTech를 중심으로 중소혁신

기업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환경 마련 같은 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여야 함

- 이의 추진을 위해서 부산은 바로 이웃에 위치한 중국 자본시장 국제화의 흐름을 적극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 특히 아직은 자본시장 역량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중국지방도시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역량강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함

□ 중국 시범도시 입장에서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이 실현될 경우 지방정부 금융혁신의 모범 시범사례가 될 뿐더러,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국제 금융시장 활용방안으로서 중앙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쌍창(双创, 즉 대중창업·만중혁신)실현에 적극 부응하는 것임<sup>101)</sup>

- 중국 정부는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을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자본시장 다층화 정책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 바,
-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을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개념을 넘어 자본시장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이라는 범위로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음
- 이는 미국의 나스닥이 전 세계 많은 혁신기업의 상장을 통하여 글로벌 자본시장 플랫폼으로 성장해왔듯이 중국도 글로벌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국제적 선도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임
  - 이는 중국의 국제금융지위를 높여줄 뿐더러, 특히 '보혜금융'시장의 국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음

□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국제연결은 국제자본간 합작과 자본항목 통제간의 균형에 유리

-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국제합작은 중국의 자본통제 제약조

## 전하에서 해외 적격자본의 중국 역내 기업설립을 촉진함

- 중국내 자금을 모집하여 해외 우수한 기술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중국내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에 활용할 필요 있음
- 특히 적격 해외금융기관의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이들 기관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한 중장기투자 유치가 가능함
- 이는 외자의 중국 역내 투자 유동성을 높이고 핫머니 유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
- 또한 해외금융기관의 리딩투자자 참여로 모집기업의 신용상승에 유리하며 이는 투자자들의 확대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

### — 대형 기관들간의 국제간 협력에 비해 크라우드펀딩간의 협력은 대응되는 금액이 적어 자본규제의 규정에 더 적합

- 지분투자는 투자주기가 길고, 자본유출 위험을 낮추는 효율적인 투자 유치 방식임
- 현재 중국은 주로 대형 금융기관을 통한 국제금융합작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금규모가 크고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는 불가능 하게 함
- 따라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국제간 연계를 통해 투자자금규모가 작고 쉽게 합작을 실현할 수 있어 더욱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국제금융합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 중국과의 크라우드펀딩通 협력대상으로 한국이어야 하는 이유

### — 중국은 시장이 넓고 방대한 투자자 플랫폼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 그 어떤 국가와도 자금모집 및 우수 창업프로젝트와의 연계투자를 통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최적화가 가능함

-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중국 시장의 적극적인 진출로 세계 금융강국 목표 실현이 짧은 시간에 가능할 수 있음

### — 그러나 한중 크라우드펀딩 연계사업 파트너 국가로 한국이 최적임

- 우선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모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구축되어 있으며
-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경험은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자본시장 시범개방정책에 가장 직접적인 참고 사례가 될 것임

- 또한 한국의 금융업은 제조업 육성과 지원을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중국 관리당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투기자본 공격 등을 잠재울 수 있음
- 유럽의 경우 영국 등 전통 자본시장 강국들은 브렉시트 등 불안정성 환경에 처해 있으며, 중국과 협력하기에 아직 여유가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큼
- 중국의 입장에서 투자 난이도가 높은 선진국 시장에 비해 한국은 규모 등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동시에 시간차가 작은 장점이 있음
- 또한 한국은 2014년부터 위안화 허브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역외 위안화(CNH)의 환류채널 마련과 위안화 국제화 촉진 역할이 가능함

#### — 양국 우세산업 및 4차산업 분야에서의 시너지 협력 극대화 실현 가능

- 반도체, 전자설비, 화장품, 해양, 의료, 제약, 바이오, 패션, 교육, 영유아 등 영역은 중국 대비 한국 우세산업으로서 중국 국내 투자수요가 큰 영역임
- 반대로 한국의 입장에서 BATJ(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JD)등 중국기업들의 클라우드펀딩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에 한국의 창업기업, 특히 4차산업과 관련된 중소혁신형 기업들이 이들의 투자를 받아 짧은 기간에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FinTech 플랫폼 기반 마련이 가능해짐
- 따라서 ICT 우위를 기반으로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제약 및 바이오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한국과 중국시장에서 클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자본조달이 쉽게 이루어지는 생태계 마련이 중요함



- 심사의 주요 내용은 발행회사의 성장성, 시장성, 잠재성 등을 검토해서 클라우드펀딩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 (투자 광고)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은 펀딩심사를 통과한 발행회사의 투자광고를 투자국 언어로 온라인(이하 On-Line)에 게시함

- 증권사의 발행조건,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 발행회사 필수 기재사항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게시
- 이때 클라우드펀딩通을 이용하여 상대국(중국 또는 한국)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투자광고를 투자국 언어로 번역하여 투자국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광고 의뢰
- 클라우드펀딩플랫폼은 발행회사의 모집정보를 중앙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한국의 경우 KSD)에 On-Line으로 통보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이를 심사 후 승인

□ (청약 주문) 투자자는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되어 있는 청약모집 광고를 보고 On-Line으로 자신의 판단 하에 청약 여부를 결정

- 청약은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On-Line으로 처리
  - 즉, 대면이나 서류 제출 등 오프라인(Off-Line) 행위 없음
- 투자자는 청약 즉시 지정된 은행(한국은 증권금융 포함)에 청약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여야 함
  - 이때 입금계좌는 클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명의의 청약대금 전용계좌이어야 함

□ (청약 관리) 클라우드펀딩플랫폼은 투자자로부터 청약내역이 접수되면 해당 투자자의 투자한도 체크를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은

## KSD)에 의뢰

- 모든 프로세스는 On-Lin으로 자동 수행 됨
- (투자한도 확인)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발행회사와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확인하여 클라우드펀딩플랫폼에 온라인으로 통보
  - 발행회사 한도 확인: 한국의 경우 연간 발행한도(7억) 충족 여부를 확인함
  - 투자자별 한도 확인: 한국의 경우 일반투자자(발행회사별 투자한도(500만원) 및 연간 투자한도(1,0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발행회사별 투자한도 1,000만원), 연간 투자한도(2,000만원), 전문투자자(한도 없음) 별로 구분하여 확인함
- (청약 성공여부 판단)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청약기간 말 현재 청약금액이 청약 목표액의 80%를 상회하면 발행성공으로 판단함
  - 이는 한국의 경우이며 중국은 이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함
  - 클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은 해당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고, 청약대금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해당 금액을 발행회사로 이체할 것을 통지
    - 청약금액이 80%에 미달한 경우 실패로 판단하고, 청약대금을 기 납부한 청약자에게 환불하도록 은행에 통지
- (증권발행 의뢰) 발행회사는 청약대금 수령 이후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증자등기하고 KSD에 주권발행(또는 등록발행)을 의뢰
- (주식 교부) KSD는 발행회사의 증자 등기 완료 여부 등을 심사한 이후 증권회사에 개설된 투자자 계좌로 자동 입고

## 나.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구현을 위한 2가지 핵심연계망

### (1) 한·중 클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간 연계

□ 현재 한국과 중국의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체계가 상이하며, 한국은 복수의 온라인소액중개회사 등록방식으로 운영하지만, 중국(특히 대련시와 청도시)은 지역증권거래소(신사판 시장)가 운영

- 한국 클라우드펀딩 온라인소액중개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한국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현재 14개사가 영업 중임
- 중국(대련시와 청도시)은 지역증권거래소가 단일의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중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연계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중국 발행회사의 한국 내 펀딩과 그 역의 관계를 분리해서 접근하길 제안
  - 양국의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체계가 상이함을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시장간 연계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임
- 중국 발행회사의 한국 내 펀딩은 한국 자본시장법을 존중하여 한국 내 온라인소액중개회사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
  - 즉, 중국의 클라우드펀딩플랫폼이 한국에서 펀딩할 발행회사를 선정하고 한국의 온라인소액중개회사에 광고를 의뢰하는 것임
  - 이 경우 해당 온라인소액중개회사는 발행회사 정보를 한국의 투자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중국의 클라우드펀딩플랫폼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합작으로 설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sup>102)</sup>
- 한국 발행회사의 중국내 펀딩은 중국 지역증권거래소를 활용할 것을 제안

- 즉, 한국의 온라인소액중개회사가 부산에 설립된 온라인중개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중국지역증권거래소의 클라우드펀딩 회원이 되어 자신이 중개할 발행회사의 펀딩을 중국에서 모집토록 하는 것임
- 물론 이 방법은 중국 측과 협의가 필요함

## (2) 중앙기록관리 담당기관간 연계

□ 중앙기록관리 장치의 중요한 역할은 발행회사의 연간 펀딩규모와 투자자별 발행회사별 연간 펀딩규모를 체크함으로써 고위험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는 공공기관인 KSD가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중개회사가 경쟁업무(크라우드펀딩 대상 발행회사 발굴(심사), 광고 등)를 담당하고 공적 업무(투자한도 체크, 투자자명부 관리 등)는 KSD가 담당하도록 규제되어 있는 2Tier 구조임
- 중국(대련시와 청도시)은 지역증권거래소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1Tier 구조임
- 물론 중국은 아직 공모형(즉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법제가 완비되지 않아 중앙기록관리 기능을 어느 기관이 수행할지 명확치 않지만 관련법들이 제정되어 가는 과정 속에 한국과 같은 공공기관이 중앙기록관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사료됨

□ 중앙기록관리 담당기관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

- 우선 정확한 발행회사 정보의 공유가 중요
  - 국제 크라우드펀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크라우드펀딩을 수행하는 발행회사 정보의 진실성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되므로 발행국과 투자국의 중앙기록관리 기관간 발행회사 정보를 공유하도록 제안함

- 다음 양국 클라우드펀딩에 있어 IT Net-Work을 상호 연계하여 공적 인프라로 제공할 것을 제안
  - 한국의 클라우드펀딩 업계는 대부분이 소규모이므로 모든 업무가 On-Line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국제간 클라우드펀딩을 위한 대규모 IT 투자에 역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
  -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함으로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연계를 통해 일종의 공동 Net-Work을 구축하고 제공함으로써 효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검토과제

##### □ 클라우드펀딩 투자자 등록 면제 가능여부 검토

-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클라우드펀딩 포함)하기 위해서는 상임대리인 선임 및 보관기관을 지정하고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하여야 함
- 클라우드펀딩 시장은 상장주식을 취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등록이 필요가 없으나 **실명확인 목적으로 외국인투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클라우드펀딩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투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수익에 보다 민감한 시장인데 상임대리인에 보관기관까지 선임해야 한다면 거래비용이 커서 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을 수 있음**
- 더욱이 클라우드펀딩은 모든 업무처리 절차가 On-Line으로 이루어지고 투자자의 **한도관리를 공공기관인 KSD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확인 및 투자·보유한도가 관리되므로 외국인투자등록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보여 짐**
- **외국인투자등록의 면제 또는 예외는 동시에 통합계좌(Omnibus A/C)방식의 업무처리가 가능해짐**
  - 즉,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기록관리 기관의 명의로 상대국에 계좌

등록이 가능해 짐에 따라 효율성을 대폭 증가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됨

— 한편, 중국의 경우도 이와 동일함

- RQFII나 QFII 등도 외국인투자등록을 한 후 투자가 가능함
- 클라우드펀딩처럼 클라우드 플랫폼 및 중앙기록관리 기관에 의해 투자한도가 체크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의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가능성이 높아짐(본 연구보고서의 제2장 후강통과 선강통 사례 참조)

□ 복수통화 청약 가능 여부 검토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이 구축되면 중국 발행회사는 한국에서, 한국 발행회사는 중국에서 자금을 공모할 수 있게 됨
- 만약 한국 발행회사가 중국에서 위안화로만 자금을 모집한다면 환헷지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이 구축된다면 발행회사로 하여금 모집 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어야 함
  - 즉, 중국기업이 한국에서 위안화(또는 원화)로 공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임
  - 반대의 경우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원화(또는 위안화)로 공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시범사업을 담당하게 될 부산시와 중국 지방도시를 '원화와 위안화'가 동시에 유통이 가능한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고
- 특히 서울과 상해에 각각 설치 운영 중인 원-위안화 직거래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유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기타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아래 내용들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발행회사의 발행정보 정확성 담보장치 강화

- 한국의 경우 온라인소액중개회사로 하여금 크라우드펀딩을 원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면서 이를 위해 인터넷에 발행인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투자자는 이의 조회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수행하게 됨
- 이런 관계로 한국은 온라인소액중개회사에게 발행인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발행인의 재무상황, 발행인의 사업계획 등)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크라우드펀딩플랫폼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언어(번역문제), 기업회계 상이 등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
- 또한 한국인 투자자들은 과거 한국거래소에 상장했던 중국기업들의 상장 퇴출 등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간 효율적 연계방안이 절대적이며, 이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한·중 합작 온라인플랫폼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음
- 그러나 발행인의 정확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법적책임을 누가 책임지어야 할지가 문제임

— 청약한 주식의 법적 소유권 확보: 한국투자자가 한중 크라우드펀딩通을 이용해 중국 발행기업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KSD의 명의로 중국의 중앙 증권예탁결제기관인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CSDC) 계좌에 기록되거나, 지방정부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지방 증권예탁결제기관에 일종의 명의자(Nominee) 방식으로 예탁될 것임. 이는 중국 주식의 직접등록방식의 예외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실질 청약자의 법적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함

- 홍콩 거주 투자자가 후강통이나 선강통을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CSDC에 개설된 홍콩예탁결제원(HKSCC)명의로 계좌에 HKSCC명의로 취득(예탁)되는데, CSRC는 이 지분에 대해 비록 홍콩투자자 명의로 보유(예탁)되지 못하지만 실질보유자임을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음

— 외국인 주주로서의 제반 권리 확보 환경 구축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배당금 지급 시 제반 세금을 공제하게 됨.** 이의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국 예탁결제원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임
- 동시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유·무상증자 등 다양한 Corporate Action(CA)에 대응한 양국 예탁결제원의 업무 공조망이 촘촘히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양국 클라우드펀딩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한 한·중 유통시장과의 연계 혹은 전용시장 마련이 필요

- 클라우드펀딩에 투자된 자금의 회수를 위한 유통시장 존재는 필수적
- 한국의 경우 KSM이나 K-OTC(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
- 한국투자자의 경우는 자신들의 지분을 중국 증권시장에서 매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의 방법이 여의치 않아 보임. 즉, **클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지분이 매매되는 신사판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임**
- 양 정부간 클라우드펀딩通 구축 논의 시 한·중 양국의 클라우드펀딩 지분 전용 유통시장의 상호 개방 또는 공동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투자자 보호제도 및 투자 책임교육

- 투자자 보호의 문제는 「지도의견」에 반영된 중국 인터넷금융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금융혁신에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임
- 하지만 인터넷금융의 특성 상 전통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발행인 중심의 규제로는 효과적인 투자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음
- 왜냐하면 발행인은 이제 막 창업을 한 개인이거나 중소·벤처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를 위한 다양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므로 투자자는 극히 제한된 자료를 통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임
- 이러한 이유로 클라우드펀딩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JOBS

법과 같이 기존의 투자한도 제한, 투자자 교육 등의 투자자 규제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중국도 예외는 아님

- 위에서 상술했던 바와 같이 중국의 「지도의견」에서는 적격투자자 개념을 도입하고, 적격투자자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리스크 인지'와 '리스크 수용'의 두 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지도의견」은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적으로 리스크 인지나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임
- 한국의 경우 성숙된 투자자 의식을 갖고 있는 편이라 자주적 투자에 대해서 자기가 위험을 저야 한다는 의식이 확실한 반면, 중국 투자자의 경우 성숙된 투자이념이 아직 미약한 관계로 투자로부터 오는 손실에 대해 관련 플랫폼 업체나 정부를 찾아가는 경향이 강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임
- 아래 [사례]는 현재 알리바바 산하 클라우드펀딩 업체 마이다커(蚂蚁达客)에서 실행하는 리스크 통제 관리 시스템임

### [사례] 알리바바 마이다커(蚂蚁达客)의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통제관리 규정

□ 중국에서 최초로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영업허가증을 획득한 마이다커의 홈페이지에는 자체적으로 「비공개 지분금융 업무 플랫폼 관리규칙」, 「비공개 지분금융 업무에 관한 투자관리 세칙」, 「비공개 지분금융 사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 공지서」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

— 마이다커의 자체 규정에서는 발행인의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자금모집 계획서 상에 기재해야 할 내용으로 ① 회사의 기본현황 ② 산업 현황 ③ 제품 혹은 서비스 내용 ④ 비즈니스 모델 및 경쟁력 ⑤ 구성원 및 경력 ⑥ 지분현황 및 대출이력 ⑦ 자회사 및 지분구조 ⑧ 모집금액 및 용도, 발전계획 ⑨ 기타 정보 등을 요구함
- 모집 성공 후 발행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플랫폼을 통해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외에도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발생 2일 안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격투자자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총 3단계에 걸쳐 투자자요건을 검증함
  - 우선 플랫폼 상에서 실명인증에 성공한 알리페이 (支付宝) 계좌를 등록하고
  - 두 번째 단계로 위어바오 (余额宝) 서비스를 개통하도록 하고 있음
  - 세 번째는 등록 이후 플랫폼 상에서 적격투자자 인증을 거쳐야 하는 데, 아래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회원을 적격투자자로 인증하고 있음: ① 최근 3년 내 연평균 수입이 30만 위안 이상인 개인, ② 금융자산이 100만 위안 이상인 개인<sup>103</sup>, ③ 기타 적격투자자 요건에 부합하는 개인

**마이더커는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 공지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음**

- 마이더커의 「투자 리스크 공지서」에는 비공개 지분금융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발행인 리스크, 파트너 리스크,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지분평가 리스크, 정보 리스크, 모집실패 혹은 동업기업 설립 실패 리스크, 기술 및 불가항력의 예외사건으로 인한 리스크, 재정정책 리스크, 감독 리스크, 투자자 권익보호 관련 리스크, 제3자 리스크, 기타 리스크 등 13가지로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공지함

## V. 정책 검토사항과 제안

### [요약]

#### □ 클라우드펀딩通 구축을 위해 중국 시범도시로 대련시 금보신구와 청도시를 추천

- 대련시 금보신구 : 자유무역실험구(제3기)로 금융개혁시범정책의 시행을 중앙정부(국무원)로부터 승인 받기 용이하기 때문임. 현재, 본 시범사업 수행 신청서를 국무원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며, 이의 승인 시 업무 수행 관련해서 제1기 자유무역실험구인 상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청도시: 재부관리종합개혁실험구로 부산시와 금융협력사업을 기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리커창총리 방한 시 합의한 클라우드펀딩 시범사업을 산동성과 실시한다는 기존합의를 대외 명분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 관련 부처(CSRC와 SAFE)에 시범사업 수행 신청 추진 중

#### □ 시범사업 추진방식

- [제안1] 한·중 양국 정상간 합의과제에 포함시켜 양국정상간 합의 후 추진하거나
  - [제안2] 한·중 도시간 FTA협력 사업(한·중 FTA 서비스분야, 12.20부터 협의시작) 중 하나의 아젠다로 추진하거나
  - [제안3] 한·중 양 도시의 공동추진 협약서 체결 및 양국 중앙정부 승인 이후 추진하는 방식 권고
- ⇒ 상기의 각 제안들은 독립적으로 추진가능하나 병행추진도 가능하며, [제안1]과 [제안2]는 부산의 국제금융중심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TOP-DOWN 방식으로 추진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

####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추진 시 부산시 연구과제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활성화 및 효율화 방안 연구 : 자본시장법 등이 아닌 하위 레벨의 금투업규정, 외환관리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 특히 한·중 합작 온라인소액투자중개회사의 설립방법, 비즈니스모델, 기존 부산시 내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방안 등의 심층 연구가 필요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의 정식 명칭 제정도 고려 : '중소혁신기업 증권시장연계

(Innovation Firm Funding Market Connection, IFFMC)과 같은 시범사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명칭을 고려하거나, 후강통처럼 부산과 중국 시범도시 약칭을 인용하는 상징적 명칭(예를 들어 부칭통(釜靑通), 부산과 청도간 시장연계) 등을 고려해 볼 필요

□ KSD는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연계 관련 공적 역할 수행 연구

- 중국의 공모형 클라우드펀딩 시스템 도입 지원 및 한국과의 시장연계 관련 공동 연구
- 한·중 클라우드펀딩 플랫폼간 Network 역할 수행 필요성 연구
  - 즉 한국 내 기존 클라우드펀딩 회사들의 매물들을 예탁된 Network을 통해 중국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한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회사는 관련 IT 설비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표준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관련 정책자금 매칭 등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1. 부산의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구축 추진사항

### 1.1 클라우드펀딩通 중국 시범도시 선정

□ 클라우드펀딩 시장의 대외개방 조치가 선행(중앙정부의 승인사항)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를 선정해야 함

- 중국 시범도시에 한에서 중국 투자자의 한국기업 지분보유가 가능한 조치가 필요(중국 입장에서 Out-Bound 투자)
  - 현재 실행되고 있는 중국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증권시장 적격투자 라이선스인 QDII, RQDII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 시범사업용 중국인의 해외 클라우드펀딩 적격투자 라이선스 신설이 필요
- 동시에 중국 시범도시에 한해서 한국(부산) 투자자의 클라우드펀딩 투자가 가능한 조치가 필요

— 이의 구현으로 홍콩거래소와 상해·심천거래소를 상호 연계한 후강통 같은 시장 연계프로그램(장외시장간 연결)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사료

- 즉, 후강통이나 채권통처럼 중국 시범도시와 부산에 설립된 클라우드펀딩 플랫폼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할 수 있음
- 이는 주로 증권의 예탁·등록 및 결제 등 백오피스 시스템간의 연결을 필요로 함
- 한국은 부산에 소재한 한국예탁결제원의 클라우드넷(Crowdnet) 시스템을 활용하면 될 것임

— 아래와 같은 대안도 존재함(중국 입장에서 In-Bound 투자)

- 기존 실행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의 중국 증권시장 적격투자 라이선스인 QFII, RQFII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 시범사업용 외국인의 클라우드펀딩 적격투자 라이선스 신설이 필요

□ 중국 시범도시 선정 시 위의 시범정책을 중앙정부로부터 용이하게 인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기 보유한 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자유무역실험구로 이미 지정된 도시의 경우, 상해자유무역실험구에서 실행된 기존의 금융개혁개방 정책들을 그대로 복제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한중 클라우드펀딩通과 같은 국제간 자본시장 연계사업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아짐

—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지방도시간 클라우드펀딩通 연계사업은 자본항목 개방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상해자유무역실험구에서 기 실행된 FT계정의 자본항목 적용사례를 참조하여 중앙정부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해야 함<sup>104)</sup>

- 상해자유무역실험구의 경우 FT계정을 국제금융자산거래소(國際金融資產交易平台)와 국제에너지거래소(國際能源交易所) 등 국제거래 플랫폼 구축과 금융상품 설계에서 활용한 바 있음
- 또한 상해자유무역실험구에서 QDII가 시범 실행되어 연 5만 달러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금융시장 투자가 허용되고 있음

□ 또한 중국 시범도시에는 클라우드펀딩 관련 인프라가 기 존재하거나 한국 공모형 클라우드펀딩 시스템 기능 탑재가 가능해야 함

- 이 조건은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구축의 용이함을 확보하기 위함
- 클라우드펀딩 관련 주요 인프라는 공공기관 운영방식의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중앙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예탁등록기관 등을 의미함
  - 클라우드펀딩 추진 기업의 정보 공개, 투자자의 지분관리 등을 중국법 또는 지방도시 제정 관련법 근거 하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등의 존재 여부가 중요
  - 예를 들어 시점도시 내 지방소속 예탁결제원(Local CSD) 존재 여부
- 현재 일부 중국 지방정부의 신사관 시장에서 사모방식의 클라우드펀딩을 취급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청도시 남해주식거래소와 대련시 대련주식거래소 등

□ 한국 부산과 클라우드펀딩 시범연계 사업을 진행 가능한 후보 도시로 료녕성 대련시와 산둥성 청도시를 추천함

- 대련시의 금보신구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료녕자유무역실험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상해자유무역실험구에서 기존에 실행되었던 자본시장 개방제도의 복제가 가능하며, PBOC에 관련 자본항목 개방사항에 대해 승인요청 시 통과 될 가능성 높음
- 청도시의 경우 재무관리종합개혁실험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해외 자본항목 투자 시범제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며, 중앙정부 및 PBOC에 한국을 우선 시범개방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QDII2 시범제도를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투자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
  - 또는 현재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실행하는 일인당 5만 달러 외환태환

한도를 해외에서의 소비영역 이외에 클라우드펀딩通 자본항목 투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sup>105)</sup>

※ 본 연구팀은 부산시(경제진흥원 포함) 및 KSD 관계자와 대련과 청도 양 도시를 각각 2회에 걸쳐 방문한 바 있으며, 양 도시 모두 부산시와의 클라우드펀딩通 구축사업 추진을 긍정적으로 약속한 바 있음

— 대련시의 금보신구는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구축을 자유무역실험구의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중국 국무원에 직접 건의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전해 왔음<sup>106)</sup>

• 자유무역실험구의 추진정책 승인권은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보유

— 청도시의 경우 공모형 클라우드펀딩의 청도 내 시범실시(중국 CSRC 승인사항)와 부산과의 클라우드펀딩通 실시(중국 외환관리국 승인사항)를 허가 받아 시행하자는 의사를 전해 왔음<sup>107)</sup>

• 청도시는 자유무역실험구가 아닌 관계로 중앙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각각 업무수행 승인을 받아야 함

## 1.2 시범사업 추진방식 제안

□ 한국(부산)과 중국의 시범도시 정부는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을 양국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양국 중앙정부에 제안

— (공식적) 중앙정부의 역할: 한·중 양국 중앙정부는 자국 내 특정 지방을 지정하여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시범도시로 지정해야 함

• (제안1)한·중 양국 정상간 합의 의제에 포함: 현재 이미 실현된 양국 금융협력사업인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청산은행 지정, RQFII 배정, 한국정부의 판다본드 발행 등은 모두 양국 정상간 회담 때 합의되었던 시범사업 의제들임

- (제안2)한·중 지방도시간 FTA협력 사업으로 양국간 FTA 금융부문 후속협약 의제에 포함: 지난 9월 13일,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으로 인천과 상해 등 자유무역 실험구가 있는 도시 대 도시 FTA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그 예로 한국과 중국의 시범도시간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 바 있음<sup>108)</sup>
- (제안3) 한·중 양국 지방정부간 업무 추진 합의 및 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 업무 추진: 실제, 대련의 경우 양 지방정부간 업무추진 관련 先 MOU 및 後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 업무 추진하자는 의견 제시 중

□ (지방정부 역할) 양국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추진하고, 공동연구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

- 한국(부산)과 중국 시범도시간에 공동추진 T/F 설립: 정책단(반드시 관련 금융당국과 정부 담당부서 책임자)과 연구단(한·중 양 지방도시 실무 추진팀)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필요<sup>109)</sup>
- 추후 한·중 양 지방도시간 금융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중금융연구원 합자 설립도 검토할 필요성 있음<sup>110)</sup>

## 2. 시범사업 추진 관련 한·중 공동 연구과제

□ 중국의 공모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중국의 경우 현재 증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 예정인 공모형 크라우드펀딩의 체계를 한국형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게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중국 시범도시의 크라우드펀딩 조기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전략중 하나로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을 시범실행할 것에 관한 공동 연구

- 현재는 불가능한 중국투자자가 해외 비상장기업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을 시범실행할 것에 관한 연구
-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클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중국 비상장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것도 이와 동일
  - 이 경우 기존 개별 자본시장 시범개방 프로그램(QFII, RQFII, QDII, RQDII 등)의 적격투자자의 해외 비상장기업 투자 적용 확대와 CSD연결 중심의 클라우드펀딩通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개통 이후 추가적으로 추진 가능 시범사업 및 활성화 대책도 공동연구 대상임

- (수요확충) 이를 위한 투자자 제한 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연구해 볼 수 있음
  - 한국과 중국의 투자자 제한조건을 표준화 시키고
  - 클라우드펀딩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연간 3,000만원까지는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 클라우드펀딩 업체 투자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 세금공제 혜택제공도 검토해 볼 수 있음(현재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클라우드펀딩 투자자에 한해서만 세금공제 혜택 부여)
  - 다음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조합, 사모펀드 등의 전문투자자가 리딩투자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함
- (공급확충) 우수한 기술 혹은 IP를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들의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중개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 광고허용, 상장혜택 부여 등에 대해 연구
  - 즉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을 통해 조달에 성공할 경우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특례 제공 등 가능여부에 대해 연구해 볼 수 있음

### 【참고】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특례상장 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투자유치	▪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 20%이상의 지분 보유
기술력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일정 수준 이상 기술등급 부여
투자자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투자자가 특례상장 및 지분매각 제한에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자문인 선정 이전에 보유 지분 80%이상 매각 금지</li> <li>- 상장 후 최초 6개월간 지분매각 금지. 6개월 경과 시 1개월 당 보유지분의 10%이내에서 매각</li> </ul> </li> </ul>

- 또한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대상기업으로 양 국가의 전략적 육성산업이나 사회적 기업 및 한·중 양국 수요가 큰 기술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시행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

— (투자자보호) 자기책임하의 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소액전용투자계좌 개설시 클라우드펀딩 시장제도 및 투자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개인의 투자성향을 평가하여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닌 경우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조치도 마련할 필요

-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기업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며, 자금조달 창업기업 및 관련 산업전망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 □ 한·중 온라인투자중개플랫폼 IR자료 번역의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

— 발행기업의 공시자료를 상대방 국가언어로 정확하게 공시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자료번역의 오류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 시 법적인 책임소재 규명이 중요함

##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운영 효율성 확보 연구

- 외국인인 한국 클라우드펀딩 투자 시 외국인 투자등록, 상임대리인 및 보관기관 선임, 증권투자전용 자금계좌 개설 등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 투입 필요
  - 이는 클라우드펀딩 투자한도(한국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연간 1천만원)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절차와 비용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클라우드펀딩 시장 진입 저해 요소로 작용
- 따라서 양국 예탁결제원 연계 방식인 클라우드펀딩通(부산과 중국 지방정부간 시범사업)을 이용해서 투자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이를 위해 중국인이 한국 중소기업의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 및 증권투자전용 자금계좌 개설 면제 또는 예외 대상에 포함하여 거래비용 절감을 도모할 필요(금융투자업 규정 및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 사항)
  - 금융투자업 규정: 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 ③항 3호에는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고, 동 계좌를 이용하여 국제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 예외로 규정. 이와 같이 외국인이 자국의 예탁결제원 명의로 투자등록하고 동 계좌를 이용하여 클라우드펀딩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 예외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필요함
  - 외국환거래 규정: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①항 단서조항에는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여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 이와 같이 외국의 예탁결제원이 한국의 예탁결제원과 상호 업무협조관계를 맺고(한중 클라우드펀딩通)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의 예탁결제원 명의로 투자전용계정을 개설,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 필요. 또한 동조 제4항 5호(국제예탁결제기구 통합계좌에서 외국인 투자자 본인 명의 투자전용비거주 자원화계정으로 예치), 동조 제5항 6호(외국인투자자 본인 명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국제예탁결제기구 통합계좌로 이체)와 유사한 조항도 필요
  - 기타 이와 유사한 조항들의 개정이 필요

- 정식 시범시행 성공이후 조건이 성숙될 경우 양국 클라우드펀딩 지분 유통을 위한 장외시장 연결도 공동연구 과제 임
  - KSM 등 한국의 전용시장과 중국 시범도시간의 장외 사모증권시장 간 연계(즉 후강통과 선강통 비슷한 개념으로 혁신기업 전용 유통 시장 연계)방안을 고민할 필요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실행은 한·중 양 지방정부간 합작프로젝트로 양국의 외환관리제도와 관련되는 정책성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어 세밀하고 고도의 전문화된 운영설계를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리스크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겠지만
  - 프로젝트 실제 성공적으로 시작된 이후의 활성화도 고민해서 설계해야 함

### 3. 부산시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검토 과제

- (부산시) 부산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설립 선택 과제
  - 현존하는 한국 내 클라우드펀딩업체 중 리딩업체를 부산에 유치하면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의 운영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
    - 문제는 어느 한 특정업체를 지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 업계 불만을 초래할 수 있고
    - 다른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어 공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대안으로 한·중 합작 온라인소액투자중개회사 설립을 추천
    - 예를 들어 한국 부산시와 중국의 시범도시 정부가 공동으로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설립해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음

- 이는 설립의 어려움 그리고 설립 후 영업력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시행착오 등의 난제가 예상되나, 기 기술한 것과 같이 중국 발행회사 정보의 정확성 확보, 한·중 공동시범사업이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작회사 설립이 적정해 보임

□ (부산시) 한·중 합작 온라인소액투자중개회사의 클라우드펀딩 비즈니스모델 정립

- 현재 한국 클라우드펀딩업계는 일부 소수에 의한 (자연적)과점형태이고, 규모도 400억이 조금 넘는 영세한 상황 하에서 한·중 합작 온라인소액투자중개회사의 등장은 자칫 동종 업계의 위협요인으로 비칠 수 있음
- 따라서 한·중 합작 온라인소액투자중개회사는 중국물(In-Bound), 즉 중국발행회사의 클라우드펀딩을 한국에 광고하는 역할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한국물(Out-Bound), 즉 한국발행회사의 클라우드펀딩 광고를 중국 클라우드펀딩플랫폼에 전달해 주는 기능도 담당하되, 이의 역할을 수익모델로 삼지 말고 국내 클라우드펀딩시장 외연확대를 위한 인프라 제공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
  - 이렇게 되면 부산은 한국을 커버하는 “중소혁신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클라우드펀딩 허브”로서의 새로운 입지(금융도시 브랜드)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또한 부산시의 기존 중소기업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함
  - 예를 들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센탐(CENTAP)<sup>111</sup>) 프로그램을 한중 클라우드펀딩<sup>112</sup>과 연계하는 방안<sup>112</sup>과, 지역 내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프로그램 같은 정책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선도 리딩투자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

□ (한국예탁결제원) 한중 클라우드펀딩<sup>113</sup> 연계 공적사업 역할 수행

- **한·중 클라우드펀딩 플랫폼간 Network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즉 한국 내 기존 클라우드펀딩 회사들의 매물들을 예탁된 Network을 통해 중국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한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회사는 관련 IT 설비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표준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관련 정책자금 매칭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의 정식 명칭 제정도 고려해야 할 시점**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衆籌通) 명칭은 사업추진 목적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팀이 기능적 관점에서 임시로 만든 것임
- ‘중소혁신기업 자금통(Innovation Firm Funding Market Connection, IFFMC)’과 같은 시범사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명칭을 고려하거나, 후강통처럼 부산과 중국 시범도시 약칭을 인용하는 상징적 명칭(예를 들어 부칭통(釜靑通), 부산과 청도간 시장연계)을 고려해 볼 필요

#### **4.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활성화 응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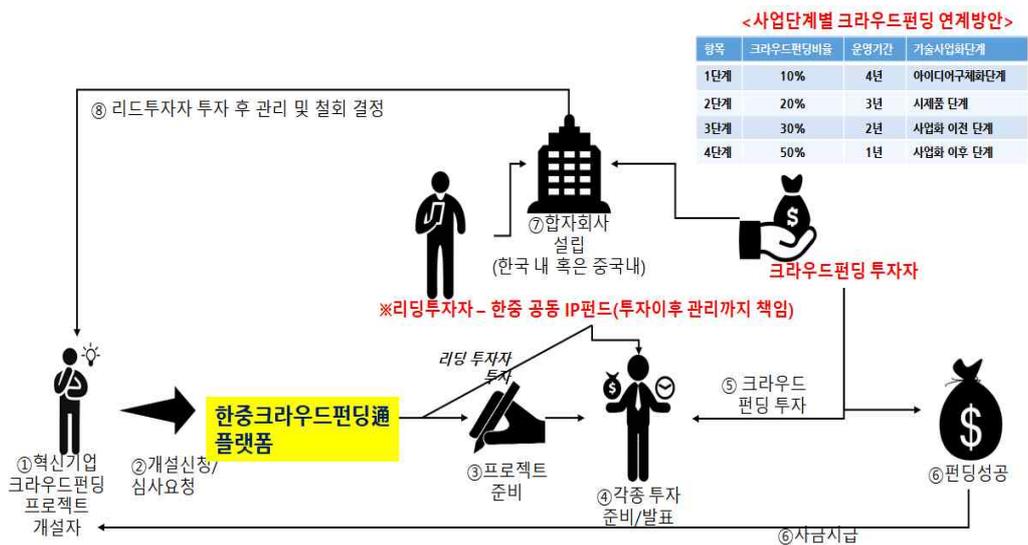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을 활용하여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산업(4차산업 기술분야 등)에 있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활용 할 수 있음
  - 즉 초기 창업기업의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단계별 클라우드펀딩 연계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그림 24] 참조)
  -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 프로그램 운영방식처럼 정부가 인정한 엔젤투자자나 투자기관을 리딩투자자로서 선 투자하게 함

- 여기서 리딩투자자는 특정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중국기관이나 국내기관 모두 가능
- 필요할 경우 리딩투자자는 창업기업과 한국 내 혹은 중국내 합자회사 설립도 가능함

— 다음 리딩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크라우드펀딩通에서 펀딩을 진행하게 함

- 1단계 초기창업 기업의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비율을 10%로 제한할 수 있으며,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CENTAP 운영에 배정된 정책자금을 활용<sup>113)</sup>할 수 있음(혹은 이들 기업들을 전문 지원하는 별도의 모험자본 정책펀드자금을 설정할 수 있음)
- 2단계 초기창업 기업의 시제품 단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 비율을 20%, 3단계인 사업화 이전단계에서는 30%, 마지막 4단계인 사업화 이후 단계에서는 50%까지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음

[그림 24]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산업의 창업기업에 대한 한중 크라우드펀딩通 활용방안



- 위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의 정책펀드 자금을 검증된 전략적 산업에 있는 창업기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리딩투자자의 참여로 창업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어 더욱 많은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음
  - 이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조치임

## 5. 현행 법규 내에서 단기 추진 가능성 검토

- [韓中 크라우드펀딩通 구축 필요·충분조건] 한중 양국의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부산과 중국지방도시 관계자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의 합의가 있어야 추진될 것임
  - 본 업무에 대한 양국 정부의 승인
  - 중국의 공모·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 양국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양국 투자자 보호장치와 부합 등
  - 기타 효율적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
-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경우 사모형 크라우드펀딩으로만 참여 가능한 상황이기에 청도시의 경우 현행 법규 내에서 추진 방안을 고민 중임
- 따라서 현행 법규 내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임
- 이를 감안하여 현재 존재하는 제약사항들이 극복 가능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체크하고자 함

## □ 중국의 공모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대안마련

- 중국의 경우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모로 취급하지만 한국은 50명 이상임
- 따라서 한중 크라우드펀딩通 설계 시 취급대상을 한국은 불특정 집단 50명이상인 공모형으로, 중국은 특정집단을 상대로 하는 200명 이하 사모형으로 하면 중국의 공모형 부재를 극복 가능함

## □ 중국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가능성 검토

- 한중 크라우드펀딩通 시범사업에서 양국 투자자들의 발행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가능해야 하지만, 중국의 경우 개인의 해외투자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임
- 료녕성 대련시 금보신구와 같은 자유무역실험구로 지정된 지역일 경우 상해자유무역실험구에서 추진되었던 QDII2 시범제도 복제를 통해 추진가능하며 개인당 연 5만달러 이내에서 FT계정을 통해 해외 자본항목 투자가 허용됨
- 그러나 「금융업발전과 개혁 '12차 5개년 계획」에 의하면 개인의 외환사용 자주권을 확대하고 개인의 자본항목 아래에서의 해외투자를 개방한다는 내용이 있음
- 따라서 규모가 작고 리스크가 통제된 범위 내에서 외환관리국(SAFE)의 해외투자 허용이 시범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개인당 연 5만달러 외환태환한도 허용 범위 내에서 한중 크라우드펀딩通 개인투자자의 연 투자한도를 2만달러로 설정하여 시범도시에 있는 중국 개인투자자들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허용할 것에 대해 중국인민은행 외환관리국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올해 1월 SAFE는 Bank of America(BOA) 중국법인의 중국개인들을 위한 해외주식투자 전용계좌를 허용한 바

있음

#### □ 양국 투자자 보호장치와 관련하여

- 현재 중국의 사모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일정소득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적격투자자에 한해서만 투자 가능함
- 한중 크라우드펀딩通의 경우 발행기업의 공시자료를 상대방 국가 언어로 번역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번역오류에 따른 책임문제가 따름
- 기업상장의 경우 상장규모가 크고 중개기관들의 이익공간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외기업을 한국 국내에 상장 시 보통 중개기관들이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며,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도 국내 기업의 상장에 비해 높게 책정됨
-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규모가 작고 플랫폼 업체의 수익이 영세하기 때문에 번역 등 작업에 따른 리스크를 중개플랫폼이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 중국의 경우 사모로 참여하고 한국이 공모로 참여가 될 경우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공시자료 정확성에 대한 법적책임문제가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 대안으로 일정자격을 가진 적격투자자에 한해서만 참여가능하도록 하고, 번역 오류 등과 같은 리스크도 부담가능한 적격투자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은 또한 발행인의 금지행위, 적격투자자 요건 및 온라인 플랫폼의 인가요건 등을 규정함
  - 특히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온라인 대출 플랫폼과 동시에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 중개기관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주요업무와 금지행위를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였지만
  - 플랫폼 자체의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sup>114)</sup>

## VI. 기대효과

### [요약]

- 한·중 양국은 모두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에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은 양국 국민에게 양국의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 양국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시장의 국제화로 창업 및 운영자금 마련과 상호 마케팅 기회 확대, 양국 국민의 투자 기회 다변화, 양국 자본시장 국제화 확대와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양국 시범도시의 국제금융허브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1. 투자자측면

- 한·중 클라우드펀딩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인의 중국 내 클라우드펀딩 시장 투자 및 중국인의 해외(한국) 클라우드펀딩 시장 투자가 시범적으로 가능하여 양국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모험 자본 투자기회 제공
  - 양국 투자자는 각각 한·중 양국 잠재력이 높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기회가 마련되어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에게 추가 벤처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해외 선도산업과 우수 기술기업 투자를 원하는 중국 민간자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시장신뢰 제고에 따른 투자자 저변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시장을 통한 위험분산 투자가 가능하게 됨
  - 클라우드펀딩은 적은 돈으로 큰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기법으로서 고위험·고수익 투자에 속하기에 위험분산이 중요하며

- 양국 투자자는 상대방 국가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제 분산투자가 가능하게 됨

□ 투자자금 회수경로 다변화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수요기반이 확충되고 상장이 활성화되면,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주식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 특히,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특례상장을 허용함으로써 벤처투자자금의 조기 회수를 지원하여
- 궁극적으로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구조 정착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가능하게 됨
- 중국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에게는 투자회수 시장이 마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중 크라우드펀딩通 중국 투자자들은 투자기업의 한국 KSM 시장 및 코넥스 상장, 나아가 코스닥 상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후속투자⇒KSM⇒ 코넥스⇒코스닥 상장에 이르는 투자회수 제도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음

## 2. 기업측면

□ 한·중 양국 혁신기업이 한중 크라우드펀딩通을 통해 용자에 성공할 경우 국제적 지명도와 브랜드 가치 상승 및 홍보와 입소문 효과가 기대되며 국제 시장 진출이 용이해짐

- 한중 크라우드펀딩通 플랫폼에 등록된 한국기업의 경우 국내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음

- 특히 반도체, 화장품, 문화콘텐츠, 해양, 의료, 제약, 바이오, 패션, 교육, 영유아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한국 브랜드 중소기업의 시장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중국 시장개척이 더 용이해질 것임
  - 중국 크라우드펀딩通 투자자가 해당 브랜드의 소비자이면서 홍보 및 중국 진출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임
- 또한 중국 중소기업들의 경우 해외 기관투자자의 자본투자를 받을 수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이 가능할 뿐더러, 강화된 신용으로 해외 자본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될 것임

□ 한·중 양국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통한 IP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 후 생존, 지속성장과 성공 가능성을 높임

- 특히 한국 국내 벤처금융이 부족한 상황을 보완할 수 있어 IP와 기술력 있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용자기능 확대가 기대되며
- 한국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회사의 경우 협소한 국내 크라우드펀딩 영업망을 중국까지 확대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임

### 3. 지방정부측면

□ 한·중 크라우드펀딩 시장연계는 FinTech 영역에서의 자본시장 국제금융협력 시범사업으로 선도적인 의미가 있을 뿐더러 중앙정부로부터 시범정책 실행 혜택 가능함

- 부산시와 중국 시범도시는 한·중 양국에서 금융도시(부산)와 크라우드펀딩 시범도시라는 특화(=차별화)된 기능과 위상 확보 가능
  - 중국 지방도시의 경우 공모형 크라우드펀딩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는 선점효과가 있음

- 특히 대련시의 경우 동북3성 금융허브도시라는 목표설정과 일치하며, 대련의 금보신구는 클라우드펀딩 시장 시범개방을 실현하여 차별화된 자유무역실험구 개방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sup>115)</sup>

— 나아가 양국 시범도시는 국제금융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환경마련이 가능해짐

- 만약 성사되면 한·중 양 시범도시 주민들과 기업들이 양국에서 자유롭게 자국의 통화로 서로 투자하고 무역하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될 것임

— 또한 한·중 양국의 지방도시간 시범사업으로 성공할 경우 다른 국가와 다른 도시와의 시범사업으로 확대 가능함

— 중국의 경우 장의시장영역의 미개방된 자본항목을 개방하는 효과가 있음

- 공모형 클라우드펀딩은 일인당 투자규모 제한 있어 민간자본의 해외 유출 걱정도 없을 뿐더러 감독관리가 용이해짐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을 통해 기술중심 스타트업 등 유망기술기업 IP활용 역량 보강 및 사업화 자금 확보 기회가 확대되어 정부 재정지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R&D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음**

—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IP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R&D성과 출구(EXIT)시장 확대와 IP창출, 보호,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 강화가 가능해질 것임

— 특히 국내 유망기술기업의 글로벌 IP금융시장 활용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마켓 진출 및 성공역량 제고가 기대됨

- 우선적으로 4차산업 분야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IP금융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곧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의 투자가 증가되어 자연스럽게 고용이 확대되고 가계 소득이 증대되는 선순환이 형성될 것이며, 사회적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한국 혁신기업들의 경우 중국 자본의 투자로 중국시장 진출 길이 열려 정부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일자리·금융시장·고부가가치 제조업 활성화 촉진이 가능할 것임
- 문제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으로 활용가능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의 결제통화를 양국 통화가 모두 가능하게 설계함으로써** 한국의 위안화 허브 구축도 성장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원화 국제화도 가능해짐**

- 현재 원화가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하다는 제한이 존재(비거주인 한국 역외에서 원화 사용 불가)하나, 한중 클라우드펀딩通을 통한 중국투자자의 원화 사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원화 국제화 사용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음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김보경, 2015, IT벤처기업의 Death Valley 극복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 김영재·박은엽, 2016, 부산금융중심지 구축현황과 정책제안, p.11, p.202
- 노은영, 국정훈, 2016, 중국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제66권, p.251, 한국외국어대학교
- 성희활, 2013,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p.397
- 자본시장연구원, 2016, 판다본드 급증배경 및 전망,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 최생림, 1994, 國際金融센터의 條件, 『금융동향』, 제8권 1호, 한국금융연구원, p.105-132
- 한재진,천용찬, 2014, 위안화 국제화 평가와 시사점, 『경제주평』, 14-27 (통권 제598호), 현대경제연구원
- 한재진,정민, 2015, 위안화 국제화 정책 점검과 시사점, 『VIP 리포트』, 15-26 (통권 제623호), 현대경제연구원
- 한재진,천용찬,정민, 2016, 위안화 국제화 여건 점검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6-39호, 현대경제연구원
- 안유화, 2012,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와 한국의 대응, 자본시장연구원
- \_\_\_\_\_, 2013, 중국 채권시장 현황과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전략, 자본시장연구원
- \_\_\_\_\_, 2014, 위안화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 『자본시장 Weekly』 제5호, 자본시장연구원

\_\_\_\_\_, 이규엽, 2017,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한·중 FTA체결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 방안 연구, 한국예탁결제원, P.45-51

이창영, 2012, 중국발 세계 금융시장 지각 변동 예고, 『친디아』, 4월호, 포스코

이현태, 김준영, AIIB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IEP, p.11-13

임호열, 이현태, 김홍원, 김준영, 오윤미, 최필수, 2017, 중국주도의 신금융 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KIEP, p.153

#### [국외문헌]

李愛君, 2016, 『互聯網金融法律與實務』, 機械工業出版社, p.70, p.86

呂金蓬, 2015,我國股權衆籌平台的法律風險及對策, 『經濟與法』 7期(上), p.111

馬永保, 2015,股權衆籌市場准入條件的多視角分析, 『現代經濟探討』 10期, p.50

潘旭濤, 2017, “一帶一路”持續升溫：各國加速戰略對接,人民日報海外版, 4月10日新聞稿

曲鳳杰, 2017, 构建“一帶一路”下的人民幣國際化路線圖, 《當代金融家》 8月刊

張廖冬灵, 2015, 人民幣加入SDR對中國經濟的利弊分析, 《中國總會計師》, 總149期, P.36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調查統計司課題組), 2012, 우리나라의 자본항목 개방의 조건이 기본 성숙되다(我國加快資本賬戶開放的條件基本成熟), 중국금융(中國金融), 제5기

홍콩거래소, SHANGHAI CONNECT SHENZHEN CONNECT INFORMATION BOOK FOR INVESTORS

중국인민은행, 2016, 「보혜금융 발전 추진을 위한 기획(推進普惠金融發展規劃(2016-2020年))」

Whitbeck, Britton, 2012, The JOBS Act of 2012: The Struggle Between

Capital Formation and Investor Protections, <http://ssrn.com/abstract=2149744>.Securities Regulation, Wolters Kluwer

World Bank, 2013, Crowd funding's Potential for the Developing World, P.42

### [사이트]

KSM <http://ksm.krx.co.kr/contents/02/020100/list>

KOTRA <http://www.kotra.or.kr>

금융위원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blogfsc/220179908049>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cop/main.do>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부산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smba.go.kr>

부산경제진흥원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bepa\\_sns/221045937624](http://blog.naver.com/bepa_sns/221045937624)

팁스(TIPS) 홈페이지 <http://www.jointips.or.kr>

중국전문가포럼 CSF <http://csf.kiep.go.kr>

중국 기관간 시장 <http://www.interotc.com/main/index.co>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xinwen>

중국 바이두 <http://www.baidu.com/>

중국 상해에너지거래소 <http://www.ine.cn/>

중국 허우쑤 <http://www.hexun.com/>

중국 대련시 정부 홈페이지 <http://ko.dl.gov.cn/>

중국 청도시 정부 홈페이지 <http://www.qingdao.gov.cn/>

주 청도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chn-qingdao.mofa.go.kr>

일대일로 정부 사이트 <https://www.yidaiyilu.gov.cn>

웨이양왕(未央网), <http://www.weiyangx.com/252174.html>

### [조사방문기관]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금융실

청도시 금융판공실

청도시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CSRC)

청도시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청도시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CIRC)

청도남해(藍海)주식거래소

대련시 금융판공실

대련시금보신구덕태(德泰)지주회사

런런투(人人投)

샤오미클라우드(米籌金服)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한국예탁결제원(KSD) 중소기업부 클라우드펀딩팀

## <부록>

### [자료1] 비거주 외국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절차

#### 1. 개요

-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크라우드펀딩에 따른 의무보유예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크라우드펀딩 투자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일반투자자, 소득요건구비투자자, 전문투자자 포함

-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자는 자본시장법(§117의10⑦)에 따라 취득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1년간 보유하기 위하여 의무보유예탁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 투자자는 의무보유예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 개설이 필요(증권등예탁업무규정 §26의2)

#### 2. 세부 투자절차

- ①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외국인은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상임대리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증권회사와 상임대리인계약 체결(증권사인 중개업자가 상임대리인 서비스 제공 가능)

상임대리인 서비스는 증권사인 중개업자가 제공하고, 외국인계좌개설은 의무보유예탁서비스가 가능한 타증권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중개업자인 증권사) 금감원 투자등록, 외국인 회원가입, 타증권사 증권계좌 개설신청, 청약신청, 청약대금 송금신청 담당

※ (계좌개설 증권사) 위탁계좌 개설, 청약대금(외화) 수취, 청약대금

환전, 청약대금 송금, 증권 보관 담당

※ (클라우드펀딩 관련 증권회사의 상임대리인 서비스) 일반 서비스 : 투자등록, 계좌등록, 주문집행, 배당금·이자 수령 등 / 클라우드펀딩 서비스 : 일반 서비스 + 온라인중개업자 회원가입, 클라우드펀딩 청약 및 증거금 이체 등

②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 상임대리인은 외국인을 대리하여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투자등록증(IRC) 발급 신청

※ (상임대리인을 통한 투자등록 신청서류) 개인 : 투자등록신청서, 현지 공증 여권사본, 상임대리인 계약서 사본 / 법인 : 투자등록신청서, 현지 공증 법인설립증명서(COI) 사본, 상임대리인 계약서 사본

③ 증권회사 매매거래계좌 개설

- 상임대리인은 클라우드펀딩에 따른 의무보유예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외국인계좌개설이 가능한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 개설(금투업규정 §6-14)
- 증권회사는 외국인의 원화증권 취득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증권회사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 개설(외국환거래규정 §7-38)

※ (타사 상임대리인 비거주외국인 계좌개설 징구서류) 외국인 : 투자등록증, 상임대리인 계약서 사본, 여권 사본(개인), 현지 공증 법인설립증명서(COI) 사본(법인) → 상임대리인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상임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사원증 앞뒤 복사, 법인인감도장 및 사용인감

④ 온라인중개업자 회원가입: 상임대리인은 외국인을 대리하여 중개업자에 회원가입

- 상임대리인은 회원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중개업자에 제출

⑤ 크라우드펀딩 청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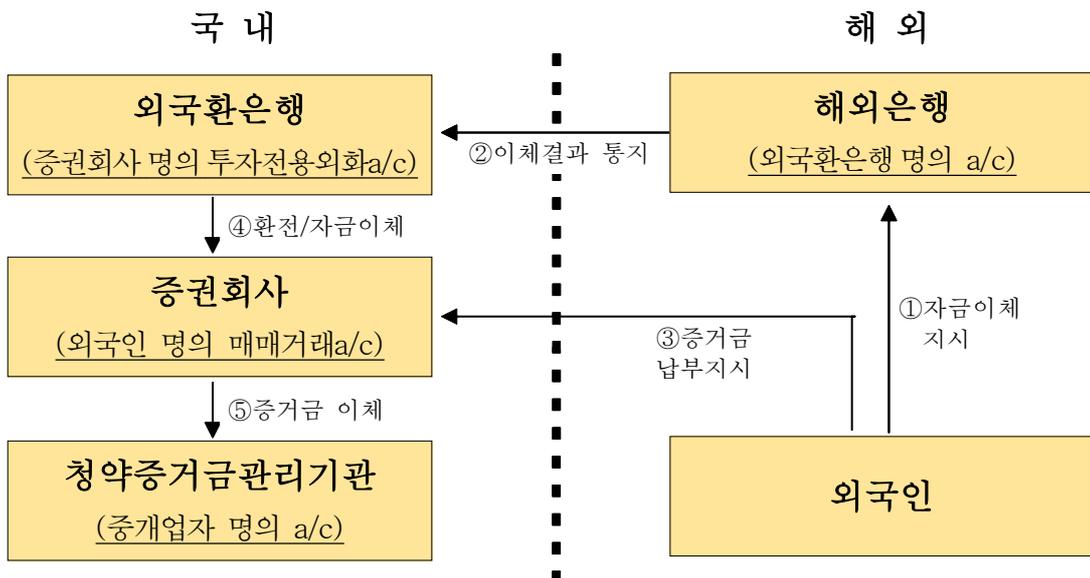
-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내역을 입력
- 외국인이 소득요건투자자, 전문투자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업로드

⑥ 청약증거금 입금

- 외국인은 해외은행에 증권회사 명의 외국환은행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 자금이체 지시
- 외국인은 증권회사에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할 것을 지시
- 증권회사는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환전한 후 외국인 명의 매매거래계좌로 이체\*하고 중개업자 명의 청약증거금관리기관 계좌로 이체

\* 외국인이 외국환은행에 외국인 명의 원화계정이 있을 경우 해외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증권회사에 있는 외국인 명의 매매거래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음

[그림] 청약증거금 입금 처리 절차



⑦ 증권 수령 및 전매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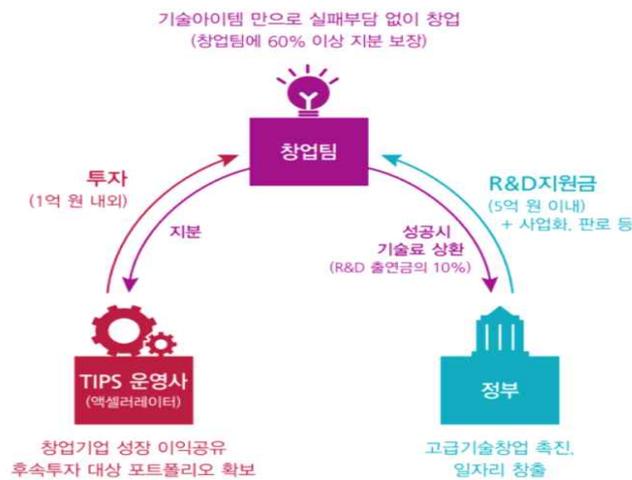
- 외국인은 증권 교부일에 외국인 명의 증권회사 매매거래계좌로 배정 받은 증권을 수령
- 외국인은 증권 교부일부터 1년간 수령한 증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자료2] 팁스[TIPS] 프로그램 제도

□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이스라엘식)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임.
- 운영구조

[그림] TIPS운영구조



자료출처 : TIPS홈페이지

- 정부 : TIPS프로그램을 통해 고급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  
·국민의 예산을 바르게 사용가능
- TIPS 운영사 : 엔젤투자를 보유하고 창업팀 보유역량을 갖춘 엑셀러레이터·창업팀을 발굴하여 TIPS프로그램에 참여시킴
- 창업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TIPS프로그램의 목적 및 지원 정책

- 창업도전의 활성화  
TIPS프로그램은 창업자금 부족 및 낮은 기술창업 성공률 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한 고급기술인력의 기술창업 도전을 활성화하고자 함
- 엔젤투자사의 투자 및 인큐베이팅  
성공한 벤처기업인의 엔젤투자, 보육능력이 검증된 전문인력의 멘토링으로 성공가능성을 향상 시킴
- 보육공간과 정부R&D 및 추가지원 연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창업팀에 보육공간 제공, 운영사의 단계별 엔젤투자에 매칭방식으로 창업팀당 최장 3년간 투자 1억원, R&D 5억원 및 추가투자 4억원 지원함<sup>116)</sup>

[표] TIPS 지원현황

구분	보육기간	창업사업화자금 엔젤투자금 (운영사)	기술개발자금(R&D)			추가 연계사업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창업팀 (1팀 기준)	2~3년	1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20%이상)	최대 5억원	민간부담금 의 50%이상	해당금액	-창업자금 연계지원 1억원 -엔젤매칭펀드 2억원 -해외마케팅 1억원
			기술개발자금 의 80%이내	기술개발자금의 20%이 상		

출처 : TIPS홈페이지

— 정부지원금 현황

- 2016년 540억원이었으나 2017년 750억원으로 확대 됨.
- 2017년 200개 창업기업 육성, 2018년 240개 기업 육성 목표

— 프로그램 성공여부 판단

- 아래의 조건 중 1개 충족 시 성공항목으로 지정 됨  
1) 후속투자 유치 2) 인수합병 3) 해외진출 4) 일자리 창출

- 실패 시, 창업자의 성실성을 검증 해 성실했다고 판단 될 시 불이익 면제, 새로운 창업 도전이 가능함. 단, 운영사에게 사업권 또는 기업추천 할당을 줄여 패널티를 부과함

— 성공사례

- FinTech \_ 벨런스히어로  
인도 모바일 선불제 사용자들이 앱을 통해 통신사와 연동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서비스 제공  
인도 앱 다운로드 : 3천만명  
후속투자 : 180억원  
신규고용 : 70명(한국 40명, 인도 30명)  
특허 : 3건
- 의료바이오 \_ 이오플로우  
전기삼투방식의 패치형 약물주입기 개발  
후속투자 : 80억원  
신규고용 : 19명  
해외진출 : 미국, 유럽 등 NDA체결

□ 해외클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개발(R&D) 지원제도

— 2017년 2월, 중소기업청이 해외 클라우드펀딩의 성공을 통해 시장 성과 성장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클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개발(R&D) 지원 제도를 신설함

— 참여조건

- 해외에서 5,000만원 이상 클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

— 지원 정책

- (펀딩등록 지원 단계)  
해외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 소요 비용 : 영상제작비, 영문번역비, 마케팅비를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 (해외 클라우드펀딩 성공)  
최대 2억원 이내의 R&D 자금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최대 1년)

- (해외 크라우드펀딩 성공)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펀딩 금액의 1:2 비율로 최대 2억원의 매칭투자  
수혜 가능

— 문제점

- 해외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킥스타터의 경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아님(제품, 서비스 위주)
- 투자한도와 펀딩 시 본인실명인증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전세계 어디서나 투자가 가능함. 이는 100%국내 후원자만으로도 해외에서 펀딩을 성공한 것처럼 지원조건을 충족 할 수 있음
- 해외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지원보다는 한국 내 크라우드펀딩 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문제점에 대한 제안

- 정부가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자료3]

# 사모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용자관리방법(시행)(의견수렴안)

私募股權眾籌融資管理辦法(試行)征求意见稿)

## 제 1장 총칙

### 第一章 總則

제 1조[목적] 사모펀드 크라우드펀딩 용자 업무를 규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모펀드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금융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증권법>·<회사법>·<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국가 발[2014]17호) 등의 법률 법규와 부분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함.

第一條 【宗旨】 爲規範私募股權眾籌融資業務，保護投資者合法權益，促進私募股權眾籌行業健康發展，防范金融風險，根據《證券法》、《公司法》、《關於進一步促進資本市場健康發展的若干意見》（國發[2014]17號）等法律法規和部門規章，制定本辦法。

제 2조[사용범위] 본 방법인 소위 사모펀드 크라우드펀딩 용자는 용자자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용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이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비공개 발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증권형용자활동을 가리킴.

第二條 【適用範圍】 本辦法所稱私募股權眾籌融資是指融資者通過股權眾籌融資互聯網平台（以下簡稱股權眾籌平台）以非公開發行方式進行的股權融資活動。

제 3조[기본원칙] 사모펀딩 크라우드펀딩 용자는 진실함, 신용, 자원, 공평의 원칙을 따르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용자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음.

第三條 【基本原則】 私募股權眾籌融資應當遵循誠實、守信、自願、公平的原則，保護投資者合法權益，尊重融資者知識產權，不得損害國家利益和社會公共利益。

제 4조[관리체제안배]중국증권업협회(이하, 약칭 증권업협회)는 관련된 법률 법규와 본 방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용자업에 대해 자치 규율 관리를 진행함. 증권업협회는 중국 증권 자본시장 감시 중심 유학 책임 회사(이하, 약칭 시장감시중심)에 위탁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용자업무 등록과 후속 감시에 대해 일상적인 관리를 진행함.

第四條 【管理机制安排】中國証券業協會（以下簡稱証券業協會）依照有關法律法規及本辦法對股權衆籌融資行業進行自律管理。証券業協會委托中証資本市場監測中心有限責任公司（以下簡稱市場監測中心）對股權衆籌融資業務備案和後續監測進行日常管理。

## 제2장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第二章 股權衆籌平台

제 5조[플랫폼정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인터넷 플랫폼(인터넷 사이트 혹은 기타 비슷한 종류의 전자매개)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용자에 투자한 쌍방을 위하여 정보발표, 수요연결, 협조자금 대체 조달 등 관련 서비스의 중개기구임.

第五條 【平台定義】股權衆籌平台是指通過互聯網平台（互聯網網站或其他類似電子媒介）為股權衆籌投融資雙方提供信息發布、需求對接、協助資金划轉等相關服務的中介機構。

제6조[등록등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응당 증권업협회에 등록 등기 해야 하며, 증권업협회회원으로 신청해야 함.

증권업협회는 증권형 크라우드 플랫폼을 위해 등록 등기를 처리하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해 내부단속 수준, 지속적인 법 준수 상황의 인가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고객 자금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아니함.

第六條 【備案登記】股權衆籌平台應當在証券業協會備案登記，并申請成為証券業協會會員。

証券業協會為股權衆籌平台辦理備案登記不構成對股權衆籌平台內控水平、持續合規情況的認可，不作為對客戶資金安全的保證。

제7조[플랫폼진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응당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第七條 【平台准入】股權眾籌平台應當具備下列條件：

(1)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회사 혹은 합자회사;

(一) 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依法設立的公司或合伙企業；

(2) 순자산 위안화 500만 위안 이상;

(二) 淨資產不低於500萬元人民幣；

(3) 사모 펀드 크라우드펀딩 용자를 전개하는 것과 부응하는 일을 하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함, 2년 이상의 금융 혹은 정보기술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고급 관리 인력이 적어도 2명 이상 있어야 함;

(三) 有與開展私募股權眾籌融資相適應的專業人員，具有3年以上金融或者信息技術行業從業經歷的高級管理人員不少於2人；

(4) 합법적인 인터넷 플랫폼과 기타 기술시설이 있어야 함;

(四) 有合法的互聯網平台及其他技術設施；

(5) 완벽한 업무 관리 제도가 있어야 함;

(五) 有完善的業務管理制度；

(6) 증권업협회규정의 기타 조건.

(六) 證券業協會規定的其他條件。

제8조[플랫폼직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응당 이하의 직책을 이행해야 함;

第八條 【平台職責】股權眾籌平台應當履行下列職責：

(1) 근면히 책임을 다해야 함, 용자에 투자한 쌍방이 법에 의거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크라우드펀딩 용자활동을 전개하고, 약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함;

(一) 勤勉盡責，督促投融資雙方依法合規開展眾籌融資活動、履行約定義務；

(2) 용자에 투자한 쌍방에 대해 실명 인증을 진행하며, 사용자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二) 對投融资双方進行實名認證，對用戶信息的真實性進行必要審核；

(3) 용자 항목의 합법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三) 對融資項目的合法性進行必要審核；

(4) 사기행위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사기 행위 혹은 기타 투자자의 이익이 손해를 보는 정황을 발견할 시, 곧바로 공고 해야 하며, 관련 있는 크라우드펀딩 활동을 중지해야 함;

(四) 採取措施防范欺詐行爲，發現欺詐行爲或其他損害投資者利益的情形，及時公告并終止相關衆籌活動；

(5) 모집기간의 자금에 대해 전문적인 사용자 관리를 설립해야 하며, 증권업협회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규정함;

(五) 對募集期資金設立專戶管理，証券業協會另有規定的，從其規定；

(6) 용자에 투자한 쌍방에 대한 정보, 용자기록과 투자자 적정성 관리 등 정보와 그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나무랄 데 없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기간은 10년으로 함;

(六) 對投融资双方的信息、融資記錄及投資者适当性管理等信息及其他相關資料進行妥善保管，保管期限不得少于10年；

(7) 크라우드펀딩 용자 지식의 보급과 위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투자자와 투자리스크제시서를 체결 해야 하며, 투자자가 충분히 투자리스크를 숙지하도록 해야 함.

(七) 持續開展衆籌融資知識普及和風險教育活動，并与投資者簽訂投資風險揭示書，確保投資者充分知悉投資風險；

(8) 증권산업협회의 요구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용자업무 정보 보고서를 상부에 올려야 함;

(八) 按照証券業協會的要求報送股權衆籌融資業務信息；

(9) 상업기밀과 고객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법률로 제정하지 않음을 이유로 들어 용자자와 투자자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九) 保守商業秘密和客戶隱私，非因法定原因不得泄露融資者和投資者相關信息；

(10) 관련부문은 돈세탁에 반하는 업무를 전개하는 데에 협조함;

(十) 配合相關部門開展反洗錢工作；

(11) 증권업협화 규정의 기타직책.

(十一) 証券業協會規定的其他職責。

제9조[금지행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이하 행위를 할 수 없음;

第九條 【禁止行爲】股權衆籌平台不得有下列行爲：

(1) 본 기구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은 본인 혹은 관련 있는 자를 위해 용자 할 수 없음;

(一) 通過本机构互聯網平台爲自身或關聯方融資；

(2) 크라우드 항목에 대해 대외담보 제공 혹은 증권형 대신 보유;

(二) 對衆籌項目提供對外担保或進行股權代持；

(3) 증권형을 제공하거나 혹은 기타 형식의 유가증권의 양도 서비스;

(三) 提供股權或其他形式的有价証券的轉讓服務；

(4) 플랫폼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투자 기회를 획득하거나 투자자를 오도(誤導)할 경우;

(四) 利用平台自身優勢獲取投資機會或誤導投資者；

(5) 비실명 가입 회원을 향한 심천 혹은 용자항목 소개;

(五) 向非實名注冊用戶宣傳或推介融資項目；

(6) 증권 인수, 투자고문, 자산 관리 등 증권경영기관업무에 종사할 경우, 관련업무 자격을 가진 증권경영기관은 제외함;

(六) 從事証券承銷、投資顧問、資產管理等証券經營机构業務，具有相關業務資格的証券經營机构除外；

(7) 개인 사업자간의 대출 겸업(P2P 인터넷대출) 혹은 인터넷 소액대출 업무;

- (七) 兼營个体网络借貸（即P2P网络借貸）或网络小額貸款業務；
- (8) 악의적 모독, 동종 업계 폄하 등 정당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 (八) 采用惡意詆毀、貶損同行等不正当競爭手段；
- (9) 법률법규와 증권업협회 규정 상 금지된 기타 행위.
- (九) 法律法規和証券業協會規定禁止的其他行爲。

### 第三章 融資者与投資者

#### 제3장 발행인과 투자자

第十條 【實名注冊】 融資者和投資者應當爲股權衆籌平台核實的實名注冊用戶。

제10항 [실명등록] 발행인과 투자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실명으로 회원가입 해야 함.

第十一條 【融資者範圍及職責】 融資者應當爲中小微企業或其發起人，并履行下列職責：

제11항 [발행인 범위와 책임] 발행인은 중소기업 혹은 발행인으로서 아래 책임을 이행:

向股權衆籌平台提供真實、准确和完整的用戶信息；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진실되고, 정확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해야 함;

保證融資項目真實、合法；

발행 프로젝트의 진실성, 합법성을 보장해야 함;

發布真實、准确的融資信息；

진실되고 정확한 발행정보를 발표해야 함;

按約定向投資者如實報告影響或可能影響投資者權益的重大信息；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투자자 권익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함;

証券業協會規定和融資協議約定的其他職責。

증권업협회 규정과 발행인이 협의한 기타 책임.

第十二條 【發行方式及範圍】 融資者不得公開或采用變相公開方式發行証券，不得向不特定對象發行証券。融資完成后，融資者或融資者發起設立的融資企業的股東人數累計不得超過200人。法律法規另有規定的，從其規定。

제12항 [발행방식과 범위] 발행인은 공개 혹은 형식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인 공개방식을 채택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않음. 불특정 대상에게 증권을 발행할 수 없음. 발행이 완료된 후, 발행인 혹은 발행인이 설립한 기업의 누적 주주인원이 200명 이하여야 함. 별도의 법규가 있어, 규정된 법규에 다름.

第十三條 【禁止行爲】 融資者不得有下列行爲：

제13항 [금지행위] 발행인은 이하 행위를 할 수 없음

欺詐發行；

사기발행

向投資者承諾投資本金不受損失或者承諾最低收益；

투자자에게 원금보장 혹은 최소 수익에 대해 승낙;

同一時間通過兩個或兩個以上的股權衆籌平台就同一融資項目進行融資，在股權衆籌平台以外的公開場所發布融資信息；

동시에 두개 혹은 두개 이상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발행금을 모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이외의 공개장소에서 발행정보를 발표;

法律法規和証券業協會規定禁止的其他行爲。

법률과 증권업협회에서 규정한 기타 금지행위.

第十四條 【投資者範圍】 私募股權衆籌融資的投資者是指符合下列條件之一的單位或個人：

제14항 [투자자범위] 사모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의 투자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관 혹은 개인:

(一) 《私募投資基金監督管理暫行辦法》規定的合格投資者；

<사모투자기금감독관리잠향관법>규정의 합법투자자;

(二) 投資單個融資項目的最低金額不低於100萬元人民幣的單位或個人；

발행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액이 100만 위안인 기관 혹은 개인;

(三) 社會保障基金、企業年金等養老基金，慈善基金等社會公益基金，以及依法設立并在中國証券投資基金業協會備案的投資計劃；

사회보장기금, 기업연금 등의 양로기금, 자선기금 등의 사회 공익기금 및 법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중국 증권투자기금업협회에 투자계획을 등록;

(四) 淨資產不低於1,000萬元人民幣的單位；

순자산이 1,000만 위안 이상의 기관;

(五) 金融資產不低於300萬元人民幣或最近三年個人年均收入不低於50萬元人民幣的個人。上述個人除能提供相關財產、收入證明外，還應當能辨識、判斷和承擔相應投資風險；

本項所稱金融資產包括銀行存款、股票、債券、基金份額、資產管理計劃、銀行理財產品、信託計劃、保險產品、期貨權益等。

금융자산이 300만 위안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수입이 50만 위안 이상인 개인. 상술한 개인은 관련된 재산, 수입증명 외, 식별하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함.

본 항목은 소유한 모든 금융자산 은행저축, 주식, 채권, 기금배당, 자산관리계획, 은행재테크상품, 신탁계획, 보험상품, 선물권의 등을 포함.

(六) 証券業協會規定的其他投資者。

증권업협회에서 규정한 기타 투자자.

第十五條 【投資者職責】投資者應當履行下列職責：

제15항 [투자자책임] 투자자는 아래 책임을 이행해야 함:

向股權眾籌平台提供真實、準確和完整的身份信息、財產、收入證明

等信息；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진실되고 정확한 무결의 신분정보, 재산, 수입증명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保証投資資金來源合法；

투자자금의 출처가 합법임을 보장해야 함.

主動了解衆籌項目投資風險，并確認其具有相應的風險認知和承受能力；

주도적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기타 발생가능한 위험과 부담가능한 역량을 확인해야 함.

自行承擔可能產生的投資損失；

발생가능한 투자손실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함.

(五) 証券業協會規定和融資協議約定的其他職責。

증권업협회 규정과 발행협의 약정의 기타 책임.

## 第四章 備案登記

### 제4장 심사등록

第十六條 【備案文件】股權衆籌平台應當在設立后5个工作日内向証券業協會申請備案，并報送下列文件：

제16항 [심사문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설립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증권업협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股權衆籌平台備案申請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심사신청서

營業執照复印件；

사업자등록증 사본

最近一期經審計的財務報告或驗資報告；

최근 1분기 회계감사 완료한 재무보고서 혹은 자산점검보고서

互聯網平台的ICP備案證明复印件；

FinTech 플랫폼의 ICP등록증증명서 사본

股權衆籌平台的組織架构、人員配置及專業人員資質證明；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조직구조, 직원현황과 전문인력자질 증빙서류

股權衆籌平台的業務管理制度；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업무관리제도

股權衆籌平台關於投資者保護、資金監督、信息安全、防范欺詐和利益冲突、風險管理及投資者糾紛處理等內部控制制度；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의 투자자보호, 자금감독, 정보안정성, 사기방지  
와 이익상충, 위험관리와 투자자 분쟁처리 등 내부통제제도;

証券業協會要求的其他材料。

증권업협회가 요구한 기타 서류.

第十七條 【相關文件要求】股權衆籌平台應當保證申請備案所提供文件和信息的真實性、準確性和完整性。

제17항 [관련구비서류]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신청등록증(허가증)이 제공하는 서류와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무결성을 보장해야 함.

第十八條 【核査方式】証券業協會可以通過約談股權衆籌平台高級管理人員、專家評審、現場檢查等方式對備案材料進行核査。

제 18항 [대조검사방식] 증권업협회는 사전일정조율을 통해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의 고위관리자 면담, 전문가 평가, 임의추출검사 등의 방식을 통해 등록증 자료와 대조검사 가능.

第十九條 【備案受理】股權衆籌平台提供的備案申請材料完備的，証券業協會收齊材料后受理。備案申請材料不完備或不符合規定的，股權衆籌平台應當根據証券業協會的要求及時補正。

제19항 [등록증접수]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제공하는 등록증신청서 서류완비 후, 증권업협회는 서류를 받아 접수함. 등록증 신청서류가 미

비 하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증권업협회의 요구와 시간에 맞추어 보완해야 함.

申請備案期間，備案事項發生重大變化的，股權眾籌平台應當及時告知証券業協會并申請變更備案內容。

등록증 신청기간에 등록증에 변동사항 발생 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신속히 증권업협회에 신청한 등록증의 내용변경을 신청해야 함.

第二十條 【備案確認】對於開展私募股權眾籌業務的備案申請，經審查符合規定的，証券業協會自受理之日起20个工作日内予以備案確認。

제20항 [등록증확인] 사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무 규정에 부합하는 심사를 통과한 등록증신청 개방에 대하여, 증권업협회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기준 20일 이내 확정함.

第二十一條 【備案注銷】經備案后的股權眾籌平台依法解散、被依法撤銷或者被依法宣告破產的，証券業協會注銷股權眾籌平台備案。

제21항 [등록증취소] 등록증이 통과 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법에 의거하여 해산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파산 당할 경우, 증권업협회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증을 취소함.

## 第五章 信息報送

### 제 5장 정보제출

第二十二條 【報送融資計劃書】股權眾籌平台應當在眾籌項目自發布融資計劃書之日起5个工作日内將融資計劃書報市場監測中心備案。

제22항 [투자계획서제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프로젝트 투자계획서 발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투자계획서를 시장감사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함.

第二十三條 【年報備查】股權眾籌平台應當于每年4月30日之前完成上一年度的年度報告及年報鑒証報告，原件留檔備查。

제23항 [연도보고서 검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 전년도 연도보고서와 연도검사보고서를 완성해야 함. 원본은 추후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할 것.

第二十四條 【信息報送範圍】 股權衆籌平台發生下列情形的，應當在5个工作日内向証券業協會報告：

제24항 [정보보고범위] 증권형 클라우드 플랫폼은 아래 사항 발생 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증권업협회에 보고해야 함.

備案事項發生變更；

등록증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股權衆籌平台不再提供私募股權衆籌融資服務；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이 더이상 사모증권 클라우드펀딩 용자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股權衆籌平台因經營不善等原因出現重大經營風險；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의 부실경영 등의 이유로 중대한 경영위험이 발생한 경우;

股權衆籌平台或高級管理人員存在重大違法違規行爲；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혹은 고위관리직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股權衆籌平台因違規經營行爲被 ，包括：涉嫌違反境內外証券、保險、期貨、商品、財務或投資相關法律法規等行爲；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규범위반 경영행위, 포괄 : 장내외증권, 보험, 선물, 상품, 재무 혹은 투자와 관련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股權衆籌平台因商業欺詐行爲被起訴，包括：錯誤保證、有誤的報告、偽造、欺詐、錯誤處置資金和証券等行爲；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상업 사해행위로 인해 기소 당하는 경우, 포괄 : 허위보증, 보고서 기재오류, 위조, 사기, 자금과 증권의 착오 처리 등의 행위;

股權衆籌平台內部人員違反境內外証券、保險、期貨、商品、財務或投資相關法律法規行爲。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내부 직원이 장내외 증권, 보험, 선물, 상품, 재무 혹은 투자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경우;

証券業協會規定的其他情形。

증권업협회가 규정한 기타 상황.

## 第六章 自律管理

### 제6장 자율관리

第二十五條 【備案管理信息系統】市場監測中心應當建立備案管理信息系統，記錄包括但不限於融資者及其主要管理人員、股權眾籌平台及其從業人員從事股權眾籌融資活動的信息。備案管理信息系統應當加入中國証監會中央監管信息平台，股權眾籌相關數據與中國証監會及其派出機構、証券業協會共享。

제25항 [등록증 정보관리 시스템] 시장검사원은 등록증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발행인과 주요 관리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종사자의 크라우드펀딩 발행활동에 대한 보유증권형 정보가 포함되거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

第二十六條 【自律檢查與懲戒】証券業協會對股權眾籌平台開展自律檢查，對違反自律規則的單位和個人實施懲戒措施，相關單位和個人應當予以配合。

제26항 [자율검사 및 징계] 증권업협회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개발에 대해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함. 자율규정을 위반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징계조치를 취함, 관련 있는 기관과 개인도 함께 처벌함.

第二十七條 【自律管理措施與紀律處分】股權眾籌平台及其從業人員違反本辦法和相關自律規則的，証券業協會視情節輕重對其採取談話提醒、警示、責令所在機構給予處理、責令整改等自律管理措施，以及行業內通報批評、公開譴責、暫停執業、取消會員資格等紀律處分同時將採取自律管理措施或紀律處分的相關信息抄報中國証監會。涉嫌違法違規的，由証券業協會移交中國証監會及其他有權機構依法查處。

제27항 [자율관리조치 및 징계처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종사자가 본 시행법규와 관련 자율규범을 위반할 경우, 증권업협회는 경과를 살피고 경중을 가려 주의, 경고, 해당 업체 처벌, 시정명령 등의 자율관리조치 및 업계 내 공유 및 비판, 공개비난, 영업정지, 회원자격 취소 등의 징계처분을 하는 동시에 자율관리조치 채택 혹은 징계처분 관련 사항을 CSRC에 전달할 수 있음.

## 第七章 附則

### 제 7장 부칙

第二十八條 【証券經營机构開展衆籌業務】証券經營机构開展私募股權衆籌融資業務的，應當在業務開展后5个工作日内向証券業協會報備。

제28항 [증권경영기구개발 크라우드펀딩업무] 증권경영기구가 개발한 사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무는 개발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증권업 협회에 보고해야 함.

第二十九條 本辦法自 年 月 日起實施，由証券業協會負責解釋和修訂。

제 29항 본 시행법규는 년 월 일 실행, 증권업협회가 해석과 수정을 담당함.

## [자료4] 중국 료녕성 대련시 금보신구(金普新區) 정책내용

類別 유형	序号 번호	政策內容 정책내용
投資 管理制度 創新 투자 관리 제도 혁신	1	實施《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准入特別管理措施（負面清單）》 <자유무역실험구 외국상인 투자 시장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備案清單)>실시함
	2	實行以備案爲主的境外投資管理方式，對境外投資一般項目實行備案制。 등록제를 중심하는 해외투자관리 방식을 실행하며, 해외투자의 일반항목에 대해 등록제(備案制)를 실시함
	3	探索開展個人境外投資項目專程企業境外投資項目初辦備案試點。 개인해외투자항목을 기업해외투자항목으로 전환하는 제도(備案)를 처음 시범 전개하는 것을 탐색함
	4	內外資企業從事游戲游藝設備生產和銷售，經文化部門內容審核后面向國內市場銷售。 게임,여행,예술 관련 설비를 생산 및 판매하는 국내 혹은 외자 기업은, 문화부문의 심사(審核)를 거쳐 국내시장에 판매하도록 함
	5	企業設立實行“一個窗口”集中受理；建設境外投資“一站式”綜合服務平台，提供權益保障、投資促進、風險預警等服務。 기업설립은 “하나의 창구(一個窗口)”를 통해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원스톱(一站式) 종합서비스 플랫폼(綜合服務平台)”을 통해 승인처리해주며,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투자를 적극 촉진하고,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 등 서비스를 제공함
	6	擴大服務業和製造業領域開放，自貿試驗區負面清單特別管理措施逐步削減。 서비스업 확대와 제조업 영역 개방, 자유무역실험구 네거티브 리스트특별관리 조치사항을 점진적으로 줄여갈 것임
	7	國外投資者以獨資形式在區內設立企業，從事加油站的建設、經營，不受門店數量限制。 국외투자자는 독립 자본 형식(獨資形式)으로 무역실험구 내에 기업을 설립하며, 주유소에 종사하는 건설 및 경영에 대해서는 숫자 제한을 받지 않음
	8	取得國際資質的外籍和港澳台地區專業服務人員和機構，在區內依照有關規定開展相關業務。 국제적 자격을 획득한 외국국적이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전문 서비스 종업원과 기관, 자유무역실험구 내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9	區的中國注冊會計師的外籍專業人士擔任國內會計師事務所合夥人，在自貿區內先行先試。 중국회계사자격 취득한 외국 국적의 전문가는 국내 회계사 사무소 파트너로서 자유무역실험구 내에서 시범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행할 수 있음

	10	鼓勵在區內設立外商獨資國際學校。 자유무역실험구 내에 외국기업의 독자(外商獨資)자본을 활용한 국제학교 설립을 적극 장려함
	11	鼓勵在區內設立外商獨資醫院。 자유무역실험구 내에서 외국기업의 독자(外商獨資)자본을 활용한 병원 설립을 적극 장려함
	12	鼓勵在區內設立股權投資機構和管理機構，鼓勵社會資本和國際資本作為絕對主題構建母基金和引導基金。 자유무역실험구 내에 주식투자기관과 관리기관 설립을 적극 장려함, 사회자본과 국제자본을 절대적 주체로 한 모태펀드(mother fund)와 인도기금(引導基金) 설립을 적극 장려함
	13	允許符合條件的境外投資者自由轉移其投資收益。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투자자가 자유롭게 본인의 투자수익을 이동(自由轉移)할 수 있도록 허락함
	14	外國投資者在區內投資設立典當企業。 외국투자자가 자유무역실험구 내에서 전당포 기업을 투자설립할 수 있음
	15	按照“三網融合、共建共享、網運分離、公平接入”的模式，推進電信業改革，降低了入駐企業的通信成本。 “삼망융합(三網融合; 방송, 통신, 인터넷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 작업, 즉, 유무선통신과 방송망 통합), 공동 건설, 공동 향유(共建共享), 망운분리(網運分離; 도로망 건설기업과 여객, 화물 운송 기업을 분리), 공평한 접근방식(公平接入)” 모델에 의거하여, 전자통신업개혁을 추진하고, 입주기업의 통신관련 원가를 줄임
	16	企業建議注銷。 설비가 미비한 기업은 무효로 함
貿易 監 管 制 度 創 新  무 역 감 독 관 리 체 제 도 혁 신	17	建立離岸貿易制度，發展離岸貿易。 출항무역제도(離岸貿易制度) 조성 및 발전
	18	推進國際貿易“單一窗口”，建立涵蓋海關、檢驗檢疫、外匯、海事、邊檢等管理部門的綜合管理服務平台，為企業快速通關提供便捷服務。 국제무역“단일창구(單一窗口)”를 추진하고, 해관, 감독검험검역(檢驗檢疫), 외환, 해상 사고(海事), 국경 검문(邊檢; 세관검사 및 국경 검문, 공항의 출입국 검사도 포함) 등을 총괄하는 관리부문의 종합관리 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업의 빠른 검문 통과를 위해 간편한 서비스 제공
	19	建設服務于貿易產業轉型升級的技術研發、工業設計、知識產權等公共服務平台。 무역산업에만 국한된 서비스를 더 높은 수준의 기술연구개발(技術研發), 공업설계(工業設計), 지적재산권(知識產權) 등으로 전환하여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
	20	加快培育跨境貿易電子商務服務功能，發展跨境電子商務，完善与之相適應的海關監管、檢驗檢疫、稅務、跨境支付、物流等支援支撐系統。 국제무역 전자상무서비스 기능 배양을 가속화하고, 국제간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며, 그에 상응하는 해관감독관리(海關監管), 감독검험검역(檢驗檢疫), 세무(稅務), 국제간 지불결제(跨境支付), 물류 등 시스템을 구축함
	21	建設加工貿易結算中心，制定外匯管理和投融資便利化專項扶持措施，吸引跨國公司入區設立加工貿易結算平台。 가공무역결산센터(加工貿易結算中心)을 건설하여, 외환관리와 투자 및 융자 간편화 특별 지원 조치(外環和投融資便利化專項扶持措施)를 제정하여,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실험구에 들어와 가공무역결산플랫폼을 설립하도록 유인함
22		建立外向型文化產業聚集區，引進境內外文化企業集團，推進對外文化貿易基地建設。 외향성 문화산업 집중구역(外向型文化產業聚集區)을 건설하여, 국경내외 문화기업그룹(境內外文化企業集團)을 유인하여, 대외문화무역베이스(對外文化貿易基地)를 건설함
23		依托海關特殊監管區，在足額担保的前提下，申請開展保稅展示交易業務。 해관특수감독관리구(海關特殊監管區)에 의탁하여, 충분한 담보를 전제로, 보세 신청을 하여 거래 업무가 원활히 진행토록 함
24		創新航空進口貨物監管通關模式，實行“空中申報、落地放行”，節省企業成本、提高通關效率。 혁신적인 항공수입화물감독관리(航空進口貨物監管管理) 통관모형을 도입하여, “통신 보고(空中申報), 검문 허가(落地放行)”모형을 실행하여, 기업의 자본금을 절약하고, 통관 효율을 높임
25		落實汽車平行進口試點政策，打造平行進口汽車產業集群。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시행 정책(汽車平行進口試點政策)을 실현 및 구체화하여, 자동차 산업 병행수입 클러스터를 조성함
26		實施進口貨物預檢驗制度。根據企業申請，對自貿試驗區內擬進口的法定檢驗貨物，預先實施檢驗，貨物實際進口出區核銷放行。 수입 화물 조기 검역 제도(進口貨物預檢驗制度)를 시행함. 기업이 신청함에 따라, 자유무역실험구 내 도입할 예정인 법률규정에 따라 화물을 검사하며, 먼저 검역을 시행하고, 해당 화물은 자세히 심사를 거쳐 장부에서 삭제되면 (검문소나 세관에서) 통과를 허가한 후에야 실제적으로 수입 완료됨
27		實施出入境生物材料制品風險管理制度。對自貿試驗區內企業進口的生物材料等特殊物品實施風險分析的檢疫登記監管，縮短特殊物品的檢疫審批流程，并實施分批核銷、多种查驗方式和頻次相配合的便捷性監管措施。 수출입하는 생물재료제품에 대한 관리제도(出入境生物材料制品風險管理制度)를 시행함. 자유무역실험구 내 기업이 수입한 생물재료 등 특수한 물품에 대하여 리스트 분석을 시행하는 검역등록 감독을 시행하여, 특수한 생물의 검역과정을 단축하고, 분류심사(分批審銷), 다양한 검사방식과 빠르고 편리한 감독관리 조치(便捷監管措施)를 여러번 시행하도록 함

類別 유형	序号 번호	政策內容 정책내용
貿易 監 管 制 度 創 新	28	實施中轉貨物產地來源証管理制度。對於自貿區內的中轉出口貨物，依照對外貿易的需要，根據其實際原產地，有檢驗檢疫机构簽發他國原產、經中國轉口的未在加工證明，并可進行換証、分証、并証操作。 중계화물생산근원지제도(中轉貨物產地來源証管制度) 실시. 자유무역실험구내의 중계수출화물에 대하여, 대외무역 수요에 의거, 해당 화물의 실제 원생산지에 따라, 검열기관으로 하여금, 타국 원산지 상품으로써, 중국 중계를 거친 재가공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함. 면허갱신(換証), 분리(分証), 통합(証操作) 등이 가능토록 함
무 역 감 독 제 도 혁 신	29	實施第三方檢驗結果采信制度。按照“管檢分離、合格假定，強化事中事後監管”的原則，檢驗檢疫机构多部分進出口工業產品采信符合資質的第三方檢驗

		机构的檢測結果。 제3측 검사결과채납제도(第三方檢驗結果采信制度) 실시. “관리 검사 분리(管檢分離), 합격가정(合格假定), 일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사후 관리 감독 강화(強化事中事後監管)”의 원칙에 따라, 검사 및 검열 기관이 부분적으로 수출입하는 공업상품에 대해, 자격에 부합하는 제3측 검사기관(第三方檢驗机构)의 검측결과를 채납(采信)하도록 함
	30	實施動植物及其產品檢疫審批負面清單制度。 동식물과 해당 상품 검열 심사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動植物及其產品檢疫審批負面清單制度) 실시
	31	設立外商獨資國際船舶管理企業。放寬在自貿試驗區設立的中外合資、中外合作國際船舶企業的外資股比限制。 외국상인 독립자본 국제 선박관리 기업(外商獨資國際船舶管理企業) 설립 함. 자유무역실험구에 설립한 중외합자(中外合資), 중외합작 국제 선박기업(中外合作國際船舶企業)의 외자 주식을 제한하기보다 완화시킴
	32	外商以合資、合作形式從事公共國際船舶代理業務。 외국 상인은 합자(合資), 합작(合作)형태로 공공 국제 선박 대리 업무(公共國際船舶代理業務)에 종사함
	33	簡化檢驗檢疫企業備案手續。 검열검역 기업 비안 수속(檢驗檢疫企業備案手續)을 간단화하도록 함
	34	提供貨物通關狀態實時查詢服務。 화물통관상태 실시간 검사 서비스(貨物通關狀態實時查詢服務)를 제공함
	35	推進跨境電商質量安全試驗區建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퀄리티 안전 시범사업구(跨境電商質量安全試驗區) 건설을 추진하도록 함
	36	實施“自主報稅、自助通關、自動審放、重點稽核”的通關監管服務模式。 “셀프세금신고(自主報稅), 셀프통관서비스(自助通關), 자동심사(自動審放), 중점세무감사(重點稽核)”등 통관감독관리 서비스 모델을 실시함
	37	引進國際仲裁、商事調解機制，為營商主體提供更多的國際化糾紛解決渠道。研究創立國際貿易糾紛現場裁決機制。引進境外仲裁机构在自貿區內設立分支机构。 국제중재(國際仲裁), 상사 중재 메커니즘(商事調解機制)을 도입하여, 상업에 종사하는 기업(營商)을 위해 더욱 많은 국제화 분쟁해결 방법을 모색 및 제공함. 국제무역분쟁 현장 판정 및 해결 메커니즘(國際貿易糾紛現場裁決機制) 구성에 대해 연구함. 국경 밖 중재기관(境外仲裁机构)을 도입하여 자유무역실험구내에 분점(分支机构)을 설립하도록 함
金融服務業開放	38	實行資本項目限額內可兌換，符合條件的區內机构在限額內自主開展直接投資、并購、債券工具、全融類投資等交易。 자본항목 한도액 내에서의 환전 가능성(資本項目限額內可兌換)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구역 내 기관이 한도액 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 인수합병(并購), 채권 상품(債券工具), 금융 투자 등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범 시행함
금융서비스업개방	39	建立符合自貿試驗區實際需要的賬戶管理系統。 자유무역실험구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계좌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40	鼓勵外資參與銀行資產保全和不良資產處置業務。 외자기업이 은행자산 보증(銀行保全)과 불량자산 처리(不良資產處置)업무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함
41	爭取在自貿區設立“一行三會”分支機構。 자유무역실험구에 “일항삼회(PBOC, CBRC, CSRC, CIRC)”의 지점(分支機構)을 설립할 수 있도록 쟁취함
42	研究實施發展離岸人民幣債券市場的具体政策。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離岸人民幣債券市場)의 구체적인 정책 실시 방안에 대해 연구함
43	支持在自貿試驗區內按照國家規定設立面向機構投資者的非標資產交易平臺。 자유무역실험구 내에서 국가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관투자자 우선의 비표준화 자산 거래 플랫폼(非標資產交易平臺)을 지지하도록 함
44	自貿試驗區內證券期貨經營機構開展證券期貨業務交叉持牌試點。 자유무역실험구 내 증권선물 경영기관(證券期貨經營機構)이 증권선물업무(證券期貨業務) 교차 인가(交叉持牌)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45	公募基金管理公司在自貿試驗區設立專門從事指數基金管理業務的專業子公司。 공모형 펀드 관리 회사(公募基金管理公司)가 자유무역실험구에 전문적으로 인덱스 펀드 관리 업무(指數基金管理業務)에 종사하는 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46	推動符合條件的境外金融機構在區內設立外商獨資銀行。推動符合條件的境外金融機構與內地公司、企業出資共同設立中外合資銀行。支持各類符合條件的銀行業金融機構通過新設法人機構、分支機構、專營機構、專業子公司等方式進入自貿試驗區經營。 조건에 부합하는 국외 금융기관이 자유무역실험구 내에 외국기업의 독자 자본을 활용한 은행(外商獨資銀行)을 설립하도록 추진함. 조건에 부합하는 국외 금융기관과 국내 회사 및 기업이 출자하여 공동으로 중외합자은행(中外合資銀行)을 설립하도록 추진함. 각각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업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은 법인기관(法人機構), 분점(分支機構), 전문 영업 기관(專營機構), 전문 자회사(專業子公司) 등 새로 설립하는 여러 방식을 통해 자유무역실험구에 진입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47	支持民營資本進入金融業，支持符合條件的民營資本依法設立民營銀行、金融租賃公司、財務公司、汽車金融公司和消費金融公司等金融機構。 민영자본이 금융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자본이 법에 의거하여 민영은행(民營公司), 금융리스회사(金融租賃公司), 재무회사(財務公司), 자동차 금융 회사(汽車金融公司)와 소비자금융회사(消費金融公司) 등 금융기관들을 지원하도록 함
48	探索建立人民幣跨境支付的東北亞區域中心。 위안화 국경간 지불결제(人民幣跨境支付)가 가능한 동북아시아 센터(東北亞區域) 설립을 탐색함
49	擴寬境外人民幣投資回流渠道。創新面向國際的人民幣金融產品，擴大境外人民幣境內投資金融產品的範圍，促進人民幣資金跨境雙向流動。 국경간 위안화 투자회수 루트(跨境人民幣投資回流渠道)를 넓히도록 함. 국제 위안화 금융상품을 우선으로 혁신하도록 하고, 국외 위안화의 국내

		금융 투자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며, 위안화 자금이 국경업무에서 쌍방향으로 유동적이도록(人民幣資金跨境双向流動) 추진함
50		加快引進商業保理公司，支持其開展跨境業務創新。 상업팩토링회사(商業保理公司) 도입을 가속화하고, 해당 크로스보더 업무에 대한 혁신을 지원함
51		允許外資金融機構在自貿試驗區內設立合資證券公司，內資股東不要求爲證券公司，擴大合資證券公司業務方位。允許符合條件的外資機構在自貿試驗區內設立合資證券投資諮詢公司。 외국자본을 활용한 금융기관이 자유무역실험구 내에서 합자 증권회사(合資證券公司)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국내 자본을 소유한 주주(內資股東)는 증권회사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합자증권회사(合資證券公司)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관이 자유무역실험구 내에서 합자증권투자자문 회사(合資證券投資諮詢公司)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함
52		支持設立外資健康保險機構。 외국 자본을 활용한 건강 보험기관(健康保險機構) 설립을 지원함
53		在風險可控前提下支持互聯網金融在自貿試驗區創新發展。 리스크 제어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인터넷금융(互聯網金融)이 자유무역실험구에서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함

類別 유형	序号 번호	政策內容 정책내용
金融 服務 業 開 放  金 融 服 務 業 開 放  금 融 服 務 業 개 방	54	研究探索開展金融業綜合經營，拓展設立金融控股公司。 금융업종합경영 확대와 금융지주회사 설립 증진에 대한 연구를 함.
	55	支持境外中央銀行和國際金融組織在自貿區內設立代表處或分支機構，心音復合條件的國際知名銀行、證券、保險公司等金融機構在自貿區內設立分支機構、功能性機構以及成立合資機構。 자유무역실험구 내 해외중앙은행과 국제금융조직의 대표사무소 혹은 자사기구 설립을 지지함. 조건에 부합한 국제유명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구가 자유무역실험구에 자사기구, 기능성을 지닌 기관 및 합작기관이 해당 됨
	56	支持在自貿試驗區內按國家有關規定設法人金融機構。 자유무역실험구 내 국가관련 규정과 관련된 금융기구, 법인설립을 지지함
	57	研究制定開展人民幣跨境在保險業務的政策措地，引導復合條件的各類資本設立再保險機構，探索設立混合所有的制再保險公司。 보험업무의 위안화 국제업무 전개에 대하여 제정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조건에 부합하는 각종 자본은 재보험기관을 설립하도록 유도함, 전체업무를 혼합한 재보험회사의 설립을 연구함
	58	支持在自貿試驗區設立保險資產管理公司及子公司、保險資金運用中心。支持保險資產管理機構設立夾層資金、并購資金、不動產資金、養老產業資金、健康產業資金等私募資金。支持保險資產管理公司發起、保險公司投資資產證券化產品。依托金融要素市場研究巨災債券試點。 자유무역실험구에 보험자산관리회사 및 자회사, 보험자금운용센터 설립을 지지함. 보험자산관리기관이 동시에 자금, 합병자금, 부동산자금, 양로산업자금, 건강산업자금 등의 사모자금 모집행위를 지지함. 보험자산

	관리회사를 발기하고, 보험회사가 자산증권화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지지함. 금융요소시장연구에 의거하여 대재해 채권을 시행함
59	發展期貨交易平台, 允許或擴大寬合條件的机构和个人在境内外証券期貨市場投資。 선물거래플랫폼을 확충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과 개인이 국내외 증권선물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 혹은 자격을 확대함
60	發展合格境内个人投資者境外投資錢瞻性研究, 探索搖動符合條件的个人開展境外事業投資、不動產投資和金融類投資。 합법적 국내개인투자자의 국외투자 확대를 위한 전향적인 연구를 진행,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61	研究建立健全合格投資者适当性制度, 根据市場需要開展自貿試驗區个体工商戶向其境外經營主体提供跨境人民幣資金支持試点。 적격투자자에게 적합한 제도 건립에 대하여 연구, 시장 수요에 의거하여 자유무역실험구의 자영업자는 기타 국외 경영주체에게 국제 위안화 자금 제공을 시범적으로 지지함
62	支持証券期貨經營机构在自貿試驗區率先開展跨境經紀和跨境資產管理業務, 開展証券期貨經營机构参与境外証券期貨和衍生交易試点。 증권선물운영기관이 자유무역실험구에서 솔선하여 국제중개업무와 국제 자산관리 업무를 확대하고, 증권선물운영기관 해외증권선물과 파생상품 거래를 시행함
63	建設大宗商品現貨交易平台。 거액의 상품현물거래 플랫폼 구축
64	鼓勵設立中外合資的投資資金公司, 只有投資國內外資本市場。 중·외 합작의 투자자금회사 설립 독려, 국내외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만 독려함
65	探索簡歷本外幣一體化管理机制。 위안화 일체화(기축통화) 관리체제 연구를 하려고 함
66	區内証券公司、資金管理公司、期貨公司、保險公司等非銀行机构開展跨境人民幣業務。 자유무역실험구 내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기구에서 국제 위안화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
67	支持自貿試驗區內企業的境外母公司或子公司在境内發行人民幣債券, 募集資金根据需要在境内外使用。 자유무역실험구 내 입주기업의 국제 모회사 혹은 자회사가 국내외 사용의 필요성에 의한 중국내 위안화 채권, 자금모집 등을 지지함
68	支持符合條件的投資者設立境外股權投資資金。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가 해외 주식투자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함
69	積極引進專業從事境外股權投資的項目公司。 전문적인 분야의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국제 주식투자회사를 적극 도입함
70	支持外資股權投資基金創新開展, 積極探索外資股權投資企業在資本金結匯、投資、資金管理等方面的新模式。 외자주식투자기금의 혁신적 전개를 지지하며, 외자주식투자회사의 자본금 외화결제, 투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함. 자금관리 등 방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
71	支持設立在區內的銀行机构發放境外項目人民幣貸款, 研究探索外資銀行机构對區內企業或項目發放人民幣貸款

		지역 내에 은행기구를 설립하여 해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안화 대출을 배분하는 것을 지지함. 외자은행기관의 위안화 대출을 배분하는 지역 내 기업 혹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연구함
	72	支持設立各類有利于增强市場功能的創新性金融機構，推動新型要素交易平臺建設。 시장기능을 강하게 만드는 데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혁신성을 지닌 금융기구 설립을 지지함. 새로운 요소의 거래 플랫폼 건설을 추진함
	73	支持科技金融發展，探索投貸聯動試點，促進創業創新。 과학기술금융의 발전을 지지함. 투자와 대출의 연동에 대하여 연구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함. 창업 혁신을 촉진함
	74	開展內外資融資租賃統一管理體制改革試點。 대내외자 융자금 융자요청을 확대하고, 통일된 관리체제로 개혁하여 시범시행함
	75	鼓勵國內外知名租賃企業、民間資本到區內投資組成租賃企業。 국내외 유명 리스회사, 민간자본이 구역 내 투자하여 리스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함
	76	研究推廣融資租賃集合型跨境ABS資產支持專項計劃。 금융리스 종합형의 자산유동화증권(ABS)자산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전문적인 계획수립을 지지함
	77	簡化貨物貿易收入流程，在真實合法交易基礎上，進一步簡化流程允許自貿試驗區內貨物貿易外匯管理分級等級為A類的企業，貨物貿易收入無需進入出口收匯待核查賬戶，可直接進入經常項目外匯賬戶或結匯。 무역화물 수입절차를 간소화 함, 진실되고 합법적인 거래에 기반하여 간소화된 절차는 자유무역실험구 내 무역화물의 외환관리 A등급의 기업에 한해 허용됨. 무역화물 수입은 수출액계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됨. 자주 사용하는 외화계정 혹은 외화결제에 직접 들어갈 수 있음
	78	開展本外幣跨境融資，建立健全宏觀審慎管理規則下基于微觀主體資本或淨資產的跨境融資約束機制，對於符合條件的企業和金融機構均可按規定自主開展本外幣跨境融資。 외화자금조달 프로젝트를 전개함에 있어, 건전하고 거시적 면밀하고 신중한 관리 규정 아래, 미시주체자본 혹은 순자산을 베이스로 하는 크로스보더 리스 규제 매커니즘을 조성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금융기구는 규정에 따라 자주적으로 위안화의 국제융자업무를 전개할 수 있음

類別 유형	序号 번호	政策內容 정책내용
金融 服務 開放	79	簡化直接投資外匯登記手續，直接投資外匯登記下方銀行辦理，外商投資企業外匯資本金實行意願結匯 직접투자 외국환 등록절차를 간소화 함, 직접투자는 외환등록 후 은행에서 처리함,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화 자본금에 대하여 환어음 결제를 실행하기를 희망함
금융 서비스 업 개방	80	統一中、外資企業外債結匯管理政策，企業（包括種植企業和外商投資企業，不含金融機構）外債資金可以按照意願結匯方式辦理結匯手續。 총괄하는 과정 중, 외자기업의 외채결제관리 정책에 의해 기업(기업환경 담당과 외국인투자기업 포함) 외채자금은 환어음결제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함.

81	<p>資本項目外匯收入愿意結匯，相關政策已經明确的實行愿意結匯的資本項目外匯收入（包括外匯資本金、外債資金和境外上市調回資金等），可根據境內机构的實際經營需要在銀行辦理結匯。境內机构資金項目外匯收入愿意結匯所得人民幣資金納入結匯待支付賬戶管理。</p> <p>자본 프로젝트의 외환 수입을 환어음결제방식 결제, 관련 정책은 이미 명확하게 시행되어 외화결제의 자본항목 외의 외화수익(외환자본금, 외채자금과 해외상장귀환자금 등)을 지지함. 단, 국내기관의 실제경영 중 필요한 부분은 은행에서 외화결제처리를 진행함. 국내기관 자금 프로젝트의 외화수입은 외화로 결제할 수 있고, 위안화 소득자본은 지급결제계좌를 이용해 외화결제를 관리함</p>
82	<p>便利外商投資企業以結匯資金開展境內股權投資，允許以投資為主要業務的外商投資企業（包括外商投資性公司、外商投資創業投資企業和外商投資股權投資企業），在其境內所投資項目真實、合規的前提下，按實際投資規模將外匯資本金直接結匯或將結匯待支付賬戶中的人民幣資金劃入投資企業賬戶。</p> <p>외자기업이 편리하게 외화결제자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주식 투자를 진행함. 투자를 위한 외자기업의 주요업무(외자기업 형 회사, 외자기업의 혁신기업투자와 외자주식투자기업을 포함)를 허가함.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진실 되고, 준법의 전제 하에 실제투자규모의 외화자본금을 직접적으로 지불하거나 지불계좌에 있는 위안화자금을 투자기업의 계좌에 입금함</p>
83	<p>放寬跨國公司外匯資金中運營管理准入條件，進一步簡化資金池管理，允許商業銀行深刻真實、合法的電子單証，為企業辦理集中售付匯、軋差結算業務。</p> <p>해외기업의 외환자금 중 운영관리 조건을 완화하여, 자금관리를 간소화하고, 상업은행의 실용적 업무를 허가하고, 전자서류를 합법화하고, 기업을 위해 송금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 하고, 결산업무에서 손해를 메꿈</p>
84	<p>允許全國性中資商業銀行、政策性銀行、大連本地銀行在自貿試驗區內新設分行或專營机构。允許將自貿試驗區內現有銀行網點升格為分行或支行。在自貿試驗區內增設或升格的銀行分支机构不受年度新增網點計劃限制。</p> <p>전국형 중국자본의 상업은행을 허가하고, 정책은행, 대련 본토은행이 자유무역실험구 내 새로운 분점 혹은 전문영업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함. 자유무역실험구 내 현재 존재하는 은행 점포망을 분점 혹은 지점으로 승급함. 자유무역실험구 내 증설 혹은 승급한 은행분점기관은 연도에 새로운 점포망설립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p>
85	<p>支持自貿試驗區內符合條件的大型企業集團設立企業集團財務公司；支持符合條件的發起人在自貿試驗區內審設汽車金融公司、消費金融公司。</p> <p>조건에 부합하는 대기업이 자유무역실험구 내 기업그룹재무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함. 조건에 부합하는 발기인이 자유무역실험구 내 자동차금융회사, 소비금융회사를 심사받고 설립하는 것을 지지함</p>
86	<p>支持大連轄內信托公司遷址自貿試驗區內發展；支持全國性金融資產管理公司在自貿試驗區內設立分公司；支持金融租賃公司在自貿試驗區內設立專業子公司。</p> <p>대련 관내 신탁회사가 자유무역실험구로 이전하여 발전하는 것을 지지함. 자유무역실험에 전국형 금융자산관리회사가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함; 금융리스회사가 자유무역실험구 내 전문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함</p>

87	<p>允許自貿試驗區內外資銀行支行升格為分行。 자유무역실험구 내 외자은행 지점(업무영역 단순)을 분점으로 승급함</p>
88	<p>允許符合條件的中資銀行在自貿試驗區開展離岸銀行業務，支持具有離岸業務資格的商業銀行在自貿試驗區內過大相關離岸業務。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자본은행이 자유무역실험구에 오프쇼어뱅크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허가함, 오프쇼어뱅크 업무자격의 상업은행은 자유무역실험구 내 관련 있는 연관된 오프쇼어 업무를 담당함</p>
89	<p>在現行法律框架下，支持在自貿試驗區內試點設立外資專業健康保險機構。 현행되는 법적 제도 아래, 자유무역실험구 내 설립하는 외자전문건강보험기관 시행을 지지함</p>
90	<p>支持保險公司在自貿試驗區內設立分支機構。 보험회사의 자유무역실험구 내 지점설립을 지지함</p>
91	<p>取消自貿試驗區內保險支公司高管人員任職資格的事前審批，由保監局實施備案管理。 자유무역실험구 내 보험자회사 고위임직원 자격취소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 중국보감국(保監局)이 실시한 허가관리에 따름</p>
92	<p>完善自貿區基本制度體系和法規框架，逐步建立于自貿區建設相適應的規則和指引體系。 자유무역실험구 기본제도 체계와 법률구성을 완전하게 함. 점진적으로 자유무역실험구 설립에 상응하는 원칙과 안내체계</p>
93	<p>依法賦予自貿區升級和實際經濟社會管理權限。 법에 의거하여 자유무역실험구를 승급하고 실제경제사회관리의 권한을 부여함</p>
94	<p>探索設立法定機構，將專業性、技術性或社會參與性較強的公共管理和服務職能交由法定機構承擔。 법정기구 설립을 연구하여, 전문성 구축, 기술성 혹은 사회 참가성이 높은 공공관리와 서비스기능 거래는 법정기구에서 담당함</p>
95	<p>探索開展“證照分離”試點工作，根據易操作、可管理的要求，選擇審批頻次比較高、改革後效果比較明顯的若干事項，按照取消、改備案、告知承若、提高透明度及可預期性、強化准入監管等五種方式進行改革。 “증명서, 허가증 분리” 업무시행, 용이한 조작에 근거하고, 관리가 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해 연구 전개함. 여러 번의 심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큼, 사후 효과가 비교적 명확한 항목을 진행함. 취소, 허가증 전환, 통보 요청, 투명도와 예측성을 향상, 관리감독 진입을 강화하는 등 5가지 방법으로 개혁을 진행함</p>
96	<p>深入推進工商登記制度改革，積極爭取開展“電子營業執照和企業登記全程電子化”試點工作，實現工商注冊制度便利化。 상공업 등록제도의 개혁을 추진함. “전자영업허가와 기업등록 전 과정 전자화”를 적극적으로 쟁취하여 전개하여 시행, 상공업 등록제도의 편리성을 증진시킴</p>
97	<p>創新稅收服務措地，實現網上自動賦碼、網上自主辦稅、網上區域通辦、網上直接認定、納稅信用網上評價、非居民稅收網上管理、網上按季申報、電子發票應用、網上審批備案等。 혁신적인 세수마련 서비스를 도입하여, 온라인 자동번호입력, 온라인 자동 세금납부, 온라인 역내무역, 온라인 직접승인, 온라인 납세신용평가, 비거주자 세금납부내역 온라인관리, 온라인 분기별 보고, 전자영수증 발행, 온라인 허가증신청 등을 실현할 계획임</p>

98	<p>爲醫療器械企業開辟辦理行政審批快捷通道，推進黨上受理、預約現場檢查。</p> <p>의료기구기업 창립의 빠른 행정심사를 위한 통로구축, 온라인 심사 추진, 예약형 임의추출검사 진행</p>
99	<p>鼓勵“租讓結合，先租后讓”的出讓方式供應土地，允許帶產業項目挂牌。</p> <p>“토지를 먼저 기업에 임대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을 때 토지의 구매 여부에 대해 재협상, 건축물이 있는데 재협상이 안 될 시 국가에서 보상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 산업 프로젝트를 개업하도록 허가함</p>
100	<p>實行“双水机、已公開”。</p>

## [자료5] 중국 시범도시 주선 활동내역 보고

### 시범사업 구현 대상 중국지방정부 선정 및 업무협약의 주선 활동내역 보고

(2017.11.14.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 1. 작성 목적

- 연구용역계약(부산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전략 - 韓中 지방정부 간 클라우드펀딩 연계를 중심으로 -) 특수조건 제4조(연구용역 수행자의 의무)\* 이행 결과를 기술하고자 함

\* 제4조 ①항 : 연구용역 수행범위는 연구용역의 진행 및 그 결과에 따라 부산시와 '(가칭)클라우드펀딩通'을 시범사업으로 구현할 중국의 지방도시 선정과 이의 구체화를 위해 중국측 관계자와의 업무협약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함

#### 2. 중국 지방도시 선정

- 제1후보 도시 : 대련시 금보신구

- 대련시 금보신구는 2014년 6월 국무원 비준을 받아 설립된 중국 10번째 국가급신구
- 2017년 3월 국무원으로부터 제3기 자유무역실험구로 지정되어 금융개혁제도를 시범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제도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
- 본 연구팀은 정책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련시 금보신구 관리위원회와 직접 접촉하였음

□ 제2후보 도시 : 청도시

- 청도는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재부관리(Wealth Management) 시범사업 권한을 부여받아 수행 중
- 부산시와는 양도시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장센터를 상호 개설·운영 중
- 또한 2015년부터는 부산시와 4대 금융협력사업(공동펀드 설정, 채권발행, 학생 교류, 금융포럼 운영 등)을 실시하는 등의 우호적 관계가 기 설정
- 본 연구팀은 청도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청도시 금융관공실과 접촉하였음

□ 제3후보 도시 : 사천성 성도시

- 본 후보도시는 (주)한국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추천하였음
- 추천 배경은 성도시가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혁신기업 관련 금융사업의 시범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임
- 성도는 예탁결제원과 공동포럼을 주관하는 중국 사회과학원 관계자를 통해서도 접촉하였음

⇒ 성도시의 경우 한·중간 민감한 정치상황하에서 한국과의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접촉 및 공동연구가 불가함을 통보해 옴에 따라 후보도시에서 제외

\* 이하에서는 대련시와 청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한 업무협의 실적과 그 내용에 대해 기술

### 3. 중국측과의 업무 협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 가. 제 1후보도시(대련시 금보신구)

##### □ 제1차 출장 방문(07.27~.07.28)

- 한국측 출장자(8명) : 부산시(고재욱팀장), 예탁결제원(최정철부장 외 1), 경제진흥원(박영호 센터장 외 1), 성균관대학교(안유화 교수 외 2)
- (07.28 오전) 대련 금보신구(金普新區) 부서기 예방
  - 방문목적 : 부산시와 대련시 금보신구간 자본시장 협력관련 정책 (기본)방향 협의
  - 중국측 참석자 : 대련 금보신구(金普新區)관리위원회 부서기 류덕춘 외 10여명
  - 대련시 금보신구와 부산시간 자본시장 협력을 추진하되 실무적인 사항은 덕태국유지주회사와 협의하기로 합의
- (07.28 오후) 대련 금보신구 덕태국유지주회사 방문
- 방문목적
  - 덕태국유지주회사는 대련시 금보신구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일종의 지방국유기업으로 구체적 실행기능 수행을 담당
- 중국측 참석자 :
  - 중국측 참석자(6명) : 덕태국유지주회사 총경리 주보봉 등 주요 임원진과 금보신구 금융관공실 마잉지 부장

— 주요 협의 내용

- 대련시 금보신구는 중국내 타 자유무역실험구가 수행하지 않는 차별적인 금융 개혁정책 시행 희망 → 이와 관련 부산시와 시범사업을 수행하길 희망
- 한국측은 한국의 클라우드펀딩 현황과 연구중인 (가칭) 클라우드펀딩通 개요 설명
- 대련시 금보신구 대표단의 한국 클라우드펀딩시장 현황 조사를 위해 한국 방문 합의
- 동시에 한중금융협력포럼(09.20~21)에 참석하기로 합의(업무추진을 위한 MOU 체결 포함)

⇒ 그러나 한·중 사드문제로 한국입국이 무산됨

□ 제2차 출장 방문(11.06~11.07)

— 방문목적

- 한국형(공모형) 클라우드펀딩제도 소개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추진관련 공동연구체계 협의

— 출장자 : 부산시경제진흥원(1), 예탁결제원(2), 성균관대학교(1)

— 대련시 금보신구 참석자

- 금보신구 금융국 : 엄호부국장(嚴浩副局長), 성인지처장(盛仁智處長)
- 덕태국유지주회사 : 주보봉사장(朱寶峰總經理), 왕병부사장(王兵副總經理) 외 다수
- 기타 전문가 : 동북재경대 자유무역연구원 원장 제패동(齊佩東)교수, 대련 민족대학 재경대학원 류대지(劉大志)원장, 대련결산소 왕강부사장 등

— 주요 토론 및 협의 내용

- 대련 금보신구는 자유무역실험구(제3기)로서 동북3성 금융중심지로 지

정(지정권자 : 중앙정부인 국무원)

- 또한 금보신구 지방기업인 덕태국유지주회사의 경우 종합금융업이 가능한 상황
- 금보신구의 자유무역실험구 역할강화와 중앙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확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부산과의 클라우드펀딩通 업무 추진을 희망
- 이의 추진을 위해 금보신구 관리위원회의 추진정책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 선정되면 관리위원회에서 국무원에 클라우드펀딩通업무 수행을 신청 → 국무원 승인 시 업무 추진

※ 자유무역시험구의 업무 승인권은 국무원이 가지고 있음. 따라서 대련시 금보신구와의 클라우드펀딩通 시행여부는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의 결정에 달려 있음 - 현재 대련시 금보신구의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부산시와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연구 MOU 체결을 원함

## 나. 제 2후보도시(청도)

### □ 제1차 방문(08.22~08.23)

- 한국측 출장자(5명) : 경제진흥원(박영호센터장외 1), 예탁결제원(노기훈외 1), 성균관대학교(안유화교수)
- 방문목적
  - 칭다오시의 2017 한·중 금융합작 고위급포럼 참여방안 협의
  - 부산·칭다오간 자본시장협력 시범사업으로 클라우드펀딩通 실시가능 여부 협의
- 주요 토론 및 협의 내용
  - 청도시는 중국 사회과학원으로부터 포럼 참여 관련 설명을 들었으며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표명

- ⇒ 실질적으로 청도시 금융판공실 왕봉(王峰)부국장이 포럼 (제1주제)의 패널리스트로, 청도시 소재 란해증권거래소 상신(常欣)이사가 (제2주제) 패널리스트로 각각 참여
- 클라우드펀딩通의 경우 부산시와 시범사업 수행의사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한중금융협력포럼에서 MOU도 맺자는 의견
- ⇒ 청도시는 올해 9월 20~21일 양일에 걸쳐 부산을 방문하여, 한중금융합작포럼에 참석하였으나 한·중 양국의 민감한 정치 상황 하에서 공개적인 클라우드펀딩通 시범사업 실시 MOU 체결은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결국 MOU는 체결되지 못함)

#### □ 제2차 방문(11.07~11.08)

- 방문목적
  - 한국형(공모형) 클라우드펀딩제도 소개
  -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추진관련 공동연계체계 협의
- 출장자 : 부산시경제진흥원(1), 예탁결제원(2), 성균관대학교
- 청도시 참석자
  - 청도시 금융국 왕봉((王峰))부국장 외 2명
  - 청도시 란해증권거래소 상신(常欣) 이사장 외 5명
  - 상해 소재 SI업체 직원 2명 등
- 주요 토론 및 협의 내용
  - 청도 소재 상신(常欣)란해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자신들이 사모형 클라우드펀딩을 실시하고 있으며
  - 한국형(공모형) 클라우드펀딩시스템이 투자자 보호등에 보다 적합한 모형임을 이해했고
  - 중국 CSRC가 지난 2015년부터 증권법을 개정, 공모형 클라우드펀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중임을 설명

- 또한 지난 9월 부산에서의 한중금융협력포럼 참석 이후 청도시 차원에서 클라우드펀딩通 구현을 위해 란해증권거래소에 T/F를 구성했으며 시스템 개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해거주 SI업체 직원도 참석시켰음
- 한편 공모형 클라우드펀딩 시범사업의 청도시 시범실시 및 부산시와의 클라우드펀딩通 구축을 위해: (1) CSRC에 공모형 클라우드펀딩 시범실시 신청 (2) 중국인민은행 외환관리국(SAFE)에 부산과의 클라우드펀딩通 시범실시를 위한 외환대환 한도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각각 신청하겠다는 의사도 표명
- 또한 클라우드펀딩通 대신 칭부통(靑釜通, 釜靑通)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 청도시의 클라우드펀딩 시범사업 수행은 대련시 금보신구와는 달리 CSRC와 SAFE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석>

- 1) 중국은 1953년부터 5년마다 국가 중장기 계획을 제정하고 있으며, 첫 번째 5개년 계획을 '1차 5개년 계획(1.5)'이라 함. 13차 5개년 계획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중국 경제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함. 10차 5개년 계획까지는 '계획(計劃)'으로 명명했으나 계획경제의 색채를 희석시키고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규획(規劃)'으로 수정함
- 2)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中國共產黨全國代表會議,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중국공산당의 최고권력기구이며, 최소 5년에 한번 열리는 대회로 당 현장의 변경과 중앙정치국 상임위원 선출 및 지난 5년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이 제시됨
- 3) Whitbeck, Britton(2012)
- 4) 본 연구팀이 한국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을 인터뷰한 내용
- 5) 연합뉴스 2017년 11월 2일자 보도, '인재·돈 모이는 창업 생태계 조성...1천개 혁신기업 발굴'
- 6) 서민금융, 또는 누구나 혜택 받는 공생금융을 뜻함
- 7) 성희활(2013)
- 8) World Bank(2013)
- 9) 한국 기획재정부 2015년 10월 31일자 보도, '한·중 정상급 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부처간 협력기반 확대'
- 10) 중국 위안화는 2016년 10월 1일부로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된 이후, SDR에서 각 통화별 차지하는 비중은 달러화 41.73%, 유로화 30.93%, 위안화 10.92%, 엔화 8.33%, 파운드화 8.09%로 위안화는 3번째 순위임
- 11) 張廖冬灵(2015)
- 12) 안유화(2012)
- 13) 김성원(2015)
- 14) 潘旭濤(2017)
- 15) 曲鳳杰(2017): 2016년 중국과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과의 무역은 총 수출 38,319억 위안, 총 수입 24,198억 위안을 달성하여 흑자임. 비록 일대일로 선상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통화 환율을 결정 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참조비중이 달러화와 유로화에 비해 더 크지만, 위안화가 이들 국경 간 무역에서 사용되는 비중은 전체 무역의 13.9%에 불과함
- 16) 중국건설사의 시공건설 비용을 위안화로 지불하거나 투자 시 위안화 사용을 확대
- 17) QFII - 중국 본토 증권시장 투자자격을 갖춘 외국기관투자자; RQFII - 위안화로 중국 본토 증권시장 투자자격을 갖춘 외국기관투자자; QDII - 해외 증권시장 투자자격을 갖춘 중국 국내기관투자자; RQDII - 위안화로 해외 증권시장 투자자격을 갖춘 중국 국내기관투자자; CIBM - 중국인민은행의 중국은행간 채권시장; 채권통(債券通) - 중국과 홍콩간 채권시장 교차거래를 뜻함

18) 曲鳳杰(2017)

19) 연해지구 경제발전 전략: 중국이 대외개방 중에 취한 중대한 전략적 조치로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개방하여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설치함

20) 國家級經濟技術開發區(China National Economic and Technical Development Zone): 중국정부에서 1984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취한 정책조치로, 1978년에 시작한 경제특구에 이어 1984년에 지정된 대외경제 개방구역을 말하며, 줄여서 “개발구”(Development Zone 또는 Development Area)라고도 함. 1984년부터 1986년까지는 연해개방도시(沿海開放城市) 14개를 경제기술개발구로 지정하였고, 현재 총 49곳이 지정되어 있음. 외자유치와 기술도입을 목적으로 경제특구 같은 수준의 우대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경제특구와 다른 점은 당초 경제특구가 관리선으로 국내와 명확하게 격리되어 대내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데 반해, 경제기술개발구는 중국 국내에도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구분이 점차 없어지고 있음

21) 高新技術產業開發區: 즉 첨단기술단지를 뜻하는 것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p.46쪽 참조

22) 자세한 설명은 본 연구보고서의 p.33-45쪽 내용 참조

23) 한재진, 천용찬(2014)

24) 한재진, 천용찬, 정민(2016)

25) 중국인민은행(2012)

26) 이창영(2012)

27) 중국 증권시장은 중국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A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전문으로 하는 B주로 나누어져 있음. A주는 위안화로만 거래되고 외국인은 살 수 없으며, B주는 달러나 홍콩달러로 거래되며, 2001년부터 내국인에게도 개방됨

28) 금융위원회 블로그: 오용훈, 후강통이란, <http://blog.naver.com/blogfsc/220179908049>

29) 현재 총 투자한도를 취소했으며 제한이 없음

30) 주식시장 연계는 후강통과 선강통 및 채권통을 통한 자본시장간 직접 교차매매를 통한 개방을 뜻하며,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함

31)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 Foreign invested enterprises)을 뜻함

32) 자유무역계좌는 무역대금 결제를 비롯하여 자본금의 입금과 자유환전, 자금조달 등을 위해 상해자유무역실험구가 지난 2013년 출범과 함께 이 계좌를 통해 투·융자 태환이 가능하도록 함. 자유무역계좌는 위안화로 대금을 지불한 뒤 외화로 태환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위안화 입금만 허용하다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외화거래도 허용

33) 화청검(華青劍), “기관: 채권통 개설로 수천억 달러 자금 추가로 본토로 유입할 전망 (机构: 債券通有望為內地債市 帶來數千億美元增量資金)”, 증권일보(證券日報), 2017년 5월 26일자 기사

34) 백진규 기자, “중국 채권통 3일 개통, 세계 3대 채권시장 ‘활짝’, 본토자금 홍콩 채권 투자도 추후 허용”, 뉴스핌, 2017년 7월 3일자 기사

35) 중국 바이두 백과, <https://baike.baidu.com/item/%E6%B2%AA%E4%BC%A6%E9%80%9A/19198872?fr=aladdin>

36) 한중화 기자, “홍콩, 英 LME와 상품거래 분야 연계 ‘룬강통’ 시행”, 연합인포맥스, 2015년 10월 22일자 기사

- 37) Tsvetana Paraskova, China Readies Yuan-Priced Crude Oil Benchmark Backed By Gold, Sep 01, 2017, <http://jeunkim.blog.me/221088708130>
- 38) 2017년 3월 17일 중국 국무원의 동북지역과 동부연해지역 부분성시 일대일 매칭 합작방안(東北地區與東部地區部分省市對口合作工作方案》)>>문건을 참조
- 39) 시진핑: 자유무역항 건설에 관한 탐색(習近平: 探索建設自由貿易港), 신화망(新華網) 2017년 10월 18일자 기사
- 40) 2017년 3월 31일 국무원의 중국(랴오닝)자유무역실험구총제방안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印發中國(遼寧)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的通告) 참조
- 41) 청도시정부 2016년 5월 9일 <청도시 재부관리 금융종합개혁 실험구 총제적 방안에 관한 통지(關於印發青島市財富管理金融綜合改革試驗區總體方案的通告)> 공문을 발표
- 42) 룡모(龍喙), “청도금융업발전규획: 2020년 금융기관 300개 초과할 것(青島金融業發展規劃:2020年金融機構超300家)”, 청도조간일보(青島早報), 2017년 1월 19일자 기사
- 43) 당해 연도 GFCI순위에서 1 런던 2 뉴욕 3 싱가포르 4 홍콩 5 동경 12 서울 16 상해 19 심천 23 북경 79 청도 순위를 차지함(범려나, 청도야간일보, 2016년 4월 10일자 기사)
- 44) 기업 또는 정부 재정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전국적 점포망을 가진 은행. 중국 은행 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의 민영화 및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1987년 도입되어, 같은 해 교통은행을 필두로 기업 또는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으로서 현재 12개의 주식제 상업은행이 있음
- 45)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CBRC)
- 46) 중국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中國保險監督管理委員會,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CIRC)
- 47) 룡모(龍喙), “청도금융업발전규획: 2020년 금융기관 300개 초과할 것(青島金融業發展規劃:2020年金融機構超300家)”, 청도조간일보(青島早報), 2017년 1월 19일자 기사
- 48) 정부인도기금은 정부에서 출자하여 설립되고 정부의 전략적 육성산업에 사회자본이 투자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투자되는 정책적 기금
- 49) 안유화(2013)
- 50) 안유화(2014)
- 51) 안유화,이규엽(2017)
- 52) 한재진,정민(2015)
- 53) 적격외국인유한파트너쉽(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제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계 금융기관에 한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조달한 자금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본토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 54) QFII2: Qualified Foreign Individual Investor를 줄여서 표현하는 것으로, 외국 개인 투자자의 중국 증권시장 투자 자격 부여제도를 말함
- 55) 『2012년 시정 백서』 (부산광역시, 2012)
- 56) 부산금융중심지 조성사업(네이버 지식백과)
- 57) 김영재·박은엽(2016)

- 58)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홈페이지 홍보 브로슈어(2015.05), <http://www.bifc.kr/content/content.php?mnid=54>
- 59) 부산경제진흥원 공식블로그, "부산금융중심지 노하우, 모로코 카사블랑카로 전파하다", 2017년 7월 7일자 기사
- 60) 김영재·박은엽(2016)
- 61) 국제금융중심지는 공급 차원에서 그 만큼 많은 해외 금융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한편 수요자인 해외금융기관들은 특정한 금융중심지에 진입하여 주재하기 위해서는 그 곳이 자신들의 니즈(needs)에 맞는 매력 물을 갖고 있어야 함(최생림, 1994)
- 62) 세계적인 위상을 지닌 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은 금융규제의 금융안정 기여도, 은행대출 접근성, 벤처자본 조달의 용이성, 증시의 내부자거래 감시능력 등을 분석하여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평가함
- 63)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금융시장의 발전도, 은행의 건전성, 은행대출 접근성, 은행의 대출태도, 벤처자본의 용이성, 현지 주식시장 접근성 등을 기반으로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평가함
- 64) 임호열 외(2017)
- 65) 중소기업 통계, "시군구별 사업체수 현황 통계(2014년 기준)",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smba.go.kr/site/smba/submain/submain04.do>
- 66) 부록 [자료 2] 참조
- 67) 부산시 사업체 조사, "부산시 창업기업 종사자 수(2015년 기준)", 부산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cityindexV/view?code=A0000005>.
- 68) 국가통계포털(KOSIS),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실적(지역별, 2015년 기준)", 한국통계청
- 69) 부산광역시 국제커피기구(ICO) 부산 유치 제안서(2017년), p.12
- 70) 박진우 기자, "부산, 컨벤션도시 아시아 5위, 세계 10위 랭크", 경상일보, 2016년 6월 29일자 기사
- 71) 역대 주요 국제행사 유치 현황(2016.03.08.),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web/s\\_open/pre/preOpenInfo.jsp?pType1=032 &pType2=05](http://www.mcst.go.kr/web/s_open/pre/preOpenInfo.jsp?pType1=032 &pType2=05)
- 72) 김백상 기자, "부산 게임, 동남아 시장 공략 '시동'", 부산일보, 2017년 6월 6일자 기사
- 7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년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동향 및 모바일 외산게임 인허가 현황 보고, 홈페이지 <http://www.kocca.kr/cop/main.do>
- 74) 김근정 기자, "텐센트, 넷이즈 붉게 물든 모바일게임 시장... '중국' 있어야 매출 상위권", 아주경제, 2017년 6월 19일자 기사
- 75)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bifc.kr/content/content.php?mnid=45>
- 76) 본 문장에서 '집단지성'의 의미는, 클라우드 펀딩 모집에 성공한 기업인 경우 시장성과 발전 전망이 좋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뜻임
- 77) CSRC는 「통지」를 제정하여 그 동안 사모발행으로 진행된 클라우드펀딩을 「지도의

견」에서 명시한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개념에서 제외시키며 관련 플랫폼 정리를 단행하였음. 주로 플랫폼 상의 발행인이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불특정 대상에게 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 주주가 200명을 초과하는 지,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이라는 이름으로 사모발행을 진행하는 지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었음

78) 李愛君(2016)

79) CSRC,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를 건전화하고, 소형기업의 직접투자 채널을 대폭 확장하자(健全多層次資本市場體系, 大力拓展小微企業直接融資渠道), 2017년 11월 9일자 청도 남해주식거래소(靑島藍海股權交易中心) 홈페이지 게재

80) 신삼판(新三板)은 중국 중소·벤처기업 장외 전용시장을 말하며, 현재 '비상장 공개회사 관리방법'과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체계 상의 문제에 대한 국무원 결정'을 바탕으로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법적효력 등이 부족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CSRC는 법률문건의 성격을 띠는 '신삼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임

81)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로 기술혁신활동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중기청)을 뜻함.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이며, 자가진단 평가결과 65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700점 이상이어야 이노비즈 인증 부여하며,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우대 지원함

8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메인비즈기업으로 지칭함. 즉, 업무수행방식·조직구조·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활동 중인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중기청)을 말함.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

83) 손해배상책임자는 발행인, 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 해당사항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사항의 진실 또는 정확성을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을 말함

84) 클라우드넷에서 본인의 연간 투자한도를 조회 가능: 클라우드넷(Crowd Net) [Web]  
- 한도조회 >투자한도조회

85)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요건: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1억원 이상
- 최근 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법인

86) 전문투자자 요건:

- 은행, 상장법인 및 공사, 국가/지자체
-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 개인, 법인은 100억원 이상
- 개인투자조합, 집합투자기구, 적격엔젤투자자
- 발행기업 임원 등 연고자
- 회계사, 변호사
- 투자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투자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CFA, CIA, FRM, IM, RA 등 자격소지자
  - 근무기간은 금융투자협회 등록기간 기준

87) (1)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

- 1,500만원 이하: 소득공제율 100%
- 1,500~5,000만원: 소득공제율 50%
- 5,000만원 초과: 소득공제율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2) 공제요건: 기업에 대해 공제
  - 벤처기업
  - 창업 3년 이내 &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중소기업
- (3) 참고사항
  -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 일몰규정
  - 소득공제 시기는 선택 가능: 2017년에 투자하면 2017년~2019년 중 선택 가능
  - 의무보유기간: 3년,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증권을 매도하면 감면세액 추징
- (4) 제출서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벤처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지방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음
  - 투자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제출하면 됨

88) 사모지분형크라우드펀딩용자관리방법(私募股權衆籌融資管理辦法), 부록 [자료 3] 참조

89) 「증권법」 제10조

90) 馬永保(2015)

91) 李愛君(2016)

92) 본 항목은 소유한 모든 금융자산, 예를 들면 은행저축, 주식, 채권, 펀드배당, 자산관리계획, 은행채테크 상품, 신탁계획, 보험상품, 선물권의 등을 포함하는 개념

93) 이는 기존의 플랫폼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고객 기만행위가 많아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금융의 다른 서비스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94) 기관투자자들의 사모투자 비상장 기업 주식에 대한 호가와 서비스 시스템(機構間私募產品報價與服務系統)을 말함

95) 웨이양왕(未央网), <http://www.weiyangx.com/252174.html>

96) 2016년 11월 14일 KSM 개설, 2017년 02년 23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7년 04월 03일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시작

97)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KSD가 정한 바에 의하여 지질, 규격, 도안, 색도, 생상, 인쇄방법 등이 통일되어 발행된 주권을 말함. 통일 규격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함

98) 2015년 2월 10일 중증자본시장발전감측중심유한책임회사(中証資本市場發展監測中心有限責任公司)라는 명칭에서 현재 회사명으로 변경되었으며, 기관투자자들의 사모투자 비상장 기업 주식에 대한 호가와 서비스 시스템(機構間私募產品報價與服務系統)을 구축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약칭으로 중증호가시스템(“中証報價系統”) 이라고도 함.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nterotc.com/main/index.co>

99) 중증자본시장발전감측중심유한책임공사(中証資本市場發展監測中心有限責任公司), 기관투자자들의 사모투자 비상장 기업주식에 대한 호가와 서비스 시스템 온라인 발행 가이드(機構間私募產品報價與服務系統在線發行操作指引), p.12

100) 또한 양국 증권 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CSD)간 연계를 통한 채권시장 시스템연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이를 구현하지 못한 경험이 있음

- 101) 대련시의 경우: (1) 한·중 FTA 실행 촉진 (2) 지방정부 중소기업 혁신 지원: 대중창업·만중혁신을 위한 금융시스템 마련 (3) 리커창총리의 한·중 정상간 합의 실현 (4) 금융혁신에 관한 시범제도 추진차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현지 담당 공무원이 설명함  
 청도시의 경우: (1) 자산관리허브 금융생태계 촉진 (2)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마련 (3) 리커창총리의 한·중 정상간 합의 실현 (4) 대중창업·만중혁신을 위한 금융시스템 마련 (5) 투자 출구 마련차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현지 담당 공무원이 설명함
- 102) 실제로 중국 청도시는 한국 부산시와 합작으로 부산에 온라인소액중개회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11월 8일 현지 출장에서 조사되었음
- 103) 금융자산은 은행 예금, 주식, 채권, 펀드, 자산관리계획, 은행 자산관리 상품, 신탁 계획, 보험 상품, 선물 등을 포함(「마이데이터 비공개 지분금융 업무에 관한 투자관리 세칙」 제9조 제2항 참조)
- 104) 본 연구보고서의 제2장 상해자유무역실험구 내용을 참조
- 105) 현재 산둥성 청도시 남해주식거래소에서는 본 안건을 PBOC 관련부처에 자문 중에 있음
- 106) 2017년 11월 6일~7일 중국 료녕시 대련시 현지출장을 통해 협의한 사항, 부록 [자료 5] 참조
- 107) 2017년 11월 8일~9일 중국 산둥성 청도시 현지출장을 통해 협의한 사항, 부록 [자료 5] 참조
- 108) 이재호 기자,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인천-상하이 도시간 FTA 체결하자", 아주경제, 2017년 9월 14일자 기사
- 109) 기타 한·중 실무자간 업무협약, 합의방법 및 관련비용 부담방법 등 구체적 논의가 필요
- 110) 중국 료녕시 대련시 금보신구의 경우 한중금융연구원 설립을 제안함
- 111) 센탑(CENTAP)은 부산 지자체 TIPS 프로그램으로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하며, 기술 창업을 지원하며, 인력 및 창업카페 등을 제공함
- 112) CENTAP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공식 인정한 엔젤투자자 등 전문투자기관을 한중 클라우드펀딩通 리딩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
- 113) 부록 [자료 2] 참조: 2017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을 통해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TIPS 프로그램에 해외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개발(R&D) 지원제도를 신설함. 참여조건은 해외에서 5,000만원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임
- 114) 呂金蓬(2015)
- 115) 중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11개 자유무역실험구 중에서 상해와 심천 및 천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직 지역별 특징이 있는 금융개방 모델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116) TIPS 홈페이지: <http://www.jointips.or.kr/about.php>